

현안분석 2004-4

고령사회법제 ①

# 일본의 공적연금법제의 개혁과 과제

2004. 7.



# 일본의 공적연금법제의 개혁과 과제

Legal Reforms relating to Pension in Japan

연구자 : 노 상 헌(부연구위원)  
Roh, Sang-Heon

2004. 7.



## 국문요약

일본의 사회보장법제의 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1960년대 형성되었고, 1980년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959년 제정(1961년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의해 전국민연금제도가 달성되었고, 1973년에 재정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고,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한 1985년 연금관련법개정에서 근본적인 개편이 있었다. 1961년 전국민연금제를 실시하였으나, 종전부터 각 직역별로 운용해오던 연금제도가 그대로 존속하여 복잡하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구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각 연금제도의 급여와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1985년에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공적연금제도의 통합을 단행하여 현재의 체계를 갖추었다. 이후 일본의 연금제도는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연금관련법제를 개정·정비하여 왔다.

현재 일본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각종 공제조합의 3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급여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및 후세대가 지불하는 보험료 및 운용수익 그리고 조세(국고)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정부)가 사회보장의 급여로서 실시하는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私的年金)으로서 기업단위로 가입하는 기업연금, 개인이 자유계약으로 가입하는 생명보험·개인연금보험 등의 개인보험에 있으나,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으로서 국가가 관掌하는 공적연금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일본은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국가적인 최대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형성과 변천과정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급여와 부담)과 개혁방향 및 향후과제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사회·경제의 변동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가운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및 민간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의 개선방향 및 공적연금제도설계에 있어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키워드 : 사회보장, 고령사회,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후생연금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relate to reform of national pension in Korea, by clarifying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Japan's public pension system.

Japan's pension system has been upgrad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al pension system in 1961. Today public pension benefit covers more than 60% of the income for the elderly-only households, and it is contributing greatly to the security of income for the elderly. The current pension system consists of the national pension at the first tier, and the second tier with employees' pension insurance for the employees of private companies, mutual aid pension for the public service employees and corporate pension to complement those pensions.

Japan's pension system will be developed with the view of the present time as well as of the future. For this reason, actuarial revaluation in every 5 years is mandatory to public pension, and 2004 was the year for the revaluation. The actuarial revaluation in 2004 was conducted with the viewpoint of constructing long-term stable system by reviewing the balance between the burden and benefit with consideration of the recent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and having fewer children as well as of the changes in economic trend. Japan will further propel the efforts for building a better pension system by examining

a variety of issues including the reduction of state subsidy ratio of the basic pension to reach 1/2, permitting premium increase, and revisiting the positioning of pensions for women and basic pensions.

In Korea, relate to reform of national pension, I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 (1) In order to maintain the stable operation of the pens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financial plan with a long-term prospective. (2) Corporate pensions are to complement the national pension by providing additional benefit to the national pension.

**Key Word** : Social Security, Aged-Society, Public Pension, National Pension, Basic Pension, Employees' Pension

## 목 차

|                                |    |
|--------------------------------|----|
| 국문요약 .....                     | 3  |
| Abstract .....                 | 5  |
| 제 1 장 서 론 .....                | 11 |
| 제 1 절 연구목적 .....               | 11 |
| 제 2 절 연구범위 및 구성 .....          | 12 |
| 제 2 장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연혁과 구조 ..... | 13 |
| 제 1 절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연혁 .....     | 13 |
| 1. 공무원 등의 연금제도 .....           | 13 |
| 2. 민간근로자의 연금제도 .....           | 14 |
| 3. 전국민연금체계의 확립과 통합 .....       | 16 |
| 제 2 절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      | 18 |
| 1. 공적연금의 체계 및 현황 .....         | 18 |
| 2. 공적연금과 보험료 .....             | 19 |
| 제 3 절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내용 .....      | 20 |
| 1. 국민연금제도 .....                | 20 |
| 2. 후생연금보험제도 .....              | 25 |

|   |    |
|---|----|
| 제 3 장 일본의 공적연금법제의 개혁 .....                              | 31 |
| 제 1 절 1973년 연금법제의 개정 - 공적연금의 실질적 보장확립 .....             | 31 |
| 1. 연금수준의 상향조정과 실질적 보장의 유지 .....                         | 31 |
| 2. 연금재정방식과 연금재정의 변화 .....                               | 32 |
| 3. 민·관 연금격차의 시정 .....                                   | 33 |
| 제 2 절 1985년 연금법제의 개정 - 공적연금제도의 통합과<br>1인 1연금제도 도입 ..... | 35 |
| 1. 개정배경과 목적 .....                                       | 35 |
| 2. 개정내용 .....   | 36 |
| 3. 개정에 대한 평가 .....                                      | 38 |
| 제 3 절 1994년 연금법제의 개정 - 연금수급 개시연령의<br>상향조정 .....         | 39 |
| 1. 개정배경과 목적 .....                                       | 39 |
| 2. 개정내용 .....   | 41 |
| 3. 개정에 대한 평가 .....                                      | 45 |
| 제 4 절 2000년 연금법제의 개정 - 연금급여액의 하향조정 .....                | 46 |
| 1. 개정배경 .....   | 46 |
| 2. 개정내용 .....   | 47 |
| 3. 개정에 대한 평가 .....                                      | 51 |
| 제 5 절 2004년 연금법제의 개정 - 보험료(율) 고정방식 도입 .....             | 53 |
| 1. 개정배경 .....   | 53 |
| 2. 개정내용 .....   | 54 |

|                                      |     |
|--------------------------------------|-----|
| 3. 개정에 대한 평가 .....                   | 57  |
| 제 4 장 일본의 공적연금법제의 향후과제 및 시사점 .....59 |     |
| 제 1 절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향후과제 .....         | 59  |
| 1. 국민연금의 공동화 문제 .....                | 59  |
| 2. 재정의 문제 .....                      | 61  |
| 3. 공적연금의 일원화 문제 .....                | 62  |
| 제 2 절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시사점 .....          | 62  |
| 1. 기초연금도입의 문제 .....                  | 62  |
| 2. 재원확보의 문제 .....                    | 64  |
| 3. 특수직역연금의 통합문제 .....                | 65  |
|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관련 주요연표〉 .....67        |     |
| 〈부 록1〉                               |     |
| 국민연금법 .....                          | 69  |
| 〈부 록2〉                               |     |
| 후생연금보험법 .....                        | 147 |
| 참고문헌 .....                           | 241 |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목적

일본은 평균수명이 81세(남성: 77.8세, 여성: 85.0세)로 세계 제일의 장수국이다. 또한 일본은 제1차 베이비붐세대(1947-49년에 출생한 이른바 團塊세대)가 고령기를 맞이하는 2015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현재(2003년 9월) 2,431만명에서 3,300만명으로 증가해 고령화율(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6%에 이르러, 국민의 4명 중의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1)</sup> 평균수명의 신장과 저출산<sup>2)</sup> 등으로 생산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일본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담당하는 연금제도를 수차례에 걸쳐 정비하고,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은 1959년 전국민연금제를 실시하였으나, 종전부터 각 지역별로 운용해오던 연금제도가 그대로 존속하여 복잡하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구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각 연금제도의 급여와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1985년에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공적연금제도의 통합을 단행하여 현재의 체계를 갖추었다. 이후 일본의 연금제도는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연금관련법제를 개정·정비하여 왔다.

이 연구는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형성과 변천과정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법내용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경제의 변

1) 고령인구지수(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는, 1950년 8.3에서 1970년은 10.2, 1990년은 17.3, 2000년은 25.5로 상승하였다. 2025년에는 48.0으로 되어 생산연령인구의 2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여야 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2) 일본은 저출산율(1.3명)에 대한 대책으로 2003년 7월 9일 “次世代育成支援對策推進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근로와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육아에 필요하고 편리한 환경정비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4년까지의 한시입법이다.

동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관련법제의 개혁내용을 분석하여,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의 개선방향 및 공적연금제도 설계에 있어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 제 2 절 연구범위 및 구성

일본은 국가(정부)가 사회보장의 급여로서 실시하는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私的年金)으로서 기업단위로 가입하는 기업연금, 개인이 자유계약으로 가입하는 생명보험·개인연금보험 등의 개인보험에 있으나,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으로서 국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3)</sup> 현재 일본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각종 공제조합 3제도가 있고, 급여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및 후세대가 지불하는 보험료 및 운용수익 그리고 조세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공적연금제도 가운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國民年金法 昭和 34(1959)년 4월 16일 법률 제141호) 및 민간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제도(厚生年金保險法 昭和 29(1954)년 법률 제115호)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제조합제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가장 보편적인 공적연금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제2장은 일본의 공적연금법제 및 제도의 연혁 그리고 현행제도의 구조 및 급여종류 등을 개관하고, 제3장에서는 1973년 이후의 공적연금관련법(주로 국민연금법과 후생연금보험법)의 개정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현행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일본에서 논의 등 공적연금법의 향후과제를 검토한다. 이상의 검토를 거쳐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일본의 공적연금법제의 개혁과 정비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

3) 岩村正彦・菊地馨実, 『社会保障法教材』, 有斐閣, 2000, 47頁.

## 제 2 장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연혁과 구조

사회보장제도를 재정조달방식으로 대별하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2 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사회보험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의 연금제도는 노령, 장해, 부양자의 사망 등으로 장기에 걸친 소득상실사고에 대응하는 것으로 당연히 소득보장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4)</sup>

일본의 공적연금은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은 피보험자의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연혁과 체계를 개관하고, 현행 공적연금관련법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공적연금법제의 개정방향과 논의배경 등을 이해하고자 한다.

### 제 1 절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연혁

#### 1. 공무원 등의 연금제도

일본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시초는 은급(恩給)제도이다. 은급제도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제도로서 초기근대국가의 건설에서 근간을 이루는 군인과 상급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였다. 은급제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지만, 재원은 조합원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에 유사한 것으로 근대국가 초기 국가건설에 공을 세운 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장제도이다. 하급고용인에 대해서는 1907년의 국유철도공제조합을 시작으로 각종 관영공제조합이 설치되고, 이것이 모든 현업직원에게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1920년에는 연금급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1875년에 공포된 해군퇴은령(海軍退隱令), 1876년 육군은급령(陸軍恩給令), 1884년 관리은급령(官吏恩給令)이 출발점이 되었다. 상급관리와 군인에게 지급되었던 은급은 1923년 제정된 恩給法에 의해 통합되었다. 은급제도에서 제외되었던 정부국영(철도, 전매사업 등)

4) 荒木誠之, “公的年金の性格と機能”, 『ジュリスと』 1063号, 有斐閣, 25頁.

의 직원에 대해서는 1907년 철도현업공제조합(鐵道現業共濟組合) 등의 제도가 만들어져 연금사업을 실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고, 공적연금은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권조항에 의거하여 국가의 은혜적 제도가 아닌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써 재구축 되었다. 1947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폐전 전의 官吏, 傭員, 傭人의 구별은 없어지고, 정부의 모든 피용자는 공무원으로서 취급하게 되었다. 각 부처에 산재하고 있었던 공제조합은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으로 통합되어 비현업부문에서 관리 이외의 직원도 연금급여가 실시되었다(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昭和 23 (1948)년 법률 제69호). 이 시기의 공무원연금은 은급과 공제조합의 2 제도로 구성되었고, 직원으로 임관되면 공제조합에서 은급제도로 이동하였다. 이후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의 개정(1958년),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법’의 개정(1962년)으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제연금으로 일원화되어 통합되었다. 또한 관영공제조합에서 연금급여를 실시하여온 공사직원 등에 대해서는 1956년 ‘공공기업체직원등공제조합법’이 시행되어 연금제도가 일원화되었다.

## 2. 민간근로자의 연금제도

일본에서 민간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법은 전시동원체제에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전비(戰費)를 조달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정된 전시입법의 색채를 띠우고, 시행되었다는 평가이다.<sup>5)</sup> 즉 민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인 연금제도가 최초로 제정된 법은 1939년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보험법(船員保險法)이다. 이 법률에 의하여 선원에 대한 연금제도가 창설되었는데, 해상근무가 전시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연금제도를 우선 이 분야에 설립하였다.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는 1941년의 ‘노동자연금보험법(勞動者年金保險法)’의 제정으로 설립되었다. 그 직후 노동자연금보험법은 1944년 후생연금보험법으로 개칭하고 적용범위를 男子工具에서 비생산

5) 荒木誠之, 『社會保障法讀本(改訂2版)』, 有斐閣, 1994, 66頁.

직근로자, 여성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후생연금보험법이라는 명칭은 1944년이라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기 1년전의 시기로 법률의 명칭에서 ‘노동자’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피했다는 지적이 있다.<sup>6)</sup> 급여는 노령연금, 폐질(장해)연금, 유족연금, 탈퇴수당금, 결혼수당금 등이 있었는데, 노령연금수급자는 당분간 발생하지 않았던 관계로 연금적립금을 戰費조달에 충당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비판이 있다.

제2차 대전 후 일본국헌법이 제정되었고, 헌법 제25조에서는 생존권보장이 규정되어 후생연금보험법은 마침내 1954년에 후생연금보험법으로 전면개정되어 공적연금제도의 출발을 시작하였다. 그 후 1959년에는 농림어업종사자, 자영업자, 소규모사업소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연금제도가 확립되기 이르렀다.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듯이 일본도 공적연금은 우선 공무원(군인, 문관)에 대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국영산업, 基幹산업, 현업근로자, 비현업근로자, 그리고 일반국민이라는 순서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당시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3종(①각종공제연금, ②후생연금, ③국민연금), 8제도(①후생연금보험, ②선원보험, ③국가공무원공제조합, ④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 ⑤공공기업체직원등공제조합<후에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에 통합>, ⑥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 ⑦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 ⑧국민연금)로 되었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직업별 피용자연금보험과 그 밖의 국민연금보험이로 대별할 수 있지만, 각 제도가 난립하는 결과가 되어 통산연금통칙법(通算年金通則法, 1961년)을 제정하여 각 연금의 조정·연계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각종 연금관련법률은 총칭으로 ‘연금보험법’이라 하며, 국민연금법을 제외하고는 통칭으로 피용자연금법이라 한다.

연금보험법에 의한 연금은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에 실시하고 있는 기업연금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행하는 사적연금과 구별하여 국가(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으로 불린다. 이렇게 실현된 공적연금제도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연금대상으로 되었지만, 각각의 제도의 성립기반을 달리하

6) 小西國友, 『社會保障法』, 有斐閣, 2001, 286頁.

면서 적어도 고도경제성장기에는 각각의 성립기반을 바탕으로 발전을 계속하였다. <그림 1>은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형성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연금제도의 형성과정<sup>7)</sup>

|             |           |                     |                  | 1945                   | 1960                 | 1980          |  |
|-------------|-----------|---------------------|------------------|------------------------|----------------------|---------------|--|
| 피<br>용<br>자 | 민간<br>비용자 | 남자<br>근로자           | 노동자연금보험<br>('41) | 후생연금보험('44, '59년 전면개정) |                      |               |  |
|             |           | 여성 및<br>비생산적<br>근로자 |                  |                        |                      |               |  |
| 용           | 사립학교교직원   |                     | (후생연금보험)         |                        | 사립학교교직원<br>공제조합('53) |               |  |
|             | 농림어업단체직원  | (후생연금보험)            |                  |                        | 농림어업단체<br>직원공제조합     |               |  |
| 자           | 선원        | 선원보험('39)           |                  |                        | 후생연금<br>보험('85)      |               |  |
|             | 공무원 등     | 은급                  |                  |                        |                      | 국가공무원<br>공제조합 |  |
|             |           | 관영공제조합 등            | 구 국가공무원공제조합      | 공공기업공제(후생연금)           |                      |               |  |
|             |           |                     | 구법적용<br>은급준용     | 시정촌직원공제조합              |                      |               |  |
| 조례은급 및 준용은급 |           |                     |                  |                        | 지방공무원<br>등공제조합       |               |  |
| 자영업자 등      |           |                     |                  |                        | 국민연금<br>(각출형, '61)   |               |  |

### 3. 전국민연금체계의 확립과 통합

일본은 고도경제성장기를 배경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과제로 등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역주민대상의 연금과 의료보험의 창설이라는 ‘전국민연금제와 전국민의료보험제’<sup>8)</sup>라는 정책목표의

7) 荒木誠之, 앞의 책, 68頁.

8) 일본은 1958년 ‘국민건강보험법(昭和 33(1958)년 법률 제192호)’의 전면개정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되었다.

실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9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 무각 출 노령연금은 1959부터, 각출형 국민연금은 1961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또한 1961년에는 각 제도의 가입기간을 통산하는 통산연금통칙법이 시행되어 제도상으로는 전국민연금체제가 확립되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당시 경제성장을 목표로 경제·산업에 대한 재정투융자의 재원확보가 된다는 정책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새로이 제정된 국민연금법 제79조의 2에 의한 ‘노령복지연금’은 70세부터 월액 1,000엔(보험료에 의하지 않는 무각출형), 각출형연금의 수급자격기간은 25년으로 65세부터 지급되며, 연금액은 월액 2,000엔에 지나지 않았다. 보험료는 35세 미만은 월액 100엔, 35세 이상은 150엔이었지만,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포기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당시 빈곤과 저소득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한 사람이 700~800만명 정도 있어 실시하는 과정에서 완강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사망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환원되고, 본인이 희망하면 60세부터 감액연금이 지급되며, 보험료체납에 재산압류 등의 강제수단을 취하지 않으며, ‘연금복지사업단’을 설립하여 연금적립금에 대해서는 주택·복지시설정비 등에 대한 용자제도(환원용자제도)<sup>9)</sup>를 만드는 등 수정이 있었다.

그러나 3종 8제도 공적연금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시정하지 못한 채 1980년대 들어 본격적인 고령사회의 도래를 맞이하여 일본은 공적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행정·재정개혁과 더불어 연금법제의 대개혁을 착수하였다. 국민연금법은 1985년 5월에 개정하고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동시에 후생연금법 및 공제조합연금 4법이 시행되어 일본의 연금법제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1985년 연금법의 개혁으로 국민연금이 전국민에게 확대되어 전국민 공통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서 지급되어 현재와 같은 2단계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9) 환원용자제도라 함은, 기업이 사택 등의 전축할 때 필요한 자금, 피보험자 자신의 주택구입비용, 교육자금 등에 대한 용자를 의미한다.

이후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정세에 따라 연금관련법제는 개정을 거듭하였다. 즉 1994년 연금법제의 개정에서는 표준적인 연금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였다. 2000년 개정에서는 노령후생연금에서 보수비례부분의 지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 연금보험료의 조정·인상과 노령연금 수령액의 감액을 중심으로 하는 연금법의 개혁이 있었으나, 공적연금의 개혁방향 둘러싸고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었다. 특히 2004년 개정에서는 보험료(율)의 고정방침을 포함하여, 65세 이후 연금액 산정방법의 변경 등으로 실질급여액이 감소되는 결과로 연금생활자들이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정부 여당은 연금개혁법안을 강행 처리하여 통과시켰다.<sup>10)</sup> 이에 따라 일본의 공적연금법제의 개혁은 일단락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민간기업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급여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 제 2 절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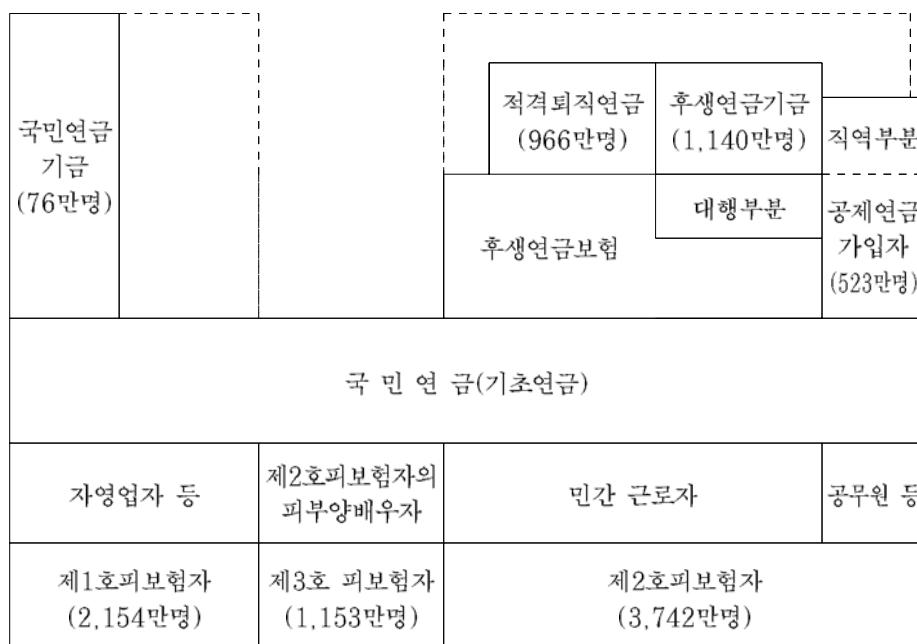
### 1. 공적연금의 체계 및 현황

현재 일본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기초연금), 후생연금(공무원 등은 각 공제조합의 연금), 기업연금이 연계되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다층구조의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20세이상 60세미만인 사람)이 가입하여 기초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국민연금과 거기에 보충하여 소득비례의 연금을 지급하는 피용자(직장근로자, 공무원 등)의 후생연금 및 공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피용자는 후생연금보험에, 공무원 등은 공제조합에 가입한다. 또한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보충연금으로는 국민연금기금제도가, 후생연금보험의 보충연금으로는 후생연금기금제도가 있다(부록의 법조문 참조). 2001년 말 현재 공적연금 가입자수는 7,049만명, 피용자연금제도의 가입

10) 2004년 공적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에 대해서는 朝日新聞 홈페이지, ‘ニュース特集：年金改革’([www.asahi.com/special/nenkin/](http://www.asahi.com/special/nenkin/)) 참조.

자는 3,742만명이고, 2001년 3월 현재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2,057만명, 피용자연금 1,122만명이다.

〈그림 2〉 일본의 공적연금 체계



자료 : 内閣府, 平成 14(2002)年版 高齢社會白書, 133면.

## 2. 공적연금과 보험료

일본에서 고령자의 소득보장에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사적개인연금, 개인저축, 친족에 의한 부양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앞의 현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고령자의 소득보장방법은 사회보험에 의한 공적연금제도라는 것에 이론이 없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노력이나 주의만으로는 피할 수 없는 생활상의 여러 가지 사고를 정형화하고, 이를 사회적 연대에 의거하여 시민의 생활보장을

행하는 제도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소득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방식이다. 사회적 책임은 그것을 담당하는 자와 책임내용(범위와 정도) 및 근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보험의 ‘보험’이라는 제도인 관계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보험료의 의의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부담에 의한 대가성(생활자기책임)과 사회연대(사회적 부양)이라는 두 가지 원리에 의해 파악된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보다는 ‘사회’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보험료부담에는 정액부담방식과 소득비례방식이 있다. 이것을 일본의 현행제도에서 보면 국민연금제도는 정액부담방식(2004년 현재 13,300엔이며 5년마다 조정: 국민연금법 제87조 제4항)이고,<sup>12)</sup> 피용자연금제도(이하에서는 후생연금보험제도를 대표적으로 지칭함)는 소득비례방식으로 되어져 있다. 보험료 부담방식은 또한 국민연금이 정액급여, 후생연금은 소득비례급여(기여에 따른 차등급여)로 되어 급여액결정방식과 결합되어져 있다.

### 제 3 절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내용

#### 1. 국민연금제도

##### (1) 목 적

검토한 바와 같이 1959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 일본에서는 전국민 연금제도가 확립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상황에 맞추어 개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일본국헌법 제25조 제2항 규정의 이념에 의거하여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이 위협받는 것을 국민의 공동연대로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생활의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동법 제1조).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

11) 良永彌太郎, “年金保険料負担のあり方”, 『ジュリスと』 1063号, 1995, 21頁.

12) 물가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한 비율(물가 슬라이드제도)에 의해 매년 자동적으로 조정된다(동법 16조).

금제도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개인단위의 급여(1인 1연금)를 실시한다.

### (2) 보험자

국민연금사업은 정부가 보험자로서 관리한다(동법 제2조). 그 사무의 일부를 都道府縣<sup>13)</sup>의 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함) 또는 市町村(특별區를 포함)<sup>14)</sup>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동법 제3조).

### (3) 피보험자

#### 1) 의무가입자

피보험자의 종류에는 의무(강제)가입과 임의가입이 있고, 전자의 의무가입에는 제1, 2, 3호로 나누어져 있다. 의무가입방식의 제1호 피보험자는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즉 자영업자, 농어업종사자 등을 의미). 다만 피용자연금법 등의 노령 또는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는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종래에는 대학·고등학교 등에 재학하는 자는 임의가입자였으나, 1989년 개정에서는 의무가입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제2호 피보험자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및 공제조합의 조합원이고,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이더라도 후생연금 적용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면 제2호 피보험자로 된다. 제3호 피보험자는 제2호 피보험자의 피부양배우자(주로 제2호 피보험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를 말함)로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주로 전업주부를 의미).

---

13) 東京都, 北海道, 大阪府, 京都府 및 43개의 縣, 즉 47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4)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2) 임의가입자

임의가입방식에 의한 피보험자라 함은 제1, 2,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써, 제1호 피보험자로 임의가입하는 자를 말한다. 즉 ①일본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 피용자연금법 등에 의한 노령·퇴직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외국법의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자, ②일본국내에 주소가 있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 ③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임의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 후에는 제1호 피보험자로 취급된다. 임의가입이 가능한 자가 임의가입을 하지 않았던 기간은 종래의 통산대상기간과 마찬가지로 자격기간<sup>15)</sup>에 통산되어 진다.

## (4) 보험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의 보험급여는 ‘노령기초연금’, ‘장해기초연금’ 및 ‘유족기초연금’이 있다. 이러한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독자적인 급여로서 제1호 피보험자(자영업자 등)에 한하여 과부(미망인)연금, 사망일시금 및 부가(附加)연금이 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있는 수급권이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회보험청장관이 재정(裁定)한다(동법 제16조).

### 1) 노령기초연금

노령기초연금은 만 65세에 도달하고, 25년의 자격기간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25년의 자격기간은 ①보험료납부기간, ②보험료면제기간 이외에도 ③재외국민 등의 임의가입이 가능한 미가입기간도 포함된다. 연금액은 804,200엔(현재 월액 67,000엔 정도)의 정액제이고(동법 제27조), 40년(480개월) 가입기간의 전기간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자는 연간 804,200엔의 만액을 급여받는다. 40년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납입기간에 비례하는 중액은 없지만, 보험료의 미납기간은 비례하여

---

15)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자격기간은 25년이다(국민연금법 제26조).

감액된다. 예컨대 20세부터 60세까지의 40년 피보험자기간 중 30년(360개월) 납부하고 10년(120개월) 동안 보험료를 전액면제 받은 경우에는  $[804,200\text{엔} \times (360 + 120 \times 1/3)] / 480$ 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 2) 장해기초연금

장해기초연금은 ①장해인정일(초진일에서 1년 6개월 경과한 날<즉 치료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기간 내에 상병의 치료가 완료한 경우에는 그 날)에 政令<sup>16)</sup>으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고, ②초진일에 속하는 달의 전전월까지의 전피보험기간에서 보험료납입기간과 보험료면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3 이상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국민연금법 제30조). 장해등급은 1급과 2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장해가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액은 노령기초연금과 동일한 804,200엔을 지급받고, 1급의 경우에는 25%가 가산된다(동법 제33조). 또한 장해기초연금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었던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액을 가산한다. 다만 장해기초연금의 경우에는 동일한 자에 대하여 지급사유를 달리하여 복수 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연금의 지급은 하지 않고, 전후 장해를 병합하여 새로운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한다(동법 제31조).

### 3) 유족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까지의 전피보험기간에서 보험료납입기간과 보험료면제기간이 2/3 이상을 필요로 한다. 유족의 범위는 ①생계를 같이 하는 18세(장해가 있는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쳐 또는 ②사망한 자의 18세(장해가 있는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이다. 쳐에게 지급되는 유족기초연금액은 804,200엔이고,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녀 2명까지는 각각 231,400엔을 가산하며, 3명 이상은 각 77,100엔을 가산한다. 자녀에

16)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내각이 제정하는 명령. 각의(閣議)에서 결정되며 주무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수상)이 連書하여 天皇이 공포한다 (헌법 제7조 제1호)

계 지급되는 유족기초연금액은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804,200엔이고, 2명인 경우에는 231,400엔이 가산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에 각각 77,100엔이 가산된다(동법 제39조의 2).

### (5) 재 원

기초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국고부담 및 제2호·제3호 피보험자의 약출금으로 충당한다.

제1호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는 2004년 현재 13,300엔이며, 보험료는 연령, 소득, 성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매년도 조정된다.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법정요건에 해당하여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법정면제와 본인의 신청과 광역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면제되는 신청면제가 있다.

제2호 피보험자 및 제3호 피보험자에 대한 약출금은 후생연금보험의 보험자(즉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 액은 이하의 식으로 산출한다.  $(보험료 \cdot 약출금산정대상액) \times ((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의 수 + 원쪽 피보험자의 피부양배우자의 수) / 국민연금 총피보험자의 수)$ 이다. 약출금은 본인(제2호 피보험자)의 부담분 및 배우자(제3호 피보험자)의 부담분은 본인이 속하는 후생연금이나 공제연금의 재원에서 보험자가 일괄 약출한다. 따라서 제2호 및 제3호 피보험자는 직접적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매년도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고가 부담한다(동법 제85조). 국고부담은 현재 기초연금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으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령기초연금수급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부터는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노령연금수급자로 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2004년 개정에서는 국고부담을 1/2로 인상하였다).

〈표 1〉 국민(기초)연금 피보험자(가입자)수 및 수급자수의 예상<sup>17)</sup>

(단위 : 만명, %)

| 연 도  | 피보험자수<br>(가입자)(1) | 수 급 자 수   |        |        | (2)/(1) |
|------|-------------------|-----------|--------|--------|---------|
|      |                   | 노령기초연금(2) | 장해기초연금 | 유족기초연금 |         |
| 2000 | 6,970             | 2,080     | 140    | 10     | 29.8    |
| 2001 | 6,960             | 2,170     | 140    | 10     | 31.2    |
| 2002 | 6,950             | 2,260     | 140    | 10     | 32.6    |
| 2003 | 6,940             | 2,340     | 140    | 10     | 33.8    |
| 2004 | 6,920             | 2,410     | 150    | 10     | 34.8    |
| 2005 | 6,910             | 2,480     | 150    | 10     | 35.8    |
| 2010 | 6,610             | 2,850     | 150    | 10     | 43.1    |
| 2015 | 6,320             | 3,190     | 160    | 10     | 50.4    |
| 2020 | 6,150             | 3,330     | 160    | 10     | 54.2    |
| 2025 | 6,000             | 3,360     | 160    | 10     | 56.0    |
| 2030 | 5,790             | 3,350     | 160    | 10     | 57.9    |
| 2040 | 5,110             | 3,450     | 160    | 10     | 67.5    |
| 2050 | 4,620             | 3,280     | 150    | 10     | 70.9    |
| 2060 | 4,340             | 2,890     | 140    | 10     | 66.6    |

## 2. 후생연금보험제도

### (1) 목 적

후생연금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근로자의 노령, 장해, 사망 등의 생활장해에 대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생활보장에 기여하는 제도이다(후생연금보험법 제1조).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이른바 약출형으로 급여는 약출에 대한 반대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私保險과 달리 그 엄밀한 대응관계는 아니다.

17)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www.mhlw.go.jp/topics/nenkin/zaisei/zaisei/03/03\\_12.html](http://www.mhlw.go.jp/topics/nenkin/zaisei/zaisei/03/03_12.html))에서 인용.

### (2) 보험자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정부이다(동법 제2조). 다만, 후생연금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후생연금기금<sup>18)</sup>이 대행하는 부분 및 동 기금 독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그 기금이 운영한다(동법 제106조).

### (3)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업 일부와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사업소(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는 강제적용사업소로 되어지며, 그 곳에서 사용되어지는 65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된다(동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본인의 의사, 국적,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로 된다.<sup>19)</sup> 1985년 개정법에 의해 선원보험법의 대상으로 되어있던 선원도 후생연금의 대상으로 되었다. 이 경우 선박이 강제적용사업소가 된다. 이러한 강제적용사업소 이외의 사업소에서도 근로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광역자치단체장의 인가에 의해 임의적용사업소로 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3, 4항). 또한 65세 미만의 근로자가 희망하면 사업주의 동의와 광역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단독으로 피보험자로 될 수 있다(동법 제10조). 그러나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사용되는 자로서 공체조합의 조합원이나 임시로 사용되는 자 등은 피보험자로 될 수 없다(동법 제12조).

### (4) 보험급여의 종류

급여는 보수비례의 ①노령후생연금, ②장해후생연금, ③유족후생연금의 3종류(동법 제32조)가 있으며, 이외에도 ④임시적 조치로 특별히 지급되

18) 후생연금기금은 후생연금보험 적용사업소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로 구성되는 특별법인으로, 후생연금보험의 노령연금급여를 일부 대행한다. 적용사업소인 기업이 독자적으로 후생연금보험법에 의한 노령후생연금을 초과하는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한 노령연금급여와 기업내 퇴직연금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이다(동법 제9장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음).

19) 일반적으로 이사, 감사 등도 법인에 고용되어 노무의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인정되어지므로 피보험자로 된다.

는 노령후생연금이 있다(특별노령후생연금, 동법 부칙 8조). ①, ②, ③의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급여에 가산(추가)하여 지급한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회보험청장관이 재정한다(동법 제33조).

### 1) 노령후생연금

노령후생연금은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기간에 있는 자가 국민연금법상의 ‘노령기초연금’의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즉, 65세에 도달하고,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료면제기간의 합산이 25년 이상), 수급권이 발생한다(동법 42조). 연금액은 보수비례연금액과 피보험자의 의한 부양가족에 따라 지급되는 가산연금액으로 산정된다. 보수비례연금액은 ( $\text{평균표준보수월액} \times 5.481/1000 \times \text{피보험자기간 월수}$ )로 계산하고, 가산연금액은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기간이 240개월 이상인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되는 65세 미만의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장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배우자와 2명의 자녀까지는 각각 231,400엔을 지급하고, 3명 이후부터는 1명에게 각 77,100엔을 지급한다(동법 제44조).

### 2) 장해후생연금

장해후생연금은 국민연금의 장해기초연금의 대상이 되는 장해(1급 및 2급)가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기간 중에 있던 상병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 지급한다.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후생연금의 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때에는 독자의 장해후생연금(장해등급 3급), 또는 장해수당금이 지급된다(동법 제47조, 57조). 장해후생연금 및 장해수당금은 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다(동법 제50조 및 57조 참조).

### 3) 유족후생연금

유족후생연금은 ①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피보험자였던 기간에 초진 일에 있던 상병으로 5년 이내에 사망한 때, ③1급·2급의 장해후생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④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기간을 충족한 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다만, 보험료납입기간(면제기간 포함)이 피보험자기간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동법 제58조). 이 경우 유족의 범위는 ‘유족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자녀가 있는 쳐, 자녀) 이외에도, 자녀가 없는 쳐, 55세 이상의 夫, 부모, 조부모, 18세 미만(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20세 미만)의 손자녀이다(동법 제59조). 연금액 산정은 동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다.

### 4) 특별노령후생연금

1985년 개정에 의해 노령후생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노령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상향조정되었지만, 당분간은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기간을 충족하는 자가 60세(여성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에 따라 55~60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후에 60세에 달한 때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독자의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동법 부칙 제8조 제1항 제1호).

### (5) 비용부담

후생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에서 국가 부담하는 사무비 이외의 보험 급여비는 보험료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sup>20)</sup> 보험료는 보험자인 정부에 의해 피보험자기간의 기초가 되는 각월로 징수되는데, 그 액수는 표준보수월액(30등급으로 분류, 동법 제20조) 및 표준상여액에 보험료율

20) 1985년 개정 전에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비의 20%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재정부담의 가중으로 보험료만으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개정하였다. 다만, 후생연금보험의 관리자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기초연금액출금의 1/3을 부담한다(후생연금보험법 제80조 제1항).

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다(동법 제81조). 현재의 보험료율은 135.8/1000으로서 제1급 약 13,300엔에서 제30급 약 84,200엔까지의 30단계로 되어있으며,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동법 제82조).

정부가 징수하는 보험료에는 국민연금법상의 기초연금지급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보험료에는 후생연금보험이 피보험자 수(피부양 배우자를 포함)에 상응하는 액이 기초연금 약출금으로 포함되어 있다. 피보험자 입장에서 보면 후생연금 보험료를 지불하면 동시에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그 부양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된다(후생연금의 가입자 수 및 수급자의 수에 관한 추계는 <표 2>를 참조바람).

<표 2> 후생연금 피보험자(가입자) 수 및 수급자 수 예상<sup>21)</sup>

(단위: 만명, %)

| 연 도  | 피보험자수<br>(가입자)(1) | 수 급 자 수           |                     |             | (2)/(1) |      |
|------|-------------------|-------------------|---------------------|-------------|---------|------|
|      |                   | 노령후생연금<br>노령상당(2) | 장 해<br>후생연금<br>통신상당 | 유 족<br>후생연금 |         |      |
| 2000 | 3,430             | 870               | 540                 | 30          | 350     | 25.2 |
| 2001 | 3,440             | 920               | 570                 | 30          | 370     | 26.6 |
| 2002 | 3,500             | 970               | 600                 | 30          | 380     | 27.5 |
| 2003 | 3,500             | 1,010             | 630                 | 40          | 400     | 29.0 |
| 2004 | 3,490             | 1,060             | 660                 | 40          | 420     | 30.3 |
| 2005 | 3,480             | 1,090             | 700                 | 40          | 440     | 31.4 |
| 2010 | 3,380             | 1,360             | 890                 | 40          | 540     | 40.3 |
| 2015 | 3,270             | 1,510             | 1,040               | 40          | 640     | 46.1 |
| 2020 | 3,170             | 1,490             | 1,090               | 40          | 750     | 47.1 |
| 2025 | 3,100             | 1,430             | 1,090               | 40          | 840     | 46.3 |
| 2030 | 3,000             | 1,390             | 1,120               | 40          | 900     | 46.4 |
| 2040 | 2,710             | 1,440             | 1,290               | 40          | 900     | 53.3 |
| 2050 | 2,440             | 1,360             | 1,280               |             |         |      |

주: 노령상당은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기간이 25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하고, 통산상당은 피보험자기간이 25년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21)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www.mhlw.go.jp/topics/nenkin/zaisei/zaisei/03/03\\_07.html](http://www.mhlw.go.jp/topics/nenkin/zaisei/zaisei/03/03_07.html))에서 인용.

### 제 3 장 일본의 공적연금법제의 개혁

국민의 노후생활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공적연금제도는 고도경제성장(대체로 1958년~1973년)을 배경으로 복지원년으로 상징되는 1973년에 후생연금법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후 석유위기(oil shock)에 의한 국제적 불황을 계기로 국가재정의 악화,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등으로 연금재정대책에 대한 개혁이 중점이 되고, 고령자의 생활보장의 관점과 비중이 점차 퇴색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5만엔 연금'과 물가 슬라이드(연동)방식<sup>22)</sup> 등으로 후생연금이 확립된 1973년 이후 행정·재정개혁과 고령자의 생활보장의 관점에 대한 재검토, 세대간의 공평, 급여와 부담의 적정화, 연금의 통합과 일원화 등의 이유로 일본이 연금개혁을 진행하여온 추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 제 1 절 1973년 연금법제의 개정 – 공적연금의 실질적 보장확립

1970년대에 들어서서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일본은 사회보장의 확충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은 서구 여러 나라에 비하여 공적연금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인식을 정부나 사회에서 공유하였다. 이에 일본은 1973년 후생연금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복지원년'으로 상징될 만한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

##### 1. 연금수준의 상향조정과 실질적 보장의 유지

1973년의 후생연금법제(이하 '73년 법개정'이라 함)의 개정의 기본적인 방향은, ①현재 근로자의 임금(생활)수준과 상대적 비교에서 공적연금을 보장할 것, ②은급·공제연금과 민간 후생연금과의 민·관 격차를 시정하고, 후생연금의 수준을 상향조정할 것, ③경제적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

22) sliding scale method: 물가, 그 밖의 경제지표의 변동에 대응하여 임금 등을 조정하는 제도.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시킬 것 등으로 정하였다. 이는 당시 사회경제적 요청에 부응하는 방향설정이라 할 수 있다. 73년 법개정은, ①연금수준을 결정할 때 새로운 방식으로 표준적인 근로자의 노령연금액(모델 연금액)을 현직근로자의 평균임금(가입자의 평균표준보수액)의 60%정도로 정하고, ②연금액 수준에서 민·관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모델연금액을 월액 5만엔으로 상향조정하여, 은급·공제연금의 평균수준에 가깝게 하였다. 그리고 ③후생연금의 실질가치(구매력)를 유지시키기 위해 보수비례부분의 산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당해 개인의 표준보수월액(과거의 낮은 소득수준)에 일정의 비율(재평가율)로 계산하여 현행임금체계로 하는 재평가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④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물가상승에 맞추어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식을 도입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주요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 2. 연금재정방식과 연금재정의 변화

73년 법개정은 연금권을 실질적으로 확립할 목적으로 공적연금의 재정방식을 수정적립방식에서 **부과(賦課)**방식으로 이행하는 커다란 정책적 선택이 있었다. 이유는 적립방식은 연금급여액이 쟁출액(기여액)과 시장수익율로 정하여지므로 급여액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지만, 연금급여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노후소득보장에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부과방식은 젊은 세대(청장년층)의 쟁출(기여)이 동시대의 고령자세대의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액 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과방식 아래에서는 ①연금급여액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 ②경제사정의 변동에 대응하여 어느 정도 연동시킬 것인가(급여액의 조정), ③쟁출액(기여액)이 적은 고령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연금액을 지급할 것인가라는 중요사항이 경제적 상황과 정책적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연금급여액이 급속히 증가하고, 연금재정의 비대화로 차세대가 부담할 부담액이 증대하여 세대간의 공평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일본은 완전 부과방식이 아닌 수정된 부과방식으로 적립방식을 부분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73년 법개정은 1958년 이후 10여 년간의 계속되어온 고도경제성장으로 국가재정의 안정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낙관적인 예측과 전망이 정부, 모든 정당, 재정당국을 지배하여 연금재정방식을 부과방식으로 단행하였다. 특히 연금급여액의 물가·임금연동방식은 실시직후 1973년 석유위기로 인한 물가폭등과 이듬해 1974년 춘투<sup>23)</sup>에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결과가 그대로 연금재정에 반영되어 연금재정을 크게 압박하였다.

따라서 73년 법개정과 제도개혁은 일본의 복지원년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나, 그 직후 발생한 세계적인 석유위기로 인한 경제의 저성장시대(고도경제성장의 종언)와 평균수명의 신장과 저출산율로 인한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고령사회)는 연금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일본사회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는 결과가 되었다는 평가이다.

### 3. 민·관 연금격차의 시정

73년 법개정은 급여수준에서 민·관격차를 시정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민간 후생연금의 급여액을 상향조정하였다. 급여액의 민·관격차의 해소가 연금개혁의 우선 과제로 등장하였지만, 공무원 등의 연금 기득권보장의 문제와 후생연금의 재정부담 증가로 그 격차는 만족할 만큼 해소되지 못하였다.

#### (1) 1980년 공무원공제조합법 개정

1980년의 국가·지방공무원공제연금법의 개정에서는, 연금지급개시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하고, 동시에 60세 정년제를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①정년 이전에 퇴직할 때 인정되는 감액퇴직연금제도에서 그 감액율을 상향조정(감액율을 1년에 4%씩에서 8%로), ②퇴직 후 고액의 급여로 관련회사에 전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수급에 있어서 일정액을 지급제한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

23) 춘계투쟁(春季鬪爭)의 약칭. 1955년 이후 매년 봄에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규모로 일제히 행하는 일본 노동조합의 공동투쟁방식을 말한다.

하고, 또한 ④관공노동부문에서만 존재하는 노동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하는 정계처분자에 대한 연금지급제한을 완화하여 연금제도에 있어서의 민·관의 격차를 시정하는 개정이 있었다. 종래의 은급·공제조합법은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이유로 민간부문과는 달리 연금 등에 있어 유리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개정조치로 민·관격차가 시정되면서 이후 공적연금 통합화의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1983년 공제연금통합법

1983년 3월 일본정부는 임시행정조사회<sup>24)</sup>에서 수립한 행정개혁법안<sup>25)</sup>의 하나인 국가공무원공제·일본국유철도(이하 '국철'이라 함) 등 3公社<sup>26)</sup>공제를 일원화하는 공제연금통합법안을 각의(閣議)에서 결정하고, 국회에 상정하였다. 공제연금통합법은 국철의 민영화에 맞추어 1984년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였다. 국철이 6개로 분할되는 민영화에 있어 최대과제는 국철 퇴직자 공제연금의 문제였다. 1985년부터 연금지급불능에 상태로 되는 국철공제의 부족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도와 구조가 유사하고, 역사적으로도 무관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3공사를 포함하여 국가공무원공제에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국철공제를 포함하는 국유철도의 민영화와 6분할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으로 처리할 문제이지만, 이것을 국가공무원공제와의 연대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후 공적연금통합에서도 정부가 재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응하는 선례가 되었고, 연금통합에 있어서 급여와 보험료의 결정방법이 하향평준화로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가공무원공제에서는 국철민영화 후 5년간 재정부담을 지고 있었으나, 1990년부터는 후생연금

24) 1980년 12월 한시입법으로 제정된 '臨時行政調査會設置法(昭和55(1980).12.5 法律 第105)'에 의해 설치된 (제2차)임시행정조사회는 고도경제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이행 등 시대의 커다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도성장기에 팽창한 행정의 재조정과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제도와 행정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25) 1982년 출범한 中曾根內閣은, '國家行政組織法', '電電公社民營化法案', '臨時教育審議會設置法案', '國鐵分割民營化法案' 등의 행정개혁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집행하였다.

26) 종래에는 ①일본국유철도(JR), ②일본전신전화공사(NTT), ③일본전매공사(JT)를 3공사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민영화되었고, 3공제조합은 1997년 4월부터 후생연금보험에 통합되었다.

보험을 비롯한 모든 피용자연금으로부터 재정조정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었다.

## 제 2 절 1985년 연금법제의 개정 – 공적연금 제도의 통합과 1인 1연금제도 도입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의 직업과 직역에 따라 복수의 제도가 분립하여 있었다. 즉 상공업·농림어업 자영업자 등의 자영업종사자는 ‘국민연금’, 민간기업의 상용근로자는 ‘후생연금보험’, 선원은 ‘선원보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등은 ‘각종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취업구조의 변동(자영업자의 감소) 및 인구의 고령화에 의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예상되었다.

이를 전면적으로 재편하고자 1985년 공적연금관련 법제의 개정(이하 85년 법개정)에서는 국민연금을 전면개정하여 모든 직업과 직역에 공통하는 기초연금을 신설하는 획기적인 제도개혁이 있었다.<sup>27)</sup> 85년 법개정으로 후생연금보험(선원보험을 통합) 및 공제조합은 민간기업의 상용근로자 및 공무원 등은 기초연금에 부가하는 보수비례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행하였다. 또한 구제도에서는 부양되는 배우자(주로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제도에 임의가입하지 않는 한 자신의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갖지 못하였으나, 신제도에서는 국민연금의 제3호 피보험자로 자신의 노령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1인 1보험시대가 개막되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개정배경과 목적

73년 법개정으로 후생연금의 급여수준은 현격하게 상향조정되고, 1961년에 실시된 국민연금은 25년 가입으로 월 5만엔의 수급자격을 취득하게

---

27) 급여생활자와의 연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영업자 등의 노령연금구조를 이중구조를 도입하였다. 즉 1991년에 후생연금에 상당하는 국민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어 자영업자 등도 연금의 2단 구조를 실현하였다.

되었다. 따라서 급격한 연금급여의 부담은 연금재정을 압박하기에 이르러, 연금재정의 파탄을 피하고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즉 ①고령자의 급속한 증가와 평균가입기간의 연장은 연금급여액을 급격히 증대시켜,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면 연금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이 현직근로자의 임금액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다. 또한 ②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 산업구조가 제1차 산업에서 제2차·제3차 산업으로 이동하고, 이와 더불어 취업구조면에서도 자영업이나 가족영업중심에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 결과 가입하는 제도에 따라 현직근로자와 퇴직자의 균형이 맞지 않고 연금제도의 유지가 곤란한 사태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③청·장년층의 도시집중과 출산율저하로 인한 가족구성의 변화와 가족규모의 축소는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장해자와 미성년의 유가족 등에 대한 연금보장의 충실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검토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1985년도 ‘厚生白書’는 고령화사회의 위기론을 전개, 연금재정 붕괴의 위험성을 부각하여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여론을 형성하는데 주력하였다. 공적연금개혁의 명분은 종래의 3종 8제도로 분립하여 복잡한 일본의 공적연금체계를, ①‘기초연금’을 공통부분으로 하는 통합일원화로 연금재정의 파탄을 방지하여 안정화를 도모하고, ②급여의 축소와 부담의 확대로 세대간의 공평을 기하고, ③여성의 연금권과 장해자급여의 충실을 목적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 2. 개정내용

1985년 연금법제의 주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전국민공통의 기초연금제도 도입, ②기초연금에 가산하는 피용자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의 개선, ③피용자연금의 급여와 부담의 적정화 ④피용자의 배우자(주로 전업주부)의 연금권 확립, ⑤국민(기초)연금의 정액제와 피용자연금의 정율제의 도입, ⑥기초연금으로 국고부담의 집중화(즉 후생연금보험에 대한 국고보조 축소), ⑦선원보험의 후생연금보험에의 통합 등이다.

이러한 85년 법개정은 기초연금제의 확립으로 국민전체에게 공통부분의 연금보장으로 공평한 의식을 부여하고, 이 부분의 연금재정조정은 국민연금재정의 건전화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급여수준 하향조정은 종래의 연금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노동단체로부터 강하게 비판되어졌다.<sup>28)</sup>

여성 고유의 연금권의 보장은 평가될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인 전업주부의 보험료면제에 관한 문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많은 비판과 논의가 존재하고 있다. 85년 법개정 이전의 후생연금보험 등 피용자연금제도에서의 급여는 세대단위로 설계되어져 있어, 여성(妻)의 노후는 남성(夫)의 노령연금급여로, 남성(夫)의 사망 후는 유족연금급여로 생활보장이 이루어지는 구조였다. 반면에 피용자의 피부양자인 여성(妻)은 독자적으로 연금에 가입할 의무는 없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이 인정되는 것으로 지나지 않았다. 때문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지 않은 여성이 장해자가 되거나 중·고연령에서 이혼한 경우에는 무연금자로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85년 법개정에서 도입한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제3호 피보험자제도이다. 제3호 피보험자제도는 민간근로자 및 공무원(제2호 피보험자)의 피부양배우자(대체로 피용자의 전업주부)를 의무적으로 피보험자로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피용자 본인과 그 피부양배우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피부양배우자의 급여에 필요한 비용은 피용자연금제도에서 각 출금으로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였다. 즉 제3호 피보험자제도는 피용자의 배우자를 전업주부로 상정하여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자로 보고, 이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비용을 피용자연금재정(피용자전체)의 부담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여성의 무연금 문제에 대한 일본의 특유한 대응 방법이다. 제3호 피보험자제도의 도입 이후 피용자의 전업주부도 독자의 연금권이 보장되어, 제3호 피보험자제도로 취득한 수급자격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초

28) 이 시기 3·3·5·5의 개악으로 노동조합 등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즉 연금제도의 전체로부터 급여수준의 30% 축소, 보험료의 30% 인상, 지급개시연령의 5세 상향조정, 국고부담율의 50% 삭감이라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연금부분에서 제3호 피보험자제도의 도입으로 수급권이 개인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2단계 부분인 피용자소득비례연금에 대해서는 세대단위의 방식이 강하게 남아있어 전업주부나 자신의 후생연금이 없는 여성(妻)은 남성(夫)의 사망 후 유족후생연금에 의해 생활보장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2004년 법개정에서는 여성의 수급권을 강화하였다(후술함).

### 3. 개정에 대한 평가

모든 국민에게 공통하는 기초연금(국민연금)을 창설함과 동시에 국고부담을 기초연금의 3분의 1로 억제하고, 기초연금의 재원확보를 위해 각 공적연금제도간에 있어 재원이전(각출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새로운 기초연금계정을 만들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급여액의 억제의 대해서도 이하의 점에서 중요하게 언급된다. ①(구)후생연금의 정액부분이 기초연금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는데, 이때 연금전액을 수급하기 위한 보험료납부기간은 25년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40년으로 연장되어졌다는 것, ②(구)후생연금의 보수비례부분에 상당하는 후생연금의 계산율(승수율)이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7.5로 낮아졌다는 것이다(결과적으로 감액, 경과규정 있음).

73년 법개정으로 연금재정방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되었지만, 85년 법개정을 위한 심의회에서는 연금설계의 기본요소(급여요건·수준, 보험료, 지급개시연령, 정부부담, 관리운영, 노동력인구와 출산율 등)가 계상되었는데, 이러한 기초적 자료수치는 비공개로 민주적 토론이 결여된 채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sup>29)</sup> 또한 가장 중요한 요인인 출산율의 예측에 관해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 제2의 베이비붐 세대(제2의 단괴세대, 즉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의 결혼과 더불어 출산율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이 사회전반에서 지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에 반하여 출산율저하가 계속되고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85년 연금법제의 개혁은 결과론적으로 재평가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9) 坂本重雄, 『社會保障改革』, 劲草書房, 1997, 32頁.

### 제3절 1994년 연금법제의 개정 –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상향조정

1994년 일본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 14%를 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 해였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1994년은 민간근로자의 직업생활에서의 은퇴와 연금에 관한 제도에서 큰 변혁이 있었던 해이다. 우선 ‘고연령자등고용안정등에관한 법률의 일부를개정하는법률(고령자고용안정법)’(平成 6(1994)년 법률34호)과 ‘고용보험법의 일부를개정하는법률’(平成 6(1994)년 법률57호)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동시에 제출된 연금관계법안은 ‘국민연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법률’(平成 6(1994)년 법률95호)이 성립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법개정은 노령연금의 표준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에 보조를 맞추어 이루어졌다.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연금제도와 고용의 법제도를 정비하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시기였다. 이하에서 94년 법개정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본다.

#### 1. 개정배경과 목적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는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21세기 초에는 연금재정의 악화가 전망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1985년 연금법제의 대개정에 이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년에 연금법제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연금제도는 장래의 재정균형을 이루기 위해 적어도 5년마다 ‘財政再計算’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였다(예컨대 국민연금법 제87조 제3항, 후생연금보험법 제81조 제4항). 법률의 규정에 따라 1989년 연금법제의 개정(재학생의 국민연금 강제가입, 완전자동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기금제도 도입, 피용자연금제도간 비용부담조정법제정 등)에 이어 1994년 연금법제의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당시 고령자세대의 1세대당의 평균소득금액은 연 317.1만 엔이고, 그 중 공적연금은 171.4만엔으로 소득의 54.1%를 차지하고 있었다(1993년 국민생활기초조사에 의함).

이렇게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하고 역할을 담당하고 노후생활안정의 불가결한 소득원이지만, 연금제도에 있어 최대과제는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특히 일본은 제1차 베이비붐세대(단괴세대)가 고령기를 맞이하는 2015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3,300만 명으로 급증하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제도를 유지시키는 세대인 ‘20세에서 59세까지의 인구’는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전인구의 55%를 유지하여 왔는데, 2000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50%까지 감소하여 그 이후에는 50%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되었을 뿐만 아니라 15세에서 59세까지의 노동력인구는 2010년부터 절대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본의 고령화율(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6%에 이르러, 국민의 4명중의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73년의 법개정으로 현재의 젊은 세대가 고령세대를 부양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부가방식의 연금제도는 이러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연금제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세대간·세대내의 공평·공정한 제도의 확립할 것인가가 최대의 과제로 되었다.

당시의 연금제도로는 안정적인 재정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일본은 고용기간은 연장하고 연금개시연령을 상향조정한다는 기본 원칙을 수립하였다(노령연금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안은 1989년 연금법제 개정안에서 제출되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94년 법개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①60세대 전반(즉 60~64세 이하)에 있어서는 고령자고용과 연금급여의 연계를 제고하고, 연금급여를 고용촉진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노령연금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것, ②장래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세대간·세대내의 급여와 부담의 균형을 이룰 것, ③사회변동에 따라 연금수준과 급여요건 등을 개정할 것 등이다.

## 2. 개정내용

### (1) 연금수급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연금재정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용자 연금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65세로 된다. 이것은 근로자의 생활과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65세까지는 고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고령자고용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대두한다.

<표 3> 노령후생연금의 지급개시연령

| 남 성   |     | 여 성   |     |
|-------|-----|-------|-----|
| 2001년 | 61세 | 2006년 | 61세 |
| 2004년 | 62세 | 2009년 | 62세 |
| 2007년 | 63세 | 2012년 | 63세 |
| 2010년 | 64세 | 2015년 | 64세 |
| 2013년 | 65세 | 2018년 | 65세 |

주) 1994년 후생연금보험법 개정법 부칙 제18·19·20조 참조.

### (2) 재직노령연금의 개선

따라서 직업에 종사하면 총수입이 증가하도록 하여 고용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재직노령연금제도를 개선하였다. 노령후생연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예외로 취업하고 있더라도 임금이 적은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제도가 재직노령후생연금제도이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에 지급되는 ‘특별노령후생연금’은 60세 이후 임금수입이 있는 경우(후생연금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인 경우), 임금에 비례하여 연금급여가 감액되어 진다(재직노령후생연금제도). 종래의 재직노령연금에서는

임금과 연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증가하면 이에 대응하여 연금도 감액되어 임금과 연금의 합산액(가처분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액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재직노령연금제도는 고령자의 취업의욕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94년 법개정에서는 연금제도 자체를 고용촉진적으로 개정하여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과 연금의 합산액도 증가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조정방법은 ①임금수입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20%감액하고, ②20%감액 후 연금과 임금의 합계월액이 22만엔이 도달하는 경우 연금과 임금은 합산하고, ③20%감액 후 연금과 임금의 합계월액이 22만을 넘는 부분부터 임금증가 2에 대해 연금액 1이 정지되고(즉 임금증가에 대해 연금이 2대 1 비율로 감액), ④ 임금이 월 34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34만엔을 초과하는 임금의 증가분 만큼 연금은 감액된다. 이러한 개선으로 세롭게 재직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재직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현재의 재직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도 증가하였다(〈표 4〉 참조).

〈표 4〉 임금과 연금의 합산액(연금 월액 20만엔의 경우)<sup>30)</sup>

| 임 금<br>()안은<br>표준임금 | 재 직 노 령 연 금 |                 |        |                 |
|---------------------|-------------|-----------------|--------|-----------------|
|                     | 개 정 전       |                 | 개 정 후  |                 |
|                     | 연 금 액       | 합계수입<br>(임금+연금) | 연 금 액  | 합계수입<br>(임금+연금) |
| 10만엔(9.8만엔)         | 14.0만엔      | 23.8만엔          | 14.1만엔 | 24.1만엔          |
| 15만엔(15만엔)          | 10.0만엔      | 25.0만엔          | 11.5만엔 | 26.5만엔          |
| 20만엔(20만엔)          | 6.0만엔       | 26.0만엔          | 9.0만엔  | 29.0만엔          |
| 25만엔(26만엔)          | -           | 25.0만엔          | 6.0만엔  | 31.0만엔          |
| 30만엔(30만엔)          | -           | 30.0만엔          | 4.0만엔  | 34.0만엔          |
| 34만엔(34만엔)          | -           | 34.0만엔          | 2.0만엔  | 36.0만엔          |
| 36만엔(36만엔)          | -           | 36.0만엔          | -      | 36.0만엔          |

30) 中村秀一, “九四年年金改正法の概要”, 『ジュリスト』 1063号, 1995, 35頁에서 인용.

그리고 고용보험급여와 후생연금급여의 병합수령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하여졌다. 민간근로자의 경우, 종래는 60세 정년 이후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고령구직자에게는 300일 분을 최대한도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어 ‘노령후생연금’과 병합수령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당해 고령구직자가 취업을 하지 않고 양쪽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합계수입이 취업한 경우의 수입보다 높아 취업의욕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은퇴한 자에 대한 연금과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합산은 불합리하고, 동시에 양쪽 급여의 중복지급은 사회보장급여로서 과잉이라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1996년 4월부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기본수당)’를 수급하는 동안은 노령후생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sup>31)</sup>

### (3) 보험료의 상향조정

급여와 부담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균표준보수월액산출의 재평가, 실업급여금의 지급에 따른 급여정지, 표준보수월액의 상한과 하한의 인상, 보험료·율의 인상, 특별보험료의 도입(상여금의 1%) 등을 개정하였다. 단적으로 말하면 **보험료의 인상**이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1995년 4월에 600엔 인상하여 11,700엔으로 하고 이후 매년 500엔씩 인상하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최종보험료는 2015년에 21,700엔으로 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후생연금보험법의 개정으로 후생연금에 대해서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당시의 124/1000에서 1994년 11월부터 165/1000, 1996년 10월부터는 173.7/1000으로 인상된다. 또한 보험료율을 5년마다 2.2% 인상하는 종래의 계획을 수정하여 2.5% 인상하여 최종보험료율은 2025년에 296/1000으로 계상하였다.

또한 후생연금에서 특별보험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후생연금보험료는 종래 월수입만을 보험료의 대상으로 하고, 3개월 이상의 기

31) 그러나 근로자측은 고용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은 법체정의 목적, 수행하는 역할 그리고 소관부처가 달라, 병합금지의 취지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庄司博一, “高年齢者の雇用と年金改革”, 『賃金と社会保障』 1134號, 1994, 14頁).

간마다 지급하는 상여금(보너스) 등은 보험료산정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94년 법개정에서는 보험료 징수대상을 확대하여 월 보험료를 줄이고 현직근로자세대내의 보험료부담에서 공평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상여금 등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동법 제3조 제1항 제4호). 특별보험료의 보험료율은 1%로 하고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특별보험료는 월 보험료와 달리 연금급여에 반영되지 않는다(후에 개정됨).

#### (4) 물가·임금연동제 개선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매년 4월에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연동에 의한 인상(94년 4월의 물가연동은 1.3%)에 부가하여 1989년 개정이후 생활수준향상으로 1994년 10월부터 월액 65,000엔으로 인상되었다(89년 법개정에 의한 노령기초연금은 월 55,500엔 이었다).

또한 재정재설계에서 후생연금의 경우는 임금상승분을 노령후생연금에 반영하는 임금연동제를 실시해 왔다. 임금연동제는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에 현직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곱하여 얻은 표준보수의 재평가로 실시해 왔는데, 94년 법개정에서는 현직근로자세대와 연금수급세대의 균형을 고려하여 종래의 방식을 변경하였다. 표준보수의 재평가에 있어 ‘현직근로자세대의 세금·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실질임금(가처분소득)의 상승률’을 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종래의 방식에서는 1988년도부터 1993년도까지의 재평가율(임금상승율)이 1.17%이었으나 신방식에 의하여 1.16%로 되었다. 이러한 물가연동율의 인상, 생활수준에 대응하는 기초연금·후생연금의 개정은 사회변동에 따라 연금수준과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5) 유족연금 등의 개선

유족기초연금의 지급요건 등의 대상으로 되는 자녀의 연령을 18세에서 18세가 되는 연도 말(즉 3월 말)까지 연장하여 취업기에 맞추도록 하였다. 유족후생연금과 노령후생연금의 병합조정을 개선하여 부(夫)의 기여

에 의한 유족후생연금과 처(妻) 자신의 기여에 의한 노령후생연금은 선택 제로 되어 있는 종래의 제도에서 새롭게 부부 각각의 노령후생연금의 2분의 1씩 병합할 수 있는 제도를 추가하였다(병합조정의 개선, 자녀의 연령연장).

또한 장해연금의 개선(소득제한의 개선 등), 육아휴업 중의 본인의 보험료면제, 연금수급권의 확보(고령자 임의가입 특례), 후생연금기금 등의 개선(면제보험료율의 산정방법 개선) 등을 실시하였다.

#### (6) 국고부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국고부담의 문제가 국회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다. 1985년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어 기초연금급여비용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였다(국민연금법 제85조). 그런데 94년 법개정에서는 국고부담의 상향조정안이 제기되었다. 국고부담의 상향조정으로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을 피할 수 있고, 보험료부담의 경감, 국민연금의 미가입자·체납자의 증가로 인한 국민연금의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고, 본래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당시 연립정권에 참여한 사회당의 주도로 국고보조 2분의 1 상향조정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나, 현실적인 재정부담의 문제로 국회의 부대결의(附帶決議)로서 ‘소요재원의 확보에 노력하며, 2분의 1을 목표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sup>32)</sup>

### 3. 개정에 대한 평가

21세기 활력이 있는 장수사회를 위해 고령자의 고용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전체의 바람직한상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 94년 법개정의 목적이 있었다. 이제까지 ‘60세에 은퇴하는 사회’를 전제로 만들어진 연금제도를 세계 제1의 장수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65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연금제도로 재편하고, 고용과 연금의 연계를 제고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더불어 급여와 부담의 균

32) 牛丸聰, “年金財政と國庫負担”, 『ジュリスト』1063号, 1995, 18頁.

형을 이루어 장래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급여축소를 단행하였다. 이를 위해 60세 정년제의 완전정착과 65세까지 계속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3년부터 강화된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고령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우선 정리대상으로 선정되어 고령자의 고용사정이 점점 악화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는 평가이다.

94년 법개정은 연금재정의 불안정이 현실화되어 급여총액의 억제와 보험료의 인상을 한층 더 강화한 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85년 법개정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나, 본격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과 고령자고용을 촉진(고령자고용관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연금부담의 경감을 시도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 고령사회와 복지건설을 위한 '신골드플랜'(新Gold-Plan, 厚生省 1994.8.2)이 수립되고 실행에 들어간 해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sup>33)</sup>

#### 제 4 절 2000년 연금법제의 개정 - 연금급여액의 하향조정

##### 1. 개정배경

2000년 당시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자수는 약 7,100만명, 수급자는 약 2,700만명으로 연금지급총액은 약 36.5조엔에 이르렀다. 그리고 공적연금은 고령자세대의 소득 가운데 63.6%로 확대되어 노후소득보장에서 그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해 의문의 여지는 없다. 동시에 일본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세대간부양'의 문제가 또다시 등장하였다.

연금수급자의 증가와 고령자를 부양할 짐은 세대의 인구비율이 점점 감소하여, 연금제도를 지원하는 자가 지원받는 자보다 적어지게 되어 연금재정의 압박은 물론 사회전반의 수요와 공급체계 및 사회자원배분의 문제가 재검토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가 멈추지 않고

33) 고령자의 공적 개호제도(long-term care)의 도입을 위한 법제정방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개호보험법 1997.12.17 제정).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률의 저하(경기침체)에 따라 생산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현직근로자세대의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래 젊은 세대의 부담능력의 한계,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국가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제기되는 기업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일본의 2000년 공적연금제도의 개정은 장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제도를 안정시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sup>34)</sup> ‘국민연금법등의 일부를개정하는법률(2000.3.31 공포, 2000.4.1 시행 법률 제18호)’을 통과시켰다.

## 2. 개정내용

### (1) 급여에 관한 개정사항

급여에 관한 중요한 개정사항은, 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의 급여수준 5% 적정화(하향조정), 65세 이후 연금액 개정방식의 변경, 노령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의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60대 후반(즉 65세 이상) 재직노령연금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급여의 4가지 개선을 통하여 급여총액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개정의 중심을 이루었다.

#### 1) 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의 급여수준의 5% 적정화

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의 ‘급여수준의 5% 적정화’라는 것은 후생연금액의 산정에서 사용되는 급여율(승수)을 5% 하향조정(구체적으로는 7.5/1000에서 7.125/1000)하여 결과적으로 급여액 5% 하향조정하는 것이다(2000년 4월 시행).<sup>35)</sup>

34) 장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무리없게 하기 위해서는, 고령사회의 정점에서도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을 연수입의 20%(본인부담률 10%)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원칙을 수립하였다.

35) 보수비례연금액은, 평균표준보수월액 × 급여(승수)율 × 피보험자기간월수로 산출하는데, 급여율이 작아지면 결과적으로 보수비례연금액이 축소된다.

## 2) 65세 이후 연금액 개정방식 변경

65세 이후 연금액 개정방식의 변경은, 이제까지 5년마다 급여액 재계산에서 기초연금은 고령자세대와 현직근로자세대의 소비지출(물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정을 실시하고, 후생연금은 현직근로자세대의 실제임금에 상응하여 연금액을 개정하여 왔다(임금재평가, 가치분소득 연동제). 그런데 장래 근로자세대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는 가운데 근로자세대의 임금상승분을 수급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근로자세대의 부담을 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임금에 상응하는 재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임금연동제 폐지, 2000년 4월 시행). 그렇지만 물가연동제는 유지되므로 연금의 실질가치는 하락되지 않아 연금수급자의 생활수준은 유지된다.

## 3) 노령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의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이미 94년 법개정에서 노령후생연금의 ‘定額部分’의 지급개시연령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2013년도에 걸쳐 3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하였다(여성의 경우는 5년 늦게 실시, <표 3>참조). 그런데 2000년 법개정에서는 노령후생연금의 ‘보수비례부분’의 지급개시연령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즉 정액부분의 지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이 완료되는 2013년도부터 실시하여 202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여성의 경우는 5년 늦게 실시).

## 4) 60대 후반 재직노령연금제도의 도입

또한 60대 후반의 재직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2002년 4월 시행). 즉 65세부터 69세까지의 60대 후반의 취업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노령후생연금을 전액 지급하여 왔으나, 기업의 임원 등 고액의 수입이 있는 고령취업자도 적지 않아 2000년 법개정에서는 수입이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임금에 따라 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기초연금은 전액 지급한다.

## (2) 부담 등에 관한 조정

### 1) 학생에 대한 보험료 납부유예제도 도입

2000년 법개정에서는 학생에 대해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였다. 20세 이상의 학생에 대해서는 89년 법개정으로 1991년도부터 강제가입 되었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생본인은 소득이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결과로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정의 요구가 높아 2000년 법개정에서는 학생본인의 소득이 일정수준(2000년도 기준 연수입이 133만엔) 이하인 경우, 신청에 의하여 재학기간 중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학생 납부특례를 인정받은 월부터 10년 이내에 보험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노령기초연금액의 산정의 기초로 사용된다.

### 2) 사업주 부담의 경감

육아휴직기간<sup>36)</sup> 중인 피보험자의 후생연금보험료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을 면제하는 개정이 있었다(2000년 4월 시행). 육아휴직기간 중의 후생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부담분만 면제되어 왔는데,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부담분도 함께 면제하였다.

### 3) 국민연금보험료 반액면제제도 도입

국민연금보험료의 반액면제제도를 도입하였다(2002년 4월 시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개정 전의 제도에 의하면, 현재의 2배 정도로 월액 26,400엔(1999년도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납부’ 또는 ‘전액

36) 1세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유아가 1세가 될 때 까지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다(‘육아휴업, 개호휴업등육아또는가족개호을행하는노동자의복지에관한법률’ 제5조 이하). 육아휴직기간 중의 임금에 관해서는 법은 침묵하고 있어 노사자치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로써 임금의 40%가 지급된다. 또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보험료의 본인 부담분은 면제된다.

면제'의 양자택일만 있었다. 보험료가 인상되어 가는 과정에서 부담능력에 따라 보다 세밀한 납부방식이 필요하게 되어 2000년 법개정에서는 일정소득 이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보험료의 반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반액면제기간' 중에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해기초연금' 및 '유족기초연금'은 각각 滿額이 지급되지만, 보험료를 추가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령기초연금 급여액 산정에서 반액면제기간은 보험료납부기간의 3분의 2로 평가한다.

#### 4) 총보수제 도입

총보수제를 도입하는 개정이 있었다(2003년 4월 시행). 후생연금 보험료에 대하여는 월수입의 17.35%의 보험료가 부과되고, 상여금(보너스)에 대해서는 특별보험료 1%를 부과하지만 급여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여금이 많고 부담능력이 높은 사람은 부담이 가볍게 되고, 상여금이 적고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은 부담이 무겁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2000 법개정에서는 '부담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보험료의 부과대상을 상여금까지 확대하는 한편, 계산되는 총수입의 증가라는 변화가 발생하므로 보험료율을 현재의 17.35%에서 13.58%로 하향조정하였다.

이와 함께 급여(승수)율도 현재의 7.125/1000에서 5.481/1000으로 하향조정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였다.

#### 5) 후생연금기금에 관한 개정

노후소득보장의 기본이 되는 것은 공적연금제도이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후생활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기업연금의 역할도 증대하고 있다.<sup>37)</sup> 일본의 기업연금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앞서 설명한 '후생연금기금'이다. 노령후생연금의 일부를 국가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기업의 실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가산지급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0년 법개정에서는 후생연금기금에 관한 개정이 있었다. 즉 후생연금기금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종래

37) 일본의 기업연금에 관해서는 방하남 외, 『기업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II)』, 노동연구원, 2001 참조.

부터 규제완화를 진행하여 왔다. 이번에도 ‘자기운용에 관한 자산규모규제의 철폐’, ‘운용대상자산의 확대’, ‘부금(賦金)의 현물각출 및 후생연금기금 간의 권리의무 승계의 인정’ 등 자산운용 및 사업운용의 양면에서 한층 더 규제완화가 있었다.

#### 6) 연금적립금 운용방법 등의 변경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완전한 적립방식도 완전한 부과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장래의 급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종래에는 적립금 전부가 大藏省(현재는 財務省) 자금운용부에 예탁되어, 우편저금과 함께 이른바 ‘재정투·융자’에 사용되었다. 2000년 법개정에서는 현재의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합해 140조 엔에 이르고 있는 연금적립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금제도 운영전반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후생장관(현 후생노동장관)이 전액 자주적으로 운용하는 구조로 개편하였다(2001년 4월 시행).<sup>38)</sup> 구체적으로 후생대신은 운용목표 및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의 구성비율 등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연금자산의 관리운용은 법인으로 설립되는 ‘연금자금운용기금’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연금자금운용기금은 후생대신이 작성한 운용기본방침에 범위내에서 독자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관리운용방침을 정하여 민간운용기관(신탁은행, 생명보험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에 운용위탁하거나 체권 등의 자가운용 등을 실시한다. 또한 후생대신 및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도 철저히 행하도록 하였다. 연금자금운용기금의 설립으로 이제까지 각종 융자업무 및 자금운용업무를 담당해온 연금복지사업단은 폐지되었다.

### 3. 개정에 대한 평가

2000년 법개정의 목적이 ‘안심과 신뢰의 연금제도의 구축’, ‘무리가 없는 부담으로 확실한 급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급여와 부담에 관하여 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학생의 국민연금 보험료납부유예제도의

38) 西村淳, “年金改革關連法”, 『ジュリスト』 1185号, 2000, 67頁.

도입, 육아휴업기간 중 후생연금보험료의 사업주부담분 면제, 국민연금보험료 반액면제제도의 도입, 총보수제 도입, 표준보수의 상·하한의 개정 등이 있었다. 또한 2000년 법개정에서는 사회·경제정세를 고려하여 후생연금 보험료율(17.35%) 및 국민연금 보험료(13,300엔)를 동결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진 개혁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sup>39)</sup>

우선 지출을 억제(급여축소)하는 개정에 있어서 '5% 적정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연금액의 5%를 하향조정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지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에서는 고용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즉 ①연금정책의 기본구조 뿐만 아니라 고용정책에서 정년연장에 집중할 것인가, ②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금지라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낼 것인가, 아니면 ③종래와 같이 60세부터 65세까지는 비정규고용과 부분적인 공적급여의 조합으로 연계해 나아갈 것인가, 라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 예정된 보험료가 1994년에 이어 2000년 개정에서도 동결된 것이 정확하고 치밀한 보험료계산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배려에 의한 것이라면 부담을 후대로 미루는 것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적립금운용에 관하여 후생장관이 전액을 자주적으로 운용하는 구조는 '연금수급자의 이익이 최대로 반영되는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관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고부담에 대해서 '기초연금의 급여수준 및 재정방식을 포함하여 그 바람직한 방향을 폭넓게 검토하며 2004년까지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고, 국고부담비율을 2분의 1로 상향조정한다'는 부칙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국고부담의 상향조정은 현재의 부담과 장래의 고령화 진행과 더불어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안정된 재원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음 연금관련 법개정에서는 재원확보가 또다시 초점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39) 森戸英幸, “厚生年金保険の現状と課題”, 『21世紀の社会保障法』(講座 社会保障法 第2卷), 法律文化社, 2001, 96頁 이하.

## 제 5 절 2004년 연금법제의 개정 – 보험료(율) 고정방식 도입

### 1. 개정배경

일본은 계속되는 출산율저하와 인구의 고령화가 한층 더 진행되어,<sup>40)</sup> 제1차 베이비붐세대가 고령기(즉 65세 이상, 노령연금생활자로 전환)를 맞이하는 2015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26%를 넘어 국민 4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된다. 이에 일본은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를 구축하고, 국민연금제도 및 후생연금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 진전된 제도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행 급여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20,000엔(국고부담이 1/2인 경우, 국고부담이 1/3인 경우에는 28,900엔), 후생연금보험료는 22.8%(각출금의 국고부담이 1/2인 경우, 그것이 1/3인 경우에는 26.0%)에 이른다는 후생노동성(2003년 11월)의 계산이 발표되었다.

2004년 법개정의 기본적인 방향은 2000년 법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와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제도구축과 제도에 대한 신뢰확보, 즉 장래 근로세대의 부담을 과중하지 않게 하는 것과 함께 고령기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한 급여수준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빈번한 제도변화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100년간 지속가능한 제도를 정착한다는 것에 두었다. 그리고 다양한 생활과 취업방식에 상응하는 제도로 구축하여 생활과 근로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면서, 취업 등 다양한 형태의 공헌이 연금제도상 평가되는 구조로 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sup>41)</sup>

---

40) 일본의 장래추계인구(2002년 1월 추계)에서는 미혼·만혼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 외에 부부의 출산력 자체도 저하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41)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참조.

## 2. 개정내용

### (1) 부담 및 급여에 관한 개정

#### 1) 보험료(액) 고정방식의 도입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률을 1/3에서 1/2로 상향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04년도부터 국고부담률 상향조정에 착수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2009년까지 부담률의 상향조정을 완료한다. 더불어 보험료 및 보험료율을 인상하였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월액)는 2005년 4월부터 매년 280엔씩 인상하여 2017년도 이후에는 16,900엔(2004년도 가격)으로 고정하고,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율은 2004년 10월부터 매년 0.354%씩 인상하여 2017년도 이후에는 18.3%로 고정한다. 즉 2017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보험료(액)를 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요컨대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고정한 다음, 연금재정수입의 범위 내에서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구조로 전환하였다(수입에 의해 지급을 결정). 그러나 ‘보험료고정방식’은 실제로 보험료가 고정되지 않고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연금개혁관련법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급여수준의 하한을 규정하고, 즉 “후생연금에 40년 가입하고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모델 세대의 급여수준이 현직근로자세대의 평균소득 50%를 밑돌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의 여지는 있다.

#### 2) 급여에서 거시경제 연동제 도입

연금급여수준의 적정한 조정을 위하여 거시경제 연동제를 도입하였다. 사회전체의 보험료부담능력의 증감을 연금급여율에 반영시켜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거시경제 연동조정율은 공적연금전체의 피보험자수의 감소 + 평균연금수급기간(평균여명)의 증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표준적인 후생연금(부부의 기초연금을 포함)의 세대의 급여수준은 적

어도 현직근로자세대의 평균수입의 50%를 상회하도록 하여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2) 재직노령연금제도 등의 개정

60세부터 65세 미만의 재직노령후생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종래 일률 20% 지급정지해 오던 것을 폐지하여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2005년 4월 시행). 또한 70세 이상의 취업자의 후생연금급여에 대해서는 60대 후반의 취업자와 동일하게 임금과 노령후생연금의 합계액이 현재 취업 중인 피보험자의 평균수입을 상회할 경우에는 노령후생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2007년 4월 시행). 65세 이후의 노령후생연금에 대해서 연기제도를 도입하였다(2007년 4월).

#### (3)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후생연금 적용확대

고용(취업)형태의 다양화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연금보장을 충실하게 한다는 관점 및 기업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경제상황, 단시간근로자가 많이 취업하는 기업에 대한 영향 및 고용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근로자 및 기업이 고용(취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인 구조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4) 차세대육성지원의 확대(2005년 4월 시행)

자녀가 3살이 될 때까지 취득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하고, 근무시간단축 등으로 표준보수가 저하된 경우에는 연금급여액의 계산에서 저하되기 전의 표준보수로 인정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 (5) 여성의 연금수급권의 강화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 기간 중에 형성한 후생연금의 분할제도를 도입하였다(2008년 4월 시행). 즉 피부양배우자를 가진 피보험자가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와 피부양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담한 것이라는 기본인식으로부터, 제3호피보험자 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또는 분할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한 경우, 그 배우자의 후생연금의 2분의 1을 분할할 수 있다(2007년 4월 시행). 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후생연금을 분할할 수 있으며, 보험료납부기록을 토대로 당사자 쌍방의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연금합계액의 절반을 상한으로 한다. 요컨대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연금합계액 최대 1/2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 (6) 유족연금제도의 개선(2007년 4월)

자녀가 없는 30세미만의 유족배우자의 유족후생연금은 5년간 한시적으로 급여하고, 중고령과부(미망인)의 가산금(연 597,000엔) 지급대상은 3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하였다.

#### (7) 장해연금의 개선(2006년 4월)

장해가 있으면서도 직업을 가지고 일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장해기초연금과 노령후생연금 또는 유족후생연금의 가산지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 (8) 국민연금 보험료의 징수강화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율은 2002년에 62.8%까지 저하되었고, 특히 20대에서는 50%를 넘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후술하는 <표 5> 참조). 국민연금 보험료의 징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단계면제제도를 도입하였다(2006년 4월 시행). 즉 현행 전액면제·반액면제에 3/4면제·1/4면제제도를 추가하였다. 또한 젊은 층의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였다(2005년 4월 시행). 실업 등으로 저소득의 젊은 층이 소득이 높은 세대주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면제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20대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보험료납부를 유예하고, 장래 부담할 수 있을 때(단 10년 이내) 보험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3. 개정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는 우선 급여수준을 설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정하는 방식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우선 장래에 부담할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연금급여와 보험료부담에 대한 정책전환이 있었다. 따라서 연금급여액과 부담율은 개정 때마다 논쟁의 대상이 되고, 급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과탄할 우려가 있는 등 국민의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왔는데, 2004년 법개정은 이러한 악순환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보험료고정방식의 공적연금제도가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하는 견해도 다수 존재한다. 연금수급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결국 연금감액으로 이어지고, 일정한 경우 또다시 보험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어 안정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고, 연금급여액을 계속적으로 감액한다는 이유로 반대여론이 강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율을 5년 후 80%를 실현하기 위해 다단계면제제도 도입, 젊은 층의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고용의 불안정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국고부담에 대해서는 국고부담을 강조하는 견해와 이에 문제점을 제시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제 4 장 일본의 공적연금법제의 향후과제 및 시사점

### 제 1 절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향후과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사회보장법제 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1960년대 형성되었고, 1980년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 초에 달성된 전국민연금제도는 1973년에 재정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고,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한 1985년 연금관련법개정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있었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에 관한 논의는 1985년 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sup>42)</sup> 그리고 1985년 이후 일련의 연금법제의 개정은 검토한 바와 같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래의 연금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행하여졌다는 평가이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자조노력·상호부조를 원칙으로 하여, 보험료(소득비례)와 연금액을 대응시키는 세대간·세대내의 소득재분배로 인한 부양을 기본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압박이 있을 경우, 즉시 보험료를 인상하고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는 통하여 연금재정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현직근로자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것(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연금생활자의 급여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2004년 개정에서는 보험료(율)를 고정하고, 고정된 보험료에 따라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의 부담 즉 현직근로자세대에게는 부담의 확정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수급자에게는 급여액이 하향변동할 수 있어 노후소득보장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2004년 연금관련법 개정 이후 검토하여야 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 1. 국민연금의 空洞化 문제

국민기초연금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제1호 피보험자는 定額을 부담하고, 제2호 피보험자는 소속하고 있는 피용자연금관장자 보험료를 부담하여 기

42) 河野正輝, “社会保障法の目的理念と法体系”, 『21世紀の社会保障法』(講座 社会保障法 第1巻), 法律文化社, 2001, 5頁 이하.

초연금의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이 없는 제3호 피보험자는 자기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구조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가장 많이 비판과 논의가 있는 것이 바로 제3호 피보험자제도에 관한 것이다. 특히 제3호 피보험자제도는 피용자의 전업주부을 우대하는 것으로 일하는 여성이나 자영업자의 처<sup>43)</sup>와의 형평성이 결여하였고, 따라서 여성의 취업을 억제하는 제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다.<sup>44)</sup>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미가입과 보험료 미납의 문제이다. 사회보험청의 조사에 의하면 미가입자 및 보험료 미납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고, 특히 20대에서는 50%도 미달한다는 것이다(〈표 5〉 참조).

〈표 5〉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율

(단위 : %)

| 연 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징수율 | 82.9  | 79.6  | 76.6  | 74.5  | 73.0  | 70.9  | 62.8  |

국민연금의 미가입 및 보험료 미납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무연금자 및 저액의 연금밖에 받지 못하는 고령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이러한 자가 결국 생활보호제도(공공부조)에 의해 소득을 보장받을 경우, 전국민연금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초연금제도의 의의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국민연금의 공동화'라고 한다. 약 38%에 이르는 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는 사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의 개정에서

43) 같은 전업주부라도 자영업자의 처는 제1호 피보험자로 되어, 월 13,300엔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44) 竹中康之, “公的年金と女性”, 『21世紀の社会保障法』(講座 社会保障法 第2巻), 法律文化社, 2001, 142頁 이하.

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다단계 납부방식을 도입하였지만,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여 그 성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또한 젊은 세대에 한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규직에 종사하지 않는 또는 종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가 국민연금 미가입 및 보험료미납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도 일본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 2. 재정의 문제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즉 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 낮은 고령자에게 필요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여 헌법 제25조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사고를 연금재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생존권을 전제로 하는 생활우선의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적연금제도는 우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①생산성향상의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법, ②대기업·고액소득자에 대한 조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방법, ③연금적립금에 대한 피보험자의 자주적 운용 등을 통한 이익향상 등으로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을 조세부담방식으로 하자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방식으로 할 경우 현재 5%의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고는 재원마련이 불가능하고, 소비세의 인상은 내수경기를 침체시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연금재정도 악화한다는 주장도 매우 강하다.

2004년 개정에서는 국고부담률을 1/3에서 1/2로 인상하였지만, 국민연금의 재원을 사회보험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세부담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뿌리깊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sup>45)</sup>

---

45) 결국 기초연금에 대한 주장은 ①원리적 측면, ②이념적 측면, ③기술적 측면, ④실현 가능성 측면, ⑤실리적 측면으로 검토되어질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느 측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규정되어 지고, 그것은 가치판단의 문제로 된다. 小島晴洋, "基礎年金の制度設計", 『21世紀の社会保障法』(講座 社会保障法 第2卷), 法律文化社, 2001, 67頁 이하.

〈표 6〉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부담방식의 비교

|                 | 사회보험방식               | 조세부담방식                  |
|-----------------|----------------------|-------------------------|
| 재 원<br>원리 및 방식  | 보험료<br>교환(계약)의 원리    | 조 세<br>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소득이전 |
| 급여와 부담<br>소득 제한 | 각출이 없으면 급여도 없음<br>없음 | 급여와 부담은 무관계<br>있음       |
| 급여 형태           | 소득비례연금이 가능           | 일률정액급여                  |
| 권 리 성           | 권리성의 의식이 강함          | 권리성의 의식이 약함             |

### 3. 공적연금의 일원화 문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각 제도에서 유래하는 부담과 급여방식으로 인하여 각 제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정단위 확대 및 공통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의 평준화 등 통일적인 공적연금의 제도를 형성하기 위하여 공적연금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고자 2004년 연금개정법안에는 2007년까지 공적연금 일원화를 이루고, 제도개선을 검토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여당인 자유민주당(自民黨)은 소득비례연금(피용자)인 후생연금보험과 공무원 등의 공제조합과의 일원화를 의미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포함하는 일원화를 제시하고 있어서 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조차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일본은 공적연금제도에서 공통부분의 확대를 통하여 공평한 부담과 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적연금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방향성 및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 제 2 절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시사점

### 1. 기초연금도입의 문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보건복지부 2003.8.19)는 연금제

정의 안정적 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국회계류 중이다.<sup>46)</sup> 즉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대비와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금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여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소득의 9%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0%까지 높이며, 연금지급액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생애소득(소득대체율)의 60%에서 50%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단적으로 말하면, 연금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보험료는 더 내고 노령연금은 덜 받는다’는 것이다.<sup>47)</sup> 이에 대하여 노동자단체는 물론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 단체도 반대하고 있다(사업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노사가 반분하여 부담, 동법 제75조 제2항). 특히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도시거주자영인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되어 강하게 반대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심지어는 국민연금제도의 폐지까지 주장되고 있음), 이에 대한 검토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sup>48)</sup>

이에 일본의 기초(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의 실정에 고려하여 보면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보험료의 상향조정과 급여의 하향조정만으로는 문

46) 정부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47)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30년에는 15.90%까지 인상하고,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소득의 60% 수준인 연금수급액은 내년부터 55%로 인하하고 2008년부터는 50%로 더 낮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8)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그 금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으로 한다(국민연금법 제75조 제3항). 그렇지만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시행초기의 부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2005년 7월에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할 예정이다(1998.12. 31.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1항).

|                 |                   |
|-----------------|-------------------|
| 1999.4 ~ 2000.6 |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30 |
| 2000.7 ~ 2001.6 |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0 |
| 2001.7 ~ 2002.6 |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50 |
| 2002.7 ~ 2003.6 |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60 |
| 2003.7 ~ 2004.6 |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 |
| 2004.7 ~ 2005.6 |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80 |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요컨대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와 같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단계구조로 재구축하고, 1인 1연금제도(연금의 개인화)의 도입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제1단계의 기초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하고, 定額을 지급하는 노령연금(1인 1연금으로 최저생활을 보장)으로 하며, 제2단계의 직역에 따라 구분하고 피보험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하는 2단계구조이다. 후자의 소득비례부분은 '사회연대에 의한 사회 위험의 분산'이라는 사회보험의 목적을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저생활부분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국고보조(公費)가 최대한 투입되어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소득재분배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최저생활부분)과 소득비례부분(상당생활수준 부분)<sup>49)</sup>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구분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적 연금 제도의 2단계화 및 1인 1연금제도는 우리의 헌법체계와 조화를 이루며,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제1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 재원확보의 문제

공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안정적 운영은 연금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관건이 된다. 그런데 평균수명의 연장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연금급여의 지출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공적연금제도를 실시

49) 상당생활수준의 보장(adequate standard of living)이라 함은, 최저생활보장단계를 거쳐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충실히지는 단계를 말한다. 노상현, "고령사회의 노동시장변화와 사회보장법제의 과제", 『(고령법제지원 워크샵)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시장변화와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4.

하는 선진외국 중에서 연금체정위기로 곤란을 경험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공적연금의 재원확보문제는 ‘보험료’와 ‘국고(조세)’의 양자를 적절히 활용하여 국민부담과 국가재정과의 균형을 이루고,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법의 수정적립방식의 연금제도로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언급한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이를 전제로 국고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3. 특수직역연금의 통합문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공적연금제도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며, 또한 특수직역연금 상호간에도 각 제도에서 유래하는 재정부담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있다.<sup>50)</sup> 노후 소득보장과 이미 발생된 권리에 대한 변동에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급격한 연금제도의 변혁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특수직역연금의 일원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1985년 공적연금을 일부 통합하였고, 또다시 피용자연금을 통합하고자 하는 일본의 계획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

50) 즉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직업군인들은 적어도 자기가 받던 봉급의 50%이상을 연금으로 일생동안 수급한다. 그러나 이 특수직종에 속한 연금보험가입자는 우리나라 전체 연금보험가입자의 7.13%에 불과하다. 나머지 다른 직종에 속한 연금보험가입자(국민연금)는 전체 연금보험가입자의 92.87%에 달한다. 20년을 근속한 국민연금보험가입자의 평균소득자인 경우, 소득대체율은 30%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시정이 주장되고 있다(이상광, 법률신문, 2004.6.23, 제3277호).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관련 주요연표〉

|       |  |
|-------|--|
| 1875년 | 海軍退隱令 공포   |
| 1876년 | 陸軍恩給令 공포   |
| 1884년 | 官吏恩給令 공포   |
| 1923년 | 恩給法 제정   |
| 1939년 | 선원보험법 제정   |
| 1941년 | 노동자연금보험법 제정<br>(노동자연금보험제도의 창설,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근로자만을 대상)                                      |
| 1944년 | 후생연금보험법 제정 (대상을 여성 및 비생산직 근로자까지 확대)  |
| 1946년 | 일本国헌법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
| 1953년 | 은급법(恩給法)개정 (은급제도의 부활)  |
| 1954년 | 후생연금보험법 전면개정 (노령연금을 정액부분·보수비례부분으로 조합, 재정방식을 수정적립식으로), 사립학교공제조합 설립                        |
| 1956년 | 공공기업체공제조합 설립   |
| 1959년 | 국가공무원공제조합설립, 농림어업단체공제조합설립, 무각출형 복지연금제도도입   |
| 1960년 | 국민소득 2배증진 계획책정   |
| 1961년 | 각출형 국민연금제도 도입, 전국민연금제도 정비  |
| 1962년 | 지방공무원공제조합 설립   |
| 1965년 | 연금법제 개정 (월액 1만엔 후생연금실현, 후생연금기금제도 도입)   |
| 1966년 | 연금법제 개정 (부부월액 1만엔 국민연금실현)  |
| 1969년 | 연금법제 개정 (월액 2만엔 후생연금실현)  |
| 1973년 | 복지원년 선언, 석유위기, 연금법제의 개정<br>(월액5만엔 후생연금실현, 부부월액 5만엔 국민연금실현, 임금연동제와 물가연동제 도입, 수정부가방식으로 전환) |
| 1980년 |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에 관한 논의 시작   |
| 1981년 | 임시행정조사회 발족 (재정개혁)  |
| 1984년 | 건강보험법 개정 (본인 부담율 10%, 퇴직자의료제도 도입)  |
| 1985년 | 연금법제 개정 (기초연금+피용자연금; 중층구조 연금제도, 전업주부의 연금권 확보, 국고부담은 기초연금에 집중)                            |
| 1989년 | 연금법제 개정 (학생의 국민연금 강제가입, 완전자동물가 연동제 도입, 국민연금기금제도 도입, 피용자연금제도간 비용부담조정법제정 등)                |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관련 주요연표〉

|       |   |
|-------|---|
| 1994년 | 연금법제 개정<br>(연금수령의 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고용촉진을 위한 재직노령 연금제도의 도입, 육아휴업 중 본인보험료 면제, 특별보험료 도입)      |
| 1996년 | 기초연금번호 실시, 연금법제 개정 (파용자연금제도의 재편성)   |
| 1997년 | 개호보험법 제정 (2000년 4월 시행), 건강보험법 개정 (본인부담률 20% 등)  |
| 2000년 | 연금법제 개정 (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 급여수준의 5% 하향조정, 65 세 이후 연금액 개정방법의 변경, 노령후생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 총보수제 도입) |
| 2004년 | 공적연금법제 개정 (보험료고정제도, 여성의 연금권 강화 등)   |

〈부 록1〉

## 국민연금법

제정 : 昭和 34(1959)년 4월 16일 법률 제141호

최종개정 : 平成 14(2002)년 7월 31일 법률 제98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국민연금제도는 일본국현법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념에 의거하여 노령, 장해 또는 사망에 의해 국민 생활의 안정이 위협받는 것을 국민공동연대로 방지하고, 이로써 건전한 국민생활의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국민연금의 급여) 국민연금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노령,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다.

제 3 조 (관장) ①국민연금사업은 정부가 관장한다.

②국민연금사업의 일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에 의해 조직된 공체조합(이하 ‘공체조합’이 한다.), 국가공무원공체조합연합회, 지방공무원공체연합회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체법(昭和 28(1953)년 법률 제24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공체제도를 관장하는 일본사립학교 진흥·공체사업단(이하 ‘공체조합 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 2004년 6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하였지만, 통과 후 개정법 조문에 문자 및 자구에서 실수가 발견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일본정부(總務省) 홈페이지(<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에는 아직 게재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2002년 개정법을 수록하였다. 2004년 개정부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③국민연금사업의 일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의 장(특별구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연금액의 개정) 이 법률에 의한 연금의 액은 국민생활수준, 기타 제반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동 후의 제반사정에 적합하도록 신속하게 개정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률에서 “피용자연금각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후생연금보험법 (昭和 29(1954)법률 제115호)
2.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昭和 33(1958)년 법률 제128호)
3.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법 (昭和 37(1962)년 법률 제152호)(제11장을 제외한다.)
4. 사립학교교직원공제법

②이 법률에서 “보험료납부완료기간”이라 함은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보험료를 포함하고, 제9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반액에 대해 면제받아 반액만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관계된 것으로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기간 및 동항 제3호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이 법률에서 “보험료면제기간”이라 함은 보험료전액면제기간과 보험료반액면제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④이 법률에서 “보험료전액면제기간”이라 함은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기간으로, 제89조, 제90조 제1항 또는 제9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가 면제된 보험료 중,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는 피보험자기간을 제외하고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⑤이 법률에서 “보험료반액면제기간”이라 함은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 기간이고 제9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액에 대하여 면제를 받았던 보험료(반액에 대해 납부된 것

에 한한다.)에 관계된 것 가운데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는 피보험자기간을 제외하고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⑥이 법률에서 “배우자”, “夫” 및 “妻”이라 함은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⑦이 법률에서 “피고용자연금보험자”이라 함은 후생연금보험의 관장자인 정부 또는 연금보험자인 공제조합 등을 말한다.

⑧이 법률에서 “연금보험자인공제조합 등”이라 함은,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 지방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 또는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을 말한다.

제 6 조의 2 (권한위임) ①이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보험청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사회보험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사회보험사무국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험사무소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제 6 조의 3 (사무구분)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제105조 제2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및 제10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 및 부칙 제9조의 3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촌이 처리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昭和 22(1947)년 법률 제67호)제2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 제 6 조 삭제

### 제 2 장 피보험자

제 7 조 (피보험자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의 피보험자로 한다.

〈부 록1〉

1. 일본국내에 주소를 갖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피고용자연금 각법에 근거한 노령 또는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는 연금급여, 기타 노령 또는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는 급여로 정령으로 정한 것(이하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근거한 노령급여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한다. 이하 '제1호 피보험자'라 한다.)
  2. 피고용자연금 각법의 피보험자, 조합원 또는 가입자(이하 '제2호 피보험자'라 한다.)
  3. 제2호 피보험자의 배우자로 주로 제2호 피보험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제2호 피보험자를 제외한다. 이하 '피부양배우자'라 한다.) 가운데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이하 '제3호 피보험자'라고 한다.)
    - ②전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로 제2호 피보험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 ③전항의 인정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平成5(1993)년 법률 제88호) 제3장 (제12조 및 제14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자격취득 시기) 전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는 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1에 해당하는 한 날에, 20세 미만의 자 또는 60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제4호에 해당하는 날에, 기타 자에 대해서는 동호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다.

1. 20세에 도달한 때.
2.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는 때.
3.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의거하여 노령급여 등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때.
4. 피고용자연금 각법의 피보험자, 조합원 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피부양배우자가 된 때.

제9조 (자격상실의 시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제2호에 해당하는 날, 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일본국내에 주소를 상실한 때(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3. 60세에 도달한 때(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4.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의한 노령급여 등의 수급자로 된 때(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는 제외한다.).
5.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의한 피보험자, 조합원 또는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6. 피부양배우자가 없는 때(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제10조 (임의탈퇴) ①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제1호 피보험자로 되는 경우 또는 제2호 피보험자 또는 제3호 피보험자가 제1호 피보험자로 되는 경우, 그 자의 다음 각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미만인 때에는 그 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라도 사회 보험청장관의 인정을 받아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제2호 피보험자 또는 제3호 피보험자가 제1호 피보험자가 된 날이 속한 달부터 60세가 된 날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
  2. 그 자가 피보험자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 기간
-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자는 동항의 인정을 받았던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가 제1호 피보험자가 된 경우, 동항의 승인신청이 그 자가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자는 소급하여 피보험자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2호 피보험자 또는 제3호 피보험자가

〈부 록1〉

제1호 피보험자가 된 경우 동항의 승인신청이 당해 제1호 피보험자가 된 날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자는 당해 제1호 피보험자가 된 날로 소급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피보험자기간의 계산) ①피보험자기간의 계산은 달로 하며,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산입한다.

②피보험자가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달을 1월로 피보험자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그 달에 다시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전후의 피보험자기간을 합산한다.

제11조의 2 제1호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기간, 제2호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기간 또는 제3호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종별(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또는 제3호 피보험자의 구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이 있던 달은 변경 후 종별의 피보험자의 달로 본다. 같은 달에 2회 이상 피보험자 종별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달은 최후 종별의 피보험자의 달로 본다.

제12조 (신고) ①피보험자(제3호 피보험자를 제외한다. 다음 항도 같다.)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 상실, 종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성명, 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정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피보험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이하 “세대주”라 한다.)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전항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③주민기본대장법(昭和 42(1967)년 법률 제81호)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당해 신고에 관계된 서면에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기가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신고와 동일한 사유에 근거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시정촌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험청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호 피보험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 상실, 종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성명, 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사회보험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신고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생연금보험법의 피보험자인 피보험자의 피부양배우자인 제3호 피보험자는 그 배우자인 제2호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경유하여 행하는 것으로 하며, 국가공무원공제조합 또는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법의 조합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제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공제제도의 가입자(이하 "사학교직원공제제도의 가입자"라 한다.)로 있는 제2호 피보험자의 피부양배우자인 제3호피보험자는 그 배우자인 제2호 피보험자를 조합원 또는 가입자로 하는 국가공무원공제조합,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 또는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을 경유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⑦전항에 규정한 제2호 피보험자를 사용한 사업주라 함은 후생연금보험법의 피보험자인 제2호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사업소(동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소를 말한다.)의 사업주(동법 제27조에 규정한 사업주를 말한다.)를 말한다.

⑧제6항에서 규정한 제2호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동항의 관계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 사업주가 설립한 건강보험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⑨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신고가 제2호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국가공무원공제조합,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 또는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에 수리 된 때에는 그 수리가 된 때 사회보험청장관에게 신고가 있던 것으로 본다.

제13조 (국민연금수첩) ①사회보험청장관은 전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취지의 보고를 받은 때,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호 피보험자자격의 취득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 〈부 록1〉

당해 피보험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수첩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보험자가 이미 국민연금수첩의 교부를 받고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민연금수첩의 양식 및 교부 기타 국민연금수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국민연금원부) 사회보험청장관은 국민연금원부를 구비하고, 여기에 피보험자의 성명, 자격취득 및 상실, 종별의 변경, 보험료의 납부 상황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 3 장 급 여

### 제 1 절 통 칙

제15조 (급여종류) 이 법률에 의한 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노령기초연금
2. 장애기초연금
3. 유족기초연금
4. 부가연금, 과부연금 및 사망일시금

제16조 (재정) 급여를 받을 권리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고 한다.)의 청구에 의거하여 사회보험청장관이 재정한다.

제16조의 2 (연금액의 자동개정) ①연금인 급여(부가연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총무성이 작성한 연평균 전국소비자물가지수(이하 “물가지수”라 한다.)가 平成 10(1998)년(본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급여액의 개정조치를 강구하는 때에는 최근 당해 조치가 강구된 해의 전년)의 물가지수를 초과 또는 하회하는 경우, 상승 또는 하회한 비율을 기준으로 그 다음해 4월 이후의 당해 연금급여액을 개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급여액의 개정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단수처리) ①연금인 급여(이하 “연금급여”라 한다.)를 받을 권리  
를 개정하는 경우 또는 연금급여액을 개정하는 경우, 연금급여액(제33  
조의 2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액은 제외한다.) 또는  
당해 가산하는 액에 50엔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때에는 절삭하고, 50  
엔 이상 100엔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100엔으로 절상한  
다.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기초연금액을 계산하는 경  
우 제38조에서 정한 액 및 동항에 규정한 가산액에 대하여도 같다.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연금급여액의 계산에서 생기는 1엔 미만의 단  
수처리에 관하여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연금지급기간 및 지불기월) ①연금급여의 지급은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하며, 권리가 소멸한 날  
이 속한 달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②연금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  
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  
까지의 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이러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한 경우  
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연금급여는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및 12월의 6기에 각각  
의 전월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다만 전 지불기월에 지급하여야 하는 연  
금, 권리가 소멸한 경우 또는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의  
연금은 그 지불기월이 아닌 달이더라도 지급한다.

제18조의 2 (사망추정)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이 된  
때, 실제로 그 선박에 타고 있던 자 또는 그 선박의 항해 중에 행방불  
명이 된 자의 생사가 3개월간 알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자의 사망이 3  
개월 이내에 분명하여지고 또한 그 사망의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이 된 날 또는 그 자가 행방  
불명이 된 날에 그 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이 된 때, 실제로 그 항공기에 타고 있던 자 또는 그 항

〈부 록1〉

공기의 항해 중에 행방불명이 된 자의 생사가 3개월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자의 사망이 3개월 이내에 분명하여지고, 또한 그 사망의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18조의 3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본 자에게 관계되는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37조, 제37조의 2, 제49조 제1항, 제52조의 2 제1항 및 제52조의 3 제1항 중 “사망일”은 “행방불명이 된 날”로, “사망 당시”는 “행방불명이 된 당시”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 또는 급여지급의 요건이 되고, 또는 그 액의 가산의 대상이 되는 자의 신분관계, 연령 및 장해 상태에 관계되는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미지급연금) ①연금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금급여가 아직 그 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써, 그 자의 사망당시 그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 미지급의 연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사망한 자가 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그 자의 사망당시 당해 유족기초연금의 지급요건이 되고, 또는 그 액의 가산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인 자의 자녀는 동항에 규정한 자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사망한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그 연금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동항에 규정한 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미지급연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제1항에 규정한 순서에 의한다.

⑤미지급연금을 받을 동 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1인이 행한 청구는 전원을 위해 그 전액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인에 대한 지급은 전원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병급조정) ①연금급여(노령기초연금 및 부가연금을 제외한다.)는 그 수급권자가 다른 연금급여(부가연금을 제외한다.) 또는 피고용자연금각법에 의한 연금급여(당해 연금급여와 동일한 지급사유에 의거하

여 지급된 것을 제외한다. 이하 동조에서 같다.)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당해기간 그 지급을 정지한다.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연금급여(부가연금을 제외한다.) 또는 피고용자연금각법에 의한 연금급여(유족후생연금 및 퇴직공제연금 및 유족공제연금을 제외한다.)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당해 노령기초연금에 대해서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이 정지된 연금급여의 수급권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의 정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자에 관한 동항에서 규정한 다른 연금급여 또는 피고용자연금각법에 의한 연금급여에 대하여 본항의 본문 또는 다음 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으로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 정령에 의하여 그 지급정지가 해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이 정지된 연금급여에 관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지급분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때에 당해 연금급여에 관한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신청(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신청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포함한다.)은 언제라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 (연금지급의 조정)** ①乙연금 수급권자가 甲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여 乙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고, 또는 동일인에 대하여 乙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甲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乙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고, 또는 乙연금의 지급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지급분으로서 乙연금의 지급이 행하는 때에는 그 지급된 乙연금은 甲연금의 내입금으로 본다.

②연금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 불구하고 그 정지하여야 하는 기간의 지급분으로서 연금지급이 되는 때에는 그 지급된 연금은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는 연금의 내입금으로 볼 수 있다. 장해기초연금 또는 유족기초연금을 감액하고 개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지급분으로서 감액하지 아니한 액이 장해기초연금 또는 유족기초연금으로

〈부 록1〉

지급된 경우에는 당해 장해기초연금 또는 유족기초연금의 당해 감액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같다.

③동일인에 대하여 후생연금보험법에 의한 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지급분으로서 동법에 의한 연금인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때에는 동 보험급여는 연금급여의 내입금으로 볼 수 있다.

제21조의 2 연금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그 수급권이 소멸하였음에 불구하고 그 사망일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지급분으로서 당해 연금급여의 과오지급이 행하여진 경우, 당해 과오지급으로 인한 반환금체권(이하 본조에서 “반환금체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금급여가 있는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금급여의 지급금의 금액을 당해 과오지급에 의한 반환금체권의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22조 (손해배상청구권) ①정부는 장해 또는 사망 또는 이러한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있어 급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급여의 가액한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그 가액한도에서 급여책임을 면한다.

제23조 (부정이득징수) 위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급여를 받는 자가 있는 때에는 사회보험청장관은 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수급권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 있는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별도의 법률로 정한 바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노령기초연금 또는 부가연금을 받을 권리를 국세체납처분(그 예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公課금지) 조세 기타 公課는 급여로서 지급되는 금전을 표준으로서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노령기초연금 및 부가연금에 대하여서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 제 2 절 노령기초연금

제26조 (지급요건) 노령기초연금은 보험료납부기간 또는 보험료면제기간(제9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한 보험료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가 65세에 도달하는 때 그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그 자의 보험료납부기간과 보험료면제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이 25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연금액) 노령기초연금액은 804,200엔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납부기간의 월수가 480월에 미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804,200엔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월수를 합산한 월수(480월을 한도로 한다.)를 480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액수로 한다.

1. 보험료납부기간의 월수
2. 보험료반액면제기간의 월수(480에서 보험료납부기간의 월수를 공제하고 얻은 월수를 한도로 한다.)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월수
3. 보험료반액면제기간의 월수에서 전호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반액면제기간의 월수를 공제하고 얻은 월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월수
4. 보험료전액면제기간(제9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받은 보험료에 관계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월수(480에서 보험료납부기간의 월수와 보험료반액면제기간의 월수를 합산한 월수를 공제하고 얻은 월수를 한도로 한다.)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월수

제28조 (지급연기) ①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이 있는 자가 66세에 도달하기 전에 당해 노령기초연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은 사회보험청장관

에게 당해 노령기초연금의 지급연기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자가 65세에 도달한 때 다른 연금급여(부가연금을 제외한다. 이하 본항에서 같다.) 또는 피고용자연금각법에 의한 연금급여(노령 또는 퇴직을 지급 사유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본항에서 같다.)의 수급권자인 때, 또는 65세에 도달한 날 이후 다른 연금급여 또는 피고용자연금각법에 의한 연금급여의 수급권자가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한 노령기초연금지급은 제18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노령기초연금의 액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서 정한 액에 정령으로 정하는 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제29조 (실권)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소멸한다.

### 제 3 절 장해기초연금

제30조 (지급요건) ①장해기초연금은 질병, 부상 또는 그 질병, 부상 및 이에 기인한 질병(이하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았던 날(이하 “초진일”이라고 한다.)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초진일부터 기산하여 1년 6월이 경과하는 날(그 기간 내에 그 상병이 치료된 경우에는 그 치료일(그 증상이 고정되고 치료의 효과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로 하며, 이하 “장해인정일”이라 한다.)에 그 상병에 의하여 다음 항에 규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는 때 그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해 상병에 관련하는 초진일의 그 전날에 있어 당해 초진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까지 피보험자기간에 있고, 또한 당해 피보험자기간에 관련하는 보험료납부기간과 보험료면제기간을 합산하는 기간이 당해 피보험자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보험자인 자.

2.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일본국내에 주소를 갖고, 또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②장해등급은 장해의 정도에 따르고 중증부터 1급 및 2급으로 하며, 각 급의 장해상태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 2 ①질병, 부상 및 당해 상병에 관계되는 초진일에 전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장해인정일에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이날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그 상병에 의하여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것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자는 그 기간 내에 동조 제1항의 장해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청구를 하는 자에게 동항의 장해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④제1항의 장해기초연금과 동일한 지급사유에 의거하는 후생연금보험법 제47조 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장해후생연금 또는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제81조 제1항 또는 제3항(사립학교교직원공제법 제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법 제84조 또는 8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공제연금에 관하여, 후생연금보험법 제52조 또는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제84조(사립학교교직원공제법 제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액이 개정되는 때에는, 그때에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의 3 ①질병, 부상 및 그 상병(이하 본조에서는 “기준상병”이라 한다.)에 관계하는 초진일에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기준상병 이외의 상병에 의하여 장해상태에 있는 것이 기준상병에 관련하여 장해인정일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날의 그 전날까지의 사이에 처음으로 기준상병에 의한 장해(이하 본조에서 “기준장해”라고 한다.)와

〈부 록1〉

다른 장해를 병합하여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는 때(기준상병의 초진일이 기준상병 이외의 상병(기준상병 이외의 상병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기준상병 이외의 모든 상병)의 초진일 이후로 한한다.)에는 그 자에게 기준장해와 다른 장해를 병합하여 장해의 정도에 의한 장해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②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중 “당해 상병”은 “기준상병”으로 한다.

③제1항의 장해기초연금의 지급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도 불구하고 당해 장해기초연금의 청구가 있던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제30조의 4 ①질병 또는 부상하여 그 초진일에 20세 미만이었던 자가 장해인정일 이후 20세에 도달한 때에는 20세에 도달한 날에, 장해인정일이 20세에 도달한 이후인 때에는 그 장해인정일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장해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②질병 또는 부상하여 그 초진일에 20세 미만이었던 자(같은 날에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에 한한다.)가 장해인정일 이후에 20세에 도달한 때에는 20세에 도달한 날에, 장해인정일이 20세에 도달한 이후인 때에는 그 장해인정일 이후에 그 상병에 의거하여 65세에 도달하는 날의 그 전날까지의 사이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자는 그 기간 내에 전항의 장해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30조의 2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1조 (병급조정) ①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해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해를 병합한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②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후의 장해를 병합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종전의 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은 소멸한다.

제32조 ①기간을 정하고 지급을 정지하고 있던 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해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전후의 장해를 병합한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기초연금은, 종전의 장해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기간은 그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이 그 자에게 종전의 장해를 병합하지 아니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②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시 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새로이 취득한 장해기초연금이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때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지하여야 하는 기간에는 그 자에 대하여 종전의 장해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제33조 (연금액) ①장해기초연금의 액은 804,200엔으로 한다.

②장해정도가 장해등급의 1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해기초연금의 액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서 정한 액의 100분의 125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33조의 2 ①장해기초연금의 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자녀(18세에 도달한 이후 최초 3월 31일까지 사이에 있는 자 및 20세 미만이고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자에 한한다.)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서 정한 액에 그 1인에 대해 각각 77,100엔(그 중 2인 까지는 각각 231,400엔)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②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 태아이었던 자가 출생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자는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 그 자에 의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보고, 그 출생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장해기초연금의 액을 개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액이 가산된 장해기초연금에 관해서 자녀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해당 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당한 자녀수에 따라 연금액을 개정한다.

1. 사망한 때.
2.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3. 혼인한 때.
4. 수급권자의 배우자 이외의 자의 양자로 된 때.
5. 파양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자녀가 아닌 때.
6. 18세에 도달한 이후 최초 3월 31일이 도과한 때. 다만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때에는 제외한다.
7.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자녀는 그 사정이 종료한 때. 다만 그 자녀가 18세에 도달한 이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는 제외한다.
8. 20세에 도달한 때.

④제1항 또는 전항 제2호의 규정의 적용에서 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종료에 관한 인정 등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장해정도에 의한 연금액개정) ①사회보험청장관은 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그 장해정도를 조사하여 그 정도가 종전의 장해등급 이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장해기초연금의 액을 개정할 수 있다.

②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자는 사회보험청장관에 대하여 장해정도가 증진한 것에 의하여 장해기초연금 액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는 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날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험청장관의 조사를 받았던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후에 할 수 있다.

④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자이고 질병, 부상하여 또한 그 상병(당해 장해기초연금의 지급사유가 된 장해에 관계되는 상병의 초진일 후에 초진일이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본항 및 제36조 제2항 단서에서 같다.)에 관계된 당해 초진일에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상병에 의하여 장해상태(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아니하는 정도의 것에 한한다. 이하 본항 및 제36조 제2항 단서에서 “기타 장해”라 한다.)에

있고, 또한 당해 상병에 관계된 장해인정일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날의 그 전날까지의 사이에 당해 장해기초연금의 지급사유가 된 장해와 기타 장해(기타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기타 장해를 병합한 장해)를 병합한 장해정도가 당해 장해기초연금의 지급사유가 된 장해정도 보다 증진한 때에는 그 자는 사회보험청장관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당해 장해기초연금 액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기초연금 액을 개정하는 때에는 개정 후의 액에 의한 장해기초연금의 지급은 개정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제35조 (실권) 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하는 이외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사망한 때.

2. 후생연금보험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자가 65세에 도달한 때. 다만 65세에 도달한 날에 동항에서 규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동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한다.

3. 후생연금보험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동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3년을 경과한 때. 다만 3년을 경과한 날에 당해 수급권자가 65세 미만인 때에는 제외한다.

제36조 (지급정지) ①장해기초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당해 상병에 의한 장해에 대하여 노동기준법(昭和 22(1947)년 법률 제49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을 받는 때에는 6년간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장해기초연금은 수급권자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장해의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이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지급이 정지된 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질병 또는 부상하고, 또한 그 상병에 관계된 초진일에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상병에 의하여 기타 장해상태에 있고 또한 당해 상병에 관계된 장해인정일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날의 그 전날까지의 사이에 당해 장해기초연금의 지급사유가 된 장해와 기타 장해(기타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기타 장해를 병합한 장해)와 병합한 장해의 정도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전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6조의 2 ①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해기초연금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해당하는 기간 그 지급을 정지한다.

1. 은급법(大正 12(1923)년 법률 제48호. 다른 법률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거한 연금급여,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昭和 20 (1945)년 법률 제50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급여, 기타 연금급여이고 정령으로 정한 것을 받는 때.
2. 임목, 노역장 기타 이에 준한 시설에 구금되고 있는 때.
3. 소년원 기타 이에 준한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때.
4. 일본국내에 주소를 상실한 때.

②전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급여가 그 전액에 대하여 지급정지 되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급정지가 전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급여에 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해기초연금의 액 및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급여액(급여가 그 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액. 다음 항도 같다.)이 모두 정령으로 정한 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액을 합산한 액이 당해 정령으로 정한 액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장해기초연금 중 그 초과한 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해기초연금의 액이, 전항에 규정한 정령으로 정하는 액 이상이고, 또한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급여액을 초과하

는 때에는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장해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급여가 은급법에 의한 증가은급, 동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조금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급여로 장해 또는 사망을 사유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지급 되는 때에는 제1항, 제3항 및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급여액의 계산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 3 ①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해기초연금은 수급권자의 전년도 소득이, 그자의 소득세법(昭和 40(1965)년 법률 제33호)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친족(이하 “부양친족 등”이라 한다.)의 유무 및 수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해의 8월부터 다음 해의 7월까지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2분의 1(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액이 가산된 장해기초연금에 있어서는 그 액에서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액을 공제한 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범위 및 그 액의 계산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 4 ①재해, 풍수해, 화재 기타 이에 유사한 재해에 의하여 자기 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의 소유에 관계되는 주택, 가재 또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에 대한 피해금액(보험금, 손해배상금 등에 의하여 보충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그 가격의 대체로 2분의 1 이상의 손해를 입은 자(이하 “이재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있던 달부터 다음 해의 7월까지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해기초연금에 대하여 그 손해가 있던 해의 전년 또는 전전년에 있어서 당해 이재자의 소득을 이유로 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는 행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해기초연금의 지급 정지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재자의 당해 손해가 있던 해의 소득이 그자의 부양친족 등의 유무 및 수에 따라 전조 제1

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이재자에게 지급하는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해기초연금으로 전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이재자가 손해를 입었던 달로 소급하여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③전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범위 및 그 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범위 및 그 액의 계산방법의 예에 의한다.

#### 제 4 절 유족기초연금

제37조 (지급요건) 유족기초연금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의 처 또는 자녀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가 사망일의 그 전날에 사망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까지 피보험자기간에 있고 또한 당해 피보험자기간에 관계되는 보험료납부기간과 보험료면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당해 피보험자기간의 3분의 2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2.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고 또한 60세 이상 65 세 미만인 자가 사망한 때.
3.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4. 제26조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사망한 때.

제37조의 2 (유족의 범위) ①유족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처 또는 자녀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처 또는 자녀(이하 “처” 또는 “자녀”라 한다.)로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처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다음 호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할 것.

2. 자녀에 대하여는 18세에 도달한 날 이후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고, 또는 20세 미만으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고 또한 혼인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

②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을 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장래를 향하여 그 자녀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처는 그 자의 사망 당시 그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연금액) 유족기초연금의 액은 804,200엔으로 한다.

제39조 ①처에게 지급하는 유족기초연금의 액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서 정하는 액에 처가 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당시 제3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또한 그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각각 77,100엔(그 중 2인까지 대하여서는 각각 231,400엔)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②처가 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당시 태아이었던 자가 출생을 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서 그 자녀는 처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 제37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또한 그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로 보며, 그 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기초연금의 액을 개정한다.

③처에게 지급하는 유족기초연금에 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자녀 중 1인을 제외한 자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당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연금액을 개정한다.

1. 사망한 때.
2.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

3. 처 이외의 자의 양자가 된(신고를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양자입양 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때.
4. 파양에 의하여 사망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자녀가 아닌 때.
5. 처와 생계를 같이 아니한 때.
6. 18세에 도달한 이후 최초 3월 31일이 만료한 때. 다만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때에는 제외한다.
7.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정이 종료한 때. 다만 그 자가 18세에 도달한 이후 최초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제외한다.
8. 20세에 도달한 때.

제39조의 2 ①자녀에게 지급하는 유족기초연금의 액은 당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녀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 정하는 액에 그 자녀 중 1인을 제외한 자에 대하여 각각 771,400엔(그 중 1인에 대하여서는 231,400엔)을 가산한 액을 그 자녀의 수로 나누어 얻은 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 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이 있는 자녀의 수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증감이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기초연금의 액을 개정한다.

제40조 (실권) ①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소멸한다.

1. 사망한 때.
  2. 혼인한 때
  3. 양자가 된 때(직계혈족 또는 직계인척의 양자가 된 때에는 제외한다.).
- ②처가 가지는 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하고, 기타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녀가 1인인 때에는 그 자녀가, 동항에서 규정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그 모든 자녀가, 동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③자녀가 가지는 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하며, 기타 자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파양에 의하여 사망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자녀가 아닌 때.
2. 18세에 도달한 이후 최초 3월 31일이 만료한 때. 다만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때에는 제외한다.
3.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자녀에 대하여는 그 사정이 종료한 때. 다만 그 자녀가 18세에 도달한 이후 최초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제외한다.
4. 20세에 도달한 때.

**제41조 (지급정지)** ①유족기초연금은 당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노동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년간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자녀에 대한 유족기초연금은 처가 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을 갖는 때(처에 대한 유족기초연금이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정지되고 있는 때에는 제외한다.)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그 자녀의 父 또는 母가 있는 때에는 그 사이 그 지급을 정지한다.

**제41조의 2** ①처에 대한 유족기초연금은 그 자의 소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을 갖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소급하여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처는 언제든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 ①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이 있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자녀 중 1인 이상의 자녀의 소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녀에 대한 유족기초연금은 다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소급하여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기초연금이 지급정지된 자녀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39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고,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지가 해제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동조 제2항 중 “증감이 생긴 날”은 “지급이 정지되고, 또는 그 정지가 해제된 날”로 한다.

## 제 5 절 부가연금, 과부연금 및 사망일시금

### 제 1 관 부가연금

제43조 (지급요건) 부가연금은 제8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보험료납부기간이 있는 자가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그 자에게 지급한다.

제44조 (연금액) 부가연금의 액은 200엔에 제8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보험료납부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제45조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의 해산의 경우) ①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해산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은 각각 제8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보험료납부기간으로 보고, 전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그 해산 전에 납부한 부금에 관계되는 국민연금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으로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그 지급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제외한 것(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보험료납부기간인 기간에 한한다.).

2. 그 해산에 관계되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그 지급에 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국민연금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으로 납부된 부금에 관련한 것(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보험료납부기간인 기간에 한한다.).

②전항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가입자이었던 자가 부가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후 당해 국민연금기금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연금지급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해산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부가연금의 액을 개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가입자이었던 자가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후 당해 국민연금기금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연금지급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해산한 경우(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자에 대한 제43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조 중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을 취득”은 “가입자이었던 국민연금기금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연금지급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해산”으로 한다.

제46조 (지급연기) ① 부가연금의 지급은 그 수급권자가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급연기의 신청을 행한 때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청이 있던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한 것으로 한다.

② 제28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부가연금의 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중 “전조”는 “제44조”로 한다.

제47조 (지급정지) 부가연금은 노령기초연금이 그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는 때에는 그 사이 그 지급을 정지한다.

제48조 (실권) 부가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소멸한다.

## 제 2 관 과부(寡婦)연금

제49조 (지급요건) ① 과부연금은 사망일의 그 전날에 있어서 사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제1호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기간에 관계되는 보험료납부기간과 보험료면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인 夫(보험료납부기간 또는 제9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받은 보험료에 관계되는 기간 이외의 보험료면제기간이 있는 자에 한한다.)

## 〈부 록1〉

가 사망한 경우 夫의 사망 당시 夫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夫와 혼인관계(신고를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10년 이상 계속한 65세 미만의 처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그 夫가 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자이었던 때 또는 노령기초연금의 지급을 받았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7조의 2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중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夫”로 한다.

③60세 미만의 처에게 지급하는 과부연금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가 6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급을 시작한다.

제50조 (연금액) 과부연금의 액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제1호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기간에 관계되는 사망일의 그 전날에 있어서 보험료납부기간 및 보험료면제기간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 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51조 (실권) 과부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한 때 또는 제4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소멸한다.

제52조 (지급정지) 과부연금은 당해 夫의 사망에 대하여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급여가 행하여지는 때에는 사망일부터 6년간 그 지급을 정지한다.

## 제 3 관 사망일시금

제52조의 2 (지급요건) ①사망일시금은 사망일의 그 전날에 있어서 사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제1호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기간에 관계되는 보험료납부기간의 월수와 보험료반액면제기간의 월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월수를 합산한 월수가 36월 이상인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에게 유족이 있는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노령기초연금 또는 장해기초연금의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망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한 자의 사망일에 있어서 그자의 사망에 의하여 유족기초연금을 받는 자가 있는 때. 다만 당해 사망일이 속한 달에 당해 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한 때에는 제외한다.

2. 사망한 자의 사망일에 태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당해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날에 그 자녀 또는 사망한 자의 처가 사망한 자의 사망에 의하여 유족기초연금을 받는 때. 다만 당해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당해 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한 때에는 제외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사망한 자의 자녀가 그자의 사망에 의하여 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그자의 사망에 의하여 그자의 처가 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그 수급권을 취득한 당시 그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그 자녀의 父 또는 母가 있어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족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의 3 (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①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이고, 그자의 사망 당시 그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전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이고 그자의 사망 당시 그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②사망일시금(전항 단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 항도 같다.)을 받는 자의 순위는 전항에서 규정한 순서에 의한다.

③사망일시금을 받는 동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그 1인이 한 청구는 전원을 위하여 그 전액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고, 그 1인에 대한 지급은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 록1〉

제52조의 4 (금액) ①사망일시금의 액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제1호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기간에 관계되는 사망일의 그 전날에 있어서 보험료납부기간의 월수와 보험료반액면제기간의 월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월수와 합산한 월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서 정한 액으로 한다.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피보험자기간에 관계되는 사망일 전일에 있어서 보험료납부기간 월수와 보험료반액면제기간의 월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월수를 합산한 월수 | 금액       |
|--|----------|
| 36월 이상 180월 미만   | 120,000엔 |
| 180월 이상 240월 미만  | 145,000엔 |
| 240월 이상 300월 미만  | 170,000엔 |
| 300월 이상 360월 미만  | 220,000엔 |
| 360월 이상 420월 미만  | 270,000엔 |
| 420월 이상  | 320,000엔 |

②사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제1호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기간에 관계되는 사망일의 그 전날에 있어서 제8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보험료납부기간이 3년 이상인 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의 액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서 정하는 액에 8,500엔을 가산하는 액으로 한다.

제52조의 5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사망일시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 중 “전2조”는 “제52조의 4 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의 6 (지급조정) 제5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받는 자가 제52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자의 사망에 의하여 과부연금을 받는 때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사망일시금과 과부연금 중, 그 1을 지급하고 다른 것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3조 내지 제68조 삭제

## 제 6 절 급여의 제한

제69조 고의로 장해 또는 그 직접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자의 당해 장해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해기초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0조 고의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장해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또는 장해의 정도를 증진시킨 자의 당해 장해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사유로 하는 급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기의 고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자의 사망에 대하여도 같다.

제71조 ①기초연금 또는 사망일시금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시킨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사망 전에 그자의 사망으로 유족기초연금 또는 사망일시금의 수급권자로 되는 자를 고의로 사망시킨 자에 대하여도 같다.

②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 시킨 때에는 소멸한다.

제72조 연금급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원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제107조 제2항에 규정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원의 진단을 거절한 때.

제73조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금급여의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제 4 장 복지시설

제74조 정부는 제1호 피보험자 및 제1호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

#### 제 5 장 적립금의 운용

제75조 (운용목적) 국민연금특별회계의 국민연금계정에 관계되는 적립금(이하 본장에서 “적립금”이라 한다.)의 운용은 적립금이 국민연금의 피보험자로부터 징수된 보험료의 일부이고, 또한 장래의 급여의 귀중한 재원이 되는 것에 특히 유의하여, 오로지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장래에 걸쳐 국민연금사업운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7조 (기본방침) ①후생노동장관은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본조에서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기본방침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적립금운용의 기본적인 방향
2. 적립금운용에 관계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연금자금운용기금에 있어서 연금자금(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탁된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4. 연금자금운용기금에 있어서 연금자금의 관리 및 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후생노동장관은 기본방침을 정함에 있어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전문적인 시견 및内外의 경제동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적립금의 운용이 시장 기타 민간활동에 주는 영향에 유의하면서 안전과 확실을 기본으로 하여 적립금의 운용이 특정한 방법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또한 적립금 운용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이를 정한다.

④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87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급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예상액 및 예정운용수입액을 감안하고 또한 적립금 운용수입의 변동의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후생노동장관은 기본방침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사회보장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⑥후생노동장관은 기본방침을 정한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후생노동장관은 적립금 운용의 상황 및 그 연금재정에 주는 영향, 연금자금운용기금에 있어서 연금자금의 관리 및 운용상황,内外 경제동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기본방침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⑧후생노동장관은 전항의 검토를 실시하는 때에는 사회보장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8조 (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①후생노동장관은 매년도 적립금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해 연도에 있어서 연금자금운용기금의 결산 완결 후 자체 없이 사회보장심의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에는 당해 연도의 적립금 운용상황 및 그 연금재정에 주는 영향 및 연금자금운용기금에 있어서 연금자금의 관리 및 운용의

## 〈부 록1〉

평가를 기재함과 동시에 당해 연도에 있어서 연금자금운용기금의 업무 현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9조 (운용직원의 책무) 적립금 운용에 관계되는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후생노동성 직원(정령으로 정한 자에 한한다. 이하 “운용직원”이라 한다)은 적립금운용의 목적에 의거하여 신중하고 세심한 주위를 기울이고 전력을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0조 (비밀유지의무) 운용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 (징계처분) 운용직원이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은 그 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昭和 22(1947)년 법률 제120호)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다.

제82조 내지 제84조 삭제

## 제 6 장 비 용

제85조 (국고부담) ①국고는 매년도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하여 다음 액을 부담한다.

1. 당해 연도에서 기초연금(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및 유족기초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다음 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액을 제외한다. 이하 “보험료·자격금산정대상액”이라 한다.)에서 제27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월수를 기초로 계산한 것을 공제하고 얻은 액에, 1에서 각 피고용자연금보험자에 관계되는 제9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산정하는 비율을 합산한 비율을 공제하고 얻은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의 3분의 1에 상당한 액

2. 당해 연도에 있어서 보험료면제기간이 있는 자에게 관계되는 노령 기초연금(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액이 계산된 것에 한한다.)의 급여에 필요한 비용액에, 가목에서 규정하는 수를 나목에서 규정하는 수로 나누어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액의 합산 액
  - 가. 당해 보험료반액면제기간 월수(480에서 당해 보험료납부기간의 월수와 당해 보험료반액면제기간의 월수를 공제하여 얻은 월수를 한도로 한다.)를 6으로 나누어 얻은 수와 당해 보험료전액 면제기간(제9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받은 것은 제외한다.)의 월수(480에서 당해 보험료납부기간의 월수와 당해 보험료반액면제기간의 월수를 공제하고 얻은 월수를 한도로 한다.)를 3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산할 수
  - 나. 제27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월수를 합산한 수
3. 당해 연도에 있어서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해기초연금의 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액
  - ②국고는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사업의 사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86조 (사무비교부) 정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총(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시정총의 장이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거한 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한다.

- 제87조 (보험료) ①정부는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한다.
- ②보험료는 피보험자기간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각월에 징수한다.
- ③보험료 액은 이 법률에 의하여 급여에 필요한 비용 예상액 및 예정 운용수입 및 국고부담의 액을 고려하여, 장래에 걸쳐 재정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적어도 5년마다 이 기준에 따라 재계산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다.
- ④보험료 액은 당분간 1월에 대하여 13,300엔으로 한다.

〈부 록1〉

⑤전항의 보험료 액은 그 액이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제87조의 2 ①제1호 피보험자(제89조, 제90조 제1항 또는 제9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 제90조의 2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액에 대하여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 및 국민연금기금의가입자를 제외한다.)는 사회보험청장관에 대한 신청과 그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 이후 각 월에 대하여 전조 제4항에서 정하는 액의 보험료 이외에 400엔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는 전조 제4항에서 정하는 액의 보험료 납부가 행하여진 달(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가 납부된 것으로 보는 달을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만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언제든지 사회보험 청장관에 대한 신청과 그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 이후 각월에 관계되는 보험료(이미 납부된 것 및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 납된 것(국민연금기금의가입자가 된 날이 속한 달 이후 각 월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가 아니 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기한의 날에 국민연금기금의가입자가 되는 때에는 그가입자가 된 날에 전항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88조 (보험료 납부의무) ①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대주는 그 세대에 속한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배우자의 일방은 피보험자인 타방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89조 피보험자(제90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해당하는 날이 속

한 달의 전월부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에 관계되는 보험료는 이미 납부된 것 및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된 것을 제외하고, 납부를 면제한다.

1. 장해기초연금 또는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의거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연금급여, 기타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급여이고 정령으로 정하는 수급권자(최후로 후생연금보험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이하 본호에서 "장해상태"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3년을 경과한 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자(실제로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있는 때.
2. 생활보호법(昭和 25(1950)년 법률 제144호)에 의하여 생활부조 기타 원조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받는 때.
3. 전2호 규정 이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때.

제90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다음 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 또는 학교교육법(昭和 22(1947)년 법률 제26호)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동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학의 학생 기타 학생 또는 학생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 사회보험청장관은 신청이 있던 날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그 지정한 달까지의 기간에 관계되는 보험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된 것 및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된 것을 제외하고, 납부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일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년의 소득(1월부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월까지의 월분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전전년의 소득으로 한다. 이하 본장에서 같다.)이 그 자의 부양친족 등의 유무 및 수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액 이하인 때.

〈부 록1〉

2.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 이외의 부조 기타 원조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을 받는 때.
  3. 지방세법(昭和 25(1950)년 법률 제226호)에서 정하는 장해자이고 전년의 소득이 정령으로 정하는 액 이하인 때.
  4.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과부(寡婦)이고 전년의 소득이 전호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액 이하인 때.
  5.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로서 천재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 및 액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처분은 당해 신청이 있던 날로 본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았던 피보험자로부터 당해 처분취소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회보험청장관은 당해 신청이 있던 날이 속한 달의 전월 이후 각월의 보험료에 대하여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④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범위 및 그 액의 계산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90조의 2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전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 또는 학생 등인 피보험자를 제외한다.)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회보험청장관은 신청이 있던 날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그 지정한 달까지의 기간에 관계되는 보험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된 것 및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된 것을 제외하고, 그 반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일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년의 소득이 그 자의 부양친족 등의 유무 및 수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액 이하인 때.
  2. 전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
  3.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로서 천재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때.
- ②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았던 피보험자로부터 당해 처분취소의 신청이 있는 때 준용한다.

③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범위 및 그 액의 계산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90조의 3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 등인 피보험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회보험청장관은 신청이 있던 날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그 지정한 달까지의 기간에 관계되는 보험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된 것 및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된 것을 제외하고, 이것에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년의 소득이 그 자의 부양친족 등의 유무 및 수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액 이하인 때.
2. 제9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해당하는 때.
3.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로서 천재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제90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범위 및 그 액의 계산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91조 (보험료의 납기한) 매월의 보험료는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2조 (보험료의 통지 및 납부) ①사회보험청장관은 매년도 피보험자에 대하여 각연도의 각월에 관계되는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의 액, 납기한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한다.

②전항에 정하는 것 이외의 보험료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 2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사회보험청장관은 피보험자로부터 예금 또는 저금의 인출과 그 인출한 금전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를 그 예금계좌 또는 저금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행하는 것을 희망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가 확실히 인정되고 또한 그 신청을 인정하는 것이 보험료의 징수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인정할 수 있다.

제92조의 3 (보험료 납부위탁) ①다음에서 규정하는 자는 피보험자(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는 국민연금기금의 가입자에 한한다.)의 위탁을 받아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사무(이하 “납부사무”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
2. 납부사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보험청장관이 지정하는 자

②사회보험청장관은 전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정을 받는자의 명칭,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는자는 그 명칭,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사회보험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사회보험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신고에 관계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92조의 4 ①피보험자가 전조 제1항의 위탁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동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납부사무를 행하는 자(이하 “납부수탁자”라고 한다.)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납부수탁자는 정부에 대하여 당해 보험료의 납부책임을 부담한다.

②납부수탁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의 교부를 받는 때에는 지체없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취지 및 교부를 받았던 년월일을 사회보험청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피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수탁자에게 교부한 때(선납에 관계되는 보험료는 선납에 관계되는 기간의 각월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보험료에 관계되는 피보험자기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서 보험료납부기간으로 본다.

④피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액에 대하여 납부를 면제받았던 보험료를 납부수탁자에게 교부한 때(선납에 관계되는 보험료는 선납에 관계되는 기간의 각월이 경과

한 때)에는 당해 보험료에 관계되는 피보험자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 제5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보험료반액면제기간으로 본다.

⑤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에 대하여 납부수탁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한도에서 납부수탁자는 정부에 대하여 당해 연체금의 납부책임을 부담한다.

⑥정부는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수탁자가 납부하여 하는 징수금에 관하여는 당해 납부수탁자에 대하여 제9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여도 다시 징수하여야 하는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액을 당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2조의 5** ①납부수탁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여기에 납부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사회보험청장관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수탁자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사회보험청장관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직원에게 납부수탁자의 사무소에 출입, 납부수탁자의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조사시키고,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시키는 것을 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를 수행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규정하는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2조의 6** ①사회보험청장관은 제92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았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록1〉

1. 제92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제92조의 4 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는 때.
  3.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를 하거나,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4.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진술의 거부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② 사회보험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93조 (보험료의 선납) ① 피보험자는 장래 일정기간의 보험료를 선납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선납하는 액은 당해 기간의 각월 보험료의 액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액을 공제하는 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되는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납부기간 또는 보험료반액면제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선납에 관계되는 기간의 각월이 경과하는 때 각각 그 달의 보험료가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④ 전3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보험료 선납절차, 선납된 보험료의 환급 기타 보험료 선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94조 (보험료의 추납)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자를 제외한다.)는 사회보험청장관의 인정을 받아 제89조, 제90조 제1항 또는 제9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받았던 보험료 및 제9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액에 대하여 납부를 면제받았던 보험료(인정일이 속한 달 전 10년 이내의 기간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추납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액에 대하여 납부를 면제받았던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반액이 납부된 때에 한한다.

② 전항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추납을 하는 때 추납은 제9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받았던 보험료에 대하여 실시하고, 제89조 또는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받았던 보험료 또는 제9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액에 대하여 납부를 면제받았던 보험료에 대하여 실시하고, 보험료는 먼저 경과한 달의 분부터 순차적으로 추납을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추납하여야 하는 액은 당해 추납에 관계되는 기간의 각 월 보험료의 액에 정령으로 정하는 액을 가산하는 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납을 실시하는 때에는 추납을 실시하는 날에 추납에 관계되는 달의 보험료가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⑤ 전각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보험료 추납절차 기타 보험료 추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94조의 2 (기초연금 약출금) ① 후생연금보험의 관장자인 정부는 매년도 기초연금의 급여에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의 약출금을 부담한다.

② 연금보험자인 공제조합 등은 매년도 기초연금의 급여에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의 약출금을 납부한다.

③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액의 재계산을 실시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은 후생연금보험의 관장자인 정부가 부담하고, 연금보험자인 공제조합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기초연금의 약출금에 대하여 장래 예상액을 산정한다.

제94조의 3 ① 기초연금의 약출금 액은 보험료·약출금 산정대상액에, 당해 연도에서 피보험자의 총수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서 당해 피고용자연금보험자에 관계되는 피보험자(후생연금보험의 관장자인 정부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인 제2호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배우자인 제3호 피보험자로 하고, 연금보험자인 공제조합 등에 있어서는 당해 연금보험자인 공제조합 등에 관계되는 피보험자(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 및 지방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는 당해 연합회를 조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제2호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배우자인 제3호 피보험자로 하

고,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은 사학교직원공제제도의 가입자인 제2호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배우자인 제3호 피보험자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의 총수의 비율에 상당하는 것으로 매년도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 피보험자의 총수 및 피고용자연금보험자에 관계되는 피보험자의 총수는 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및 제3호 피보험자의 적용상태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 피보험자 중 정령으로 정하는 자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③전2항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연금보험자인 공제조합 등에 관계되는 기초연금의 약출금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94조의 4 각지방공무원공제조합은 매년도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가 납부하여야 하는 기초연금의 약출금의 액 가운데 각지방공무원공제조합에서 급료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산정하는 액을 부담한다.

제94조의 5 (보고) ①사회보험청장관은 연금보험자인 공제조합 등에 대하여 당해 연금보험자인 공제조합 등을 관할하는 장관을 경유하여 당해 연금보험자인 공제조합 등에 관계되는 피보험자의 수,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각연금보험자인 공제조합 등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금보험자인 공제조합 등을 관할하는 장관을 경유하여 전항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연금보험자인 공제조합 등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금보험자인 공제조합 등을 관할하는 장관을 경유하여 제94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예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후생노동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후생노동장관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예상액, 기타 이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자인 공제조합 등을 관할하는 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후생노동장관은 전각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을 정하는 때에는 연금보험자인 공제조합 등을 관할하는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4조의 6 (제2호 피보험자 및 제3호 피보험자의 특례) 제87조 제1항, 제2항 및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호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기간 및 제3호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기간에 관하여 정부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는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95조 (징수) 보험료 기타 이 법률(제10장을 제외한다. 이하 본장 내지 제8장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은 이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95조의 2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의 해산에 따른 책임준비금 상당액의 징수)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해산하는 때, 그 해산하는 날에 있어 당해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연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와 관계하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하는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액을 당해 해산하는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 연합회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제137조의 1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당해 해산한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징수하여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 (독촉 및 체납처분) ①보험료 기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체납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보험청장관은 기한을 지정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보험청장관은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보낸다.

③전항의 독촉장에 의하여 지정한 기한은 독촉장을 보내는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상 경과한 날이어야 한다.

④사회보험청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았던 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고, 또한 체납자

〈부 록1〉

의 거주지 또는 그자의 재산소재지의 시정촌에 대하여 그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청구를 받는 때에는 시정촌세의 예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생노동장관은 징수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액을 당해 시정촌에 교부하여야 하다.

⑥전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을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경과한 달의 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하고 1개월의 보험료 액에 미달하는 단수는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

제97조 (연체금) ①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사회보험청장관은 징수금액에 대하여 연14.6퍼센트의 비율로 납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수금 완납 또는 재산압류의 날의 그전날까지의 날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500엔 미만인 때, 또는 체납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경우 징수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납부가 있는 때에는 그 납부일 이후 기간에 관계되는 연체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징수금은 그 납부가 있던 징수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③연체금을 계산함에 있어 징수금액에 500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를 절삭한다.

④독촉장으로 지정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한 때 또는 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50엔 미만인 때에는 연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연체금의 금액에 50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절삭한다.

제98조 (우선변제) 보험료 기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우선변제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제99조 내지 제100조 삭제

## 제 7 장 이의신청

- 제101조 (이의제기) ①피보험자의 자격에 관한 처분, 급여에 관한 처분 (공제조합 등(국가공무원공제조합 및 지방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를 제외 한다.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행하는 장해기초연금에 관계되는 장해정도의 진단에 관한 처분을 제외한다.) 또는 보험료 기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회보험심사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회보험심사회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②심사청구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인은 사회보험심사관이 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고, 사회보험심사회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심사청구 및 전2항의 재심사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④피보험자의 자격에 관한 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이의를 당해 처분에 의거한 급여에 대한 처분의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
- ⑤제1항의 심사청구 및 동항 또는 제2항의 재심사청구에 관하여서는 行政不服審査法(昭和 37(1962)년 법률 제160호) 제2절(제18조 및 제19조를 제외한다.) 및 제5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공제조합 등이 행하는 장해기초연금에 관계되는 장해정도의 진단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공제조합 등에 관계되는 피고용자연금 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피고용자연금 각법에서 정하는 심사기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⑦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 등이 행하는 장해정도의 진단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이의를 당해 처분에 의거한 장해기초연금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

제101조의 2 (재심사청구와 소송과의 관계)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취소의 소는 당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사회보험심사회의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 제 8 장 잡 칙

제102조 (시효) ①연금급여를 받을 권리 있는 그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전항의 시효는 당해 연금급여가 그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고 있는 사이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보험료 기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또는 그 환급을 받을 권리 및 사망일시금을 받을 권리 있는 2년을 경과한 때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④보험료 기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한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민법 제1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⑤보험료 기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서는 회계법(昭和 22(1947)년 법률 제3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3조 (기간계산)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거한 명령에 규정하는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이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 (호적사항의 무료증명) 시정촌의 장(지방지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도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으로 한다.)은 사회보험청장, 지방 사회보험사무국장 또는 사회보험사무소장 또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에 대하여 당해 시정촌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보험자, 피보험자이었던 자, 수급권자 또는 유족기초연금의 지급,

장해기초연금 또는 유족기초연금의 액의 가산요건에 해당하는 자녀의 호적에 대하여 무료로 증명을 할 수 있다.

제105조 (신고 등) ①피보험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3호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에 있어서는 시정촌의 장에게, 제3호 피보험자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2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호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에게 관계되는 전항의 신고에 대하여, 동조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3호 피보험자에게 관계되는 전항의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수급권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험청장관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고 또한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피보험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昭和 22(1947)년 법률 제224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의무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를 제3호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에게 관계되는 것은 시정촌의 장에게, 제3호 피보험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관계되는 것은 사회보험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2조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3호 피보험자에게 관계되는 전항의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6항 중 “제3호 피보험자”는 “제3호 피보험자의 사망에 관계된 것”으로 한다.

제106조 (피보험자의 조사) ①사회보험청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수첩의 제출을 명하고, 또는 피보험자의 자격 또는 보험료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질문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행하는 당해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7조 (수급권자의 조사) ①사회보험청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그자의 신분관계, 장해상태 그 밖의 수급권

의 소멸, 연금액의 개정 또는 지급정지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 기타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하고, 또는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권자에게 질문시킬 수 있다.

② 사회보험청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의하여 그 액이 가산되고 있는 자녀 또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의하고 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이 있는, 또는 유족기초연금이 지급되고 또는 그 액이 가산되는 자녀에 대하여 지정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명하고, 또는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자의 장해상태를 진단시킬 수 있다.

③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진단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08조 (자료제공 등) 사회보험청장관은 연금급여 또는 보험료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권자,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배우자, 세대주의 자산 또는 수입의 상황, 수급권자에 대한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의한 연금급여의 지급상황 또는 제3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급여의 지급상황에 관하여, 우체국 기타 관공서, 공제조합 등, 후생연금보험법 부칙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 또는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법 제1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의원공제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또는 은행, 신탁회사 기타 기관 또는 피보험자의 고용주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8조의 2 사회보험청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금보험자인 공제조합 등을 관할하는 장관에 대하여 그 장관이 관할하는 연금보험자인 공제조합 등에 관계되는 제94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고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내리고,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연금보험자인 공제조합 등의 업무상황을 감사시킬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9조 (국민연금사무조합) ①동종의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그 밖의 피보험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이에 유사한 단체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당해 구성원인 피보험자의 위탁을 받아 당해 피보험자에게 관계되는 제12조 제1항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단체(이하 “국민연금사무조합”이라 한다.)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위탁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보험청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회보험청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받았던 국민연금사무조합이 사무처리를 태만히 하고 또는 그 처리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항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9조의 2 (경과조치) 이 법률에 의거하여 정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정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과조치를 정할 수 있다.

제110조 (실시명령) 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절차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성령으로 정한다.

## 제 9 장 벌 칙

제111조 위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급여를 받았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형법(明治 40(1907)년 법률 제45호)에 규정이 있는 때에는 형법에 의한다.

제111조의 2 ①해산한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독촉장에서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대표자, 대리인 또는 사용인 기타

〈부 록1〉

종업원으로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의 대표자, 대리인 또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의 업무에 관하여 동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제11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피보험자
2.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 허위의 신고를 한 세대주
3.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수첩의 제출을 명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피보험자

제113조 제12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보험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로부터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보험자. 다만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로부터 신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피보험자
3. 제10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 허위의 신고를 한 세대주
4. 제105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호적법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의무자

## 제10장 국민연금기금 및 국민연금기금연합회

### 제 1 절 국민연금기금

#### 제 1 관 통 칙

제115조 (기금의 급여)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노령에 대하여 필요한 급여를 행한다.

제115조의 2 (종류) 기금은 지역형국민연금기금(이하 “지역형기금”이라 한다.) 및 직능형국민연금기금(이하 “직능형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 (조직) ①지역형기금은 제1호 피보험자(제89조, 제90조 제1항 또는 제9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 제9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액에 대하여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 및 농업자연금의 피보험자를 제외한다. 다음 항 및 제127조 제1항에서 같다.)로 있고, 기금의 지구 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조직한다.

②직능형기금은 제1호 피보험자이고 기금의 지구 내에 있어 동종의 사업 또는 업무종사자로 조직한다.

③전2항에서 규정하는 자는 가입자자격이 있는 자라 한다.

제117조 (법인격) ①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기금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118조 (명칭) ①기금은 그 명칭 중에 국민연금기금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이 아닌 자는 국민연금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8조의 2 (지구) ①기금의 지구는 지역형기금은 1의 都道府縣의 구 역을 전부로 하고, 직능형기금은 전국으로 한다.

②지역형기금은 都道府縣에 대하여 1개로 하고, 직능형기금은 동종의 사업 또는 업무에 대하여 전국을 1개로 한다.

## 제2관 설립

제119조 (설립위원 등) ①지역형기금을 설립함에 있어 가입자자격이 있는 자 및 연금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 후생노동장관이 임명한 자가 설립위원이 되어야 한다.

②전항의 설립위원의 임명은 300명 이상의 가입자자격이 있는 자가 후생노동장관에게 지역형기금의 설립을 희망하는 취지의 신청을 행한 경우에 행한다.

③직능형기금을 설립함에 있어 그 가입자가 되고자 하는 15명 이상의 자가 발기인으로 되어야 한다.

④지역형기금은 1,000명 이상의 가입자로 한다.

⑤직능형기금은 3,000명 이상의 가입자로 한다.

제119조의 2 (창립총회) ①설립위원 또는 발기인(이하 “설립위원 등”이라 한다.)은 규약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는 총회일 2주 전까지 하여야 하다.

③설립위원 등이 작성한 규약의 인정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하다.

④창립총회에서 전항의 규약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 및 가입자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창립총회의 議事는 가입자자격이 있는 자로서 그 총회일까지 설립위원 등에 대하여 설립동의를 신청한 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한다.

⑥전각항에 정하는 이외 의사의 절차 기타 창립총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 3 (설립인가) 설립위원 등은 창립총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규약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후생노동장관에게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9조의 4 (성립시기) ①기금은 설립인가를 받는 때 성립한다.  
②제119조의 2 제5항의 설립동의를 신청한 자는 기금이 성립한 때에 그 성립일에 가입자자격을 취득한다.

제119조의 5 (이사장에의 사무인계)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설립위원 등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 3 관 관 리

제120조 (규약) ①기금은 규약으로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지구
  4. 대의원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가입자에 관한 사항
  7. 연금 및 일시금에 관한 사항
  8. 부금에 관한 사항
  9. 자산의 관리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기타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 ②직능형기금의 규약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 그 설립에 관계되는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부 록1〉

③전2항의 규약변경(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은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④기금은 전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계되는 규약의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후생노동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1조 (공고) 기금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2조 (대의원회) ①기금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중에서 선임한다.

④설립 당시 대의원은 창립총회에서 제119조의 2 제5항의 설립동의를 신청한 자 중에서 선거한다.

⑤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결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대의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대의원 정수의 3분의 1이상의 자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및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대의원회에 의장을 둔다.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⑧전각항에서 정하는 이외 대의원회의 소집, 의사절차 기타 대의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23조 ①다음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매사업 연도의 예산
3. 매사업 연도의 사업보고 및 결산
4. 기타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이사장은 대의원회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또는 이사장으로서 대의원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임시진급을 요하는 것은 처분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대의원회에서 이를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대의원회는 감사에 대하여 기금업무에 관한 감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24조 ①기금에는 임원으로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이사는 대의원에서 호선한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에서 연금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거할 수 있다.

③설립 당시 이사는 창립총회에 있어 제119조의 2 제5항의 설립동의를 신청한 자 중에서 선거한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금에 관한 학식·경험을 갖는 자 중에서 선거할 수 있다.

④이사 중 1인을 이사장으로 하며, 이사가 선거한다.

⑤감사는 대의원회에서 학식·경험이 있는 자 및 대의원 중에서 각각 1인을 선거한다.

⑥설립 당시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학식·경험이 있는 자 및 제119조의 2 제5항의 설립동의를 신청한 자 가운데서 각각 1인을 선거한다.

⑦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하여도 후임 임원이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⑨감사는 이사 또는 기금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제125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 또는 이사장이 궐석인 때에는 이사 중에서 미리 이사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 또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②기금의 업무는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부 록1〉

③이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보좌하며, 연금 및 일시금으로 충당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금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④감사는 기금업무를 감사한다.

⑤감사는 감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장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5조의 2 (이사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①이사는 전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금업무에 관하여 법령, 법령에 의거하는 후생노동장관의 처분, 규약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준수하며, 기금을 위하여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가 전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금업무에 관하여 그 임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그 이사는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25조의 3 (이사의 금지행위 등) ①이사는 자기 또는 당해 기금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의 적정을 해하는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금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이사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체할 수 있다.

제125조의 4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기금과 이사장(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과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대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된 감사가 기금을 대표한다.

제126조 (기금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성) 기금의 임원 및 기금에 사용되어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별처의 적용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본다.

#### 제 4 관 가입자

제127 (가입자) ①제1호 피보험자는 그자의 주소가 있는 지구에 관계되는 지역형기금 또는 그 종사하는 사업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직능형 기금에 신청하여 그가입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금의 가입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신청을 한 날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③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로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달의 초일로 한다.)에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또는 제2호 피보험자 또는 제3호 피보험자가 된 때.
2. 지역형기금의 가입자에 있어서 당해 기금의 지구 내에 주소가 있지 아니한 때, 직능형기금의 가입자에 있어서 당해 사업 또는 업무 종사자가 아닌 때.
3. 제89조, 제90조 제1항 또는 제9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때 및 제9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액에 대하여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때.
4. 농업자연금의 피보험자가 된 때.
5. 당해 기금이 해산한 때.

④가입자자격을 취득한 달에 그자격을 상실한 자는 그자격을 취득한 날로 소급하여 가입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제127조의 2 (준용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은 가입자에 관하여, 동조 제2항의 규정은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시정촌의 장”은 “기금”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피보험자”는 “가입자”로 한다.

## 제5관 기금의 업무

제128조 (기금업무) ①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연금지급을 행하고, 아울러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에 대하여 일시금지급을 행한다.

②기금은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

③기금은 신탁회사(신탁업무를 운영하는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명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국을 지구로 하며, 농업협동조합법(昭和 22(1947)년 법률 제132호) 제10조 제1항 제10호의 사업을 행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전국을 지구로 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고문업자(유가증권에 관련한투자고문업의규제등에관한법률(昭和 61(1986)년 법률 제74호)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당해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에 필요로 하는 비용에 관하여 신탁, 보험, 공제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는 때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④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투자고문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운용방법을 특정한 신탁계약으로 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⑤기금은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업무의 일부를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8조의 2 (연금수리) 기금은 적정한 연금수리에 의거하여 그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129조 (기금급여의 기준) ①기금이 지급하는 연금은 적어도 당해 기금의 가입자이었던 자가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②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은 당해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의 소멸사유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그 수급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③ 기금이 지급하는 일시금은 적어도 당해 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 유족이 사망일시금으로 받는 때 그 유족에 지급되어야 한다.

제130조 ①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②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액은 200엔(제28조 또는 부칙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정령으로 정하는 액. 이하 같다.)에 납부된 부금에 관계되는 당해 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보험료납부기간인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가입자기간”이라 한다.)의 월수를 곱하여 얻은 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지급하는 일시금의 액은 8,500엔을 초과하여야 한다.

제131조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은 당해 노령기초연금이 그 전액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연금액 중 200엔에 당해 기금에 관계되는 가입자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얻은 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의 2 (적립금의 적립) 기금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32조 (자금운용 등) ① 기금의 적립금운용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기금업무상의 여유금의 운용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업무목적 및 자금성질에 의거하여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사업연도 기타 그 재무에 대하여는 전조 및 전2항의 규정에 의하고, 기타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133조 (준용규정)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 및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에 관하여,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제25조, 제70조 후단 및 제71조 제1항의 규정은 기금이 지급하는 일시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 중 “사회보험청장관”은 “기금”으로, 제24조 중 “노령기초연금”은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으로, 제71조 제1항 중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 한다.

## 제 6 관 비용의 부담

제134조 (부금) ①기금은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 및 일시금에 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부금을 징수한다.

②부금은 연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각월에 대하여 징수한다.

③부금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제134조의 2 (준용규정) ①제88조의 규정은 가입자에 관하여, 제95조, 제96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은 부금, 제133조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88조 중 “보험료”는 “부금”으로, 제9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97조 제1항 중 “사회보험청장관” 및 제96조 제5항 중 “후생노동장관”은 “기금”으로, 제97조 제1항 중 “전조 제1항”은 “제134조의 2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1항”으로 한다.

②기금은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9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 7 관 해산 및 청산

제135조 (해산) ①기금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대의원 정수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대의원회에서의 의결
2. 기금사업의 계속불능
3. 제1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

②기금은 전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해산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6조 (기금해산에 의한 연금 등 지급의무의 소멸) 기금은 해산한 때에는 당해 기금의 가입자이었던 자에게 관계되는 연금 및 일시금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면한다. 다만 해산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 (청산) ①기금이 제13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이사가 그 청산인이 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타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후생노동장관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1.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되는 자가 없는 때.
2. 기금이 제1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
3. 청산인의 결여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③전항의 경우 청산인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이 부담한다.

④해산하는 기금의 잔여재산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해산한 날에 있어 당해 기금이 연금지급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자(이하 “해산기금가입자”이라 한다.)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⑤제126조의 규정은 기금의 청산인에 관하여, 민법 제73조 및 제78조 내지 80조 및 비송사건절차법(明治 31(1898)년 법률 제14호) 제138조의 규정은 기금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8조 제3호 중 “법원”은 “후생노동장관”으로 한다.

## 〈부 록1〉

⑥전각항에서 정하는 이외 해산하는 기금의 청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 제 2 절 국민연금기금연합회

#### 제 1 관 통 칙

제137조의 2 (연합회) 기금은 제137조의 17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도탈퇴자, 해산기금가입자에 관계되는 연금 및 일시금의 지급을 공동으로 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37조의 3 (법인격) ①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연합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137조의 4 (명칭) ①연합회는 그 명칭 중에 국민연금기금연합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연합회가 아닌 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 2 관 설 립

제137조의 5 (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함에 있어 그 회원이 되려는 2 이상의 기금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제137조의 6 (창립총회) ①발기인은 규약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는 총회일의 2주 전까지 하여야 하다.

③발기인이 작성한 규약의 인정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하다.

④창립총회에 있어 전항의 규약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창립총회의 의사는 그 총회일까지 발기인에 대하여 설립동의를 신청을 한 기금의 이사장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⑥전각항에 정하는 이외 의사절차 기타 창립총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37조의 7 (설립인가 등) ①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 후 지체없이 규약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후생노동장관에게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연합회는 설립인가를 받는 때 성립한다.

③전조 제5항의 설립동의를 신청한 기금은 연합회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성립일에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④제119조의 5의 규정은 연합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중 “설립위원 등”은 “발기인”으로 한다.

### 제3관 관리 및 회원

제137조의 8 (규약) ①연합회는 규약으로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6. 연금 및 일시금에 관한 사항
7.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자산관리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부 록1〉

10.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기타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2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연합회규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37조의 9 (준용규정) 제121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37조의 10 (평의원회) ①연합회에 평의원회를 둔다.

②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③평의원은 회원인 기금의 이사장에서 호선한다.

④설립 당시 평의원은 창립총회에서 제137조의 6 제5항의 설립동의를 신청한 기금의 이사장 중에서 선거한다.

⑤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평의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평의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의 자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및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평의원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평의원회에 의장을 둔다.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⑧전각항에 정하는 이외 평의원회의 소집, 의사절차 기타 평의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37조의 11 ①다음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매사업 연도의 예산

3. 매사업 연도의 사업보고 및 결산

4. 기타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이사장은 평의원회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또는 이사장으로서 평의원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임시진급을 요하는 것은 처분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평의원회에서 이를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평의원회는 감사에 대하여 연합회 업무에 관한 감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7조의 12 (임원) ①연합회에 임원으로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이사는 평의원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평의원 이외 연금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③설립 당시 이사는 창립총회에 있어 제137조의 6 제5항의 설립동의를 신청한 기금의 이사장 중에서 선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이사장 이외 연금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④이사 중 1인을 이사장으로 하며, 이사가 선거한다.

⑤감사는 평의원에서 1인을 호선하고, 평의원회에서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한다.

⑥설립 당시 감사는, 창립총회에 있어 제137조의 6 제5항의 설립동의를 신청한 기금의 이사장 중에서 1인을 선거하고, 학식·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서 1인을 선임한다.

⑦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하여도 후임 임원이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⑨감사는 이사 또는 연합회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37조의 13 (임원직무 등) ①이사장은 연합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 또는 이사장이 퀼석인 때에는 이사 중에서 미리 이사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 또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②연합회업무는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부 록1〉

- ③이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보좌하고,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연합회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 ④감사는 연합회업무를 감사한다.
- ⑤감사는 감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장 또는 평의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⑥제126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임원 및 연합회에 사용되고,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37조의 13의 2 (이사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①이사는 전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합회업무에 관하여 법령, 법령에 의거하는 후생노동장관의 처분, 규약 및 평의원회의 의결을 준수하며 연합회를 위하여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가 전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합회의 업무에 관하여 그 임무를 태만히 하는 때에는 그 이사는 연합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37조의 13의 3 (이사의 금지행위 등) ①이사는 자기 또는 연합회 이외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의 적정을 해하는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이사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체할 수 있다.

제137조의 13의 4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연합회와 이사장(제137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의 이익이 상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대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된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137조의 14 (회원) ①기금은 연합회에 신청으로 그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른 연합회의 회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후생노동장관은 기금 또는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연합회에 가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 4 관 연합회의 업무

제137조의 15 (연합회업무) ①연합회는 제137조의 17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중도탈퇴자 및 그 회원인 기금에 관계되는 해산기금가입자에 대하여 연금 또는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일시금의 지급을 행한다.

②연합회는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 및 일시금에 대하여 일정액이 확보되도록 기금의 자출금 등을 원자(原資)로서 기금적립금의 액을 부가하는 사업
2. 기금이 행하는 사업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

③연합회는 기금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

④연합회는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투자고문업자와 당해 연합회가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신탁, 보험, 공제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⑤제128조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탁계약(운용방법을 특정한 신탁계약으로 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 보험, 공제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연합회는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업무의 일부를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7조의 16 (연금수리) 연합회는 적정한 연금수리에 의거하여 그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137조의 17 (중도탈퇴자에 대한 조치) ①연합회의 회원인 기금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도탈퇴자(당해 기금의 가입자자격을 상실

한 자(당해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에 당해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수급권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는 그자의 당해 기금의 가입자기간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해 기금의 가입자기간에 관계되는 연금의 현재가격에 상당하는 액(이하 “현재가격상당액”이라 한다.)의 교부를 당해 연합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가격상당액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교부신청에 관계되는 현재가격상당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정령으로 정한다.

④연합회는 제1항의 교부신청에 관계되는 현재가격상당액의 교부를 받았던 때에는 당해 교부금을 원자(原資)로 당해 중도탈퇴자에게 관계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⑤제129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은 전항의 연금 또는 일시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기금은 제1항의 교부신청에 관계되는 현재가격상당액을 교부한 때에는 당해 중도탈퇴자에게 관계되는 연금 및 일시금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면한다.

⑦연합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탈퇴자에게 관계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중도탈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연합회는 중도탈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전항의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동항의 통지에 대신하여 그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7조의 18 ①연합회가 전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중도탈퇴자가 다시 원래의 기금에 가입자로 되는 때에는 당해 기금은 당해 연합회에 대하여 당해 중도탈퇴자에게 관계되는 연금의 현재가격상당액의 교부를 청구한다.

②전항의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현재가격상당액의 계산에 관하여서는 정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제1항의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현재가격상당액의 교부를 받는 때에는 당해 교부금을 원자(原資)로 당해 중도탈퇴자에게 관계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연합회는 제1항의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현재가격상당액을 교부한 때에는 당해 중도탈퇴자에게 관계되는 연금 및 일시금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면한다.

⑤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관하여 준용 한다.

제137조의 19 (해산기금가입자에 대한 조치) ① 연합회는 그 회원인 기금이 해산하는 때에는 당해 기금의 해산기금가입자에 관계되는 제9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액을 당해 해산하는 기금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액을 징수한 기금에 관계되는 해산기금가입자가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때 또는 당해 기금이 해산하는 날에 있어 당해 기금에 관계되는 해산기금가입자가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이 있는 때에는 당해 해산기금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당해 해산기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사망일시금을 받은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전항의 연금액은 200엔에 당해 해산한 기금에 관계되는 가입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얻은 액으로 하며, 동항의 일시금의 액은 8,500엔으로 한다.

④ 해산한 기금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기금가입자에 분배하여야 하는 잔여재산의 교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액을 징수한 연합회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해산기금가입자에 분배하여야 하는 잔여재산의 교부를 받는 때에는 당해 교부금을 원자(原資)로,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해산기금가입자에 관계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의 액을 가산한다.

⑥연합회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의 교부를 받는 때에는 제137조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당해 잔여재산은 당해 해산기금가입자에게 분배된 것으로 본다.

⑦연합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기금가입자에 관계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의 액을 가산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해산기금가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37조의 17 제2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동조 제8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37조의 20 (연금의 지급정지) 연합회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금은 당해 해산기금가입자가 수급권이 있는 노령기초연금에 대하여 그 전액의 지급이 정지되어진 때에는 그 기간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당해 연금액 중 200엔에 당해 해산한 기금에 관계되는 가입자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얻은 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의 21 (준용규정) ①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연합회가 지급하는 연금 및 일시금을 받는 권리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연합회가 지급하는 연금에 관하여,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관하여, 제25조, 제70조 후단 및 제71조 제1항의 규정은 연합회가 지급하는 일시금에 관하여, 제29조의 규정은 연합회가 제137조의 1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 중 “사회보험 청장관”은 “연합회”로, 제24조 중 “노령기초연금”은 “연합회가 지급하는 연금”으로, 제29조 중 “수급권자”는 “수급권이 있는 자”로, 제71조 제1항 중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 한다.

②제95조, 제96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은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 규정 및 제137조의 1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9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97조 제1항 중 “사회보험청장관”, 제96조 제5항 중 “후생노동장

관”은 “연합회”로, 제97조 제1항 중 “전조 제1항”은 “제137조의 21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1항”으로 한다.

③제131조의 2 및 제132조의 규정은 연합회 적립금의 적립 및 그 운용, 업무상 여유금의 운용 및 사업연도 기타 그 재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중 “전조 및 전2항”은 “제137조의 21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및 전2항”으로 한다.

## 제 5 관 해산 및 청산

제137조의 22 (해산) ①연합회는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1. 평의원 정수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평의원회에서의 의결
2. 제1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

②연합회는 전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유로 해산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7조의 23 (연합회해산에 의한 연금 및 일시금지급에 대한 의무소멸)

연합회는 해산한 때에는 당해 연합회가 제137조의 17 제4항 및 제137조의 1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금 및 일시금지급에 대한 의무를 면한다. 다만 해산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의 24 (청산) ①연합회가 제137조의 2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이사가 그 청산인이 된다. 다만 평의원회에서 타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연합회가 제137조의 2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③제137조 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 3 절 잡 칙

제138조 (준용규정) 다음 표의 제1란의 규정은 동표의 제2란에 규정하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표의 제1란의 규정 중 동표의 제3란의 문구는 각각 동표의 제4란의 문구로 한다.〈표 생략〉

제139조 (신고) 기금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후생노동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9조의 2 (연금수리에 관한 서류의 연금수리에 의한 확인 등) 이 법률에 의거하는 기금(제1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위원 등을 포함한다.) 또는 연합회(제137조의 5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을 포함한다.)가 후생노동장관에게 제출하는 연금수리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서류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서류가 적정한 연금수리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가를 후생연금보험법 제17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금수리인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0조 (보고서제출) 기금 및 연합회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후생노동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 (보고의 수집 등) ①후생노동장관은 기금, 연합회 또는 해산한 기금, 연합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 또는 그 청산사무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수집하고, 또는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기금, 연합회 또는 해산한 기금, 연합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실제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및 검사를 행하는 당해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2조 (기금 등에 대한 감독) ①후생노동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수집하고, 질문하고, 또는 검사하는 경우, 기금 또는 연합회의 사업관리, 집행, 해산한 기금 또는 연합회의 청산사무(이하 “기금 등의 사업집행”이라 한다.)가 법령, 규약 또는 후생노동장관의 처분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 기금 등의 사업집행이 현저하게 적정성을 결여한다고 인정되는 때, 기금, 연합회의 임원 또는 해산한 기금, 연합회의 청산인이 기금 등의 사업집행을 명백히 태만히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금, 연합회 또는 이러한 임원, 해산한 기금, 연합회 또는 이러한 청산인에 대하여 기금 등의 사업집행에 관하여 위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후생노동장관은 기금 또는 연합회의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기금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기금, 연합회 또는 이러한 임원, 해산한 기금, 연합회 또는 이러한 청산인이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 기금 또는 연합회가 전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은 당해 기금, 연합회 또는 해산한 기금, 연합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위반에 관계된 임원 또는 청산인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임(改任)을 명할 수 있다.

④기금, 연합회 또는 해산한 기금, 연합회가 전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은 동항의 명령에 관계되는 임원을 개임하고, 동항의 명령에 관계되는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⑤기금 또는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 그 사업상황에 의하여 그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은 당해 기금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142조의 2 (권한위임) ①본장에 규정하는 후생노동장관의 권한 중 기금에 관계되는 것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후생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후생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후생지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 4 절 벌 칙

제143조 ①제1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해산한 기금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37조의 1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징수금을 독촉장으로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대표자, 대리인 또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그 위반행위를 한 자도, 전항과 같다.

제144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주는 이외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제145조 기금, 연합회 또는 해산한 기금, 연합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기금, 연합회의 임원, 대리인 또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해산한 기금, 연합회의 청산인은 2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0조 제4항(제137조의 8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2. 제1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3. 제1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연합회가 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한 때.

제146조 기금 또는 연합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 행위를 한 기금 또는 연합회의 임원은 2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1조(제137조의 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의 공고를 한 때.
2. 제137조의 17 제7항 또는 제137조의 19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아니한 때.
3. 제137조의 17 제8항(제137조의 19제 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의 공고를 한 때.

제147조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가입자가 제127조의 2에서 준용하는 제12조 제1항 또는 제138조에서 준용하는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제127조의 2에서 준용하는 제12조 제2항(제138조에서 준용하는 제10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로부터 신고가 있는 때는 제외한다.
2. 가입자가 제127조의 2에서 준용하는 제12조 제1항 또는 제138조에서 준용하는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때.
3.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가 제127조의 2에서 준용하는 제12조 제2항(제138조에서 준용하는 제10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허위의 신고를 한 때.
4. 호적법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의무자가 제138조에서 준용하는 제105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부 록1〉

제148조 제118조 제2항 또는 제13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민연금기금이라는 명칭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생략)

〈부 록2〉

## 후생연금보험법

제 정 : 昭和 29(1954)년 5월 19일 법률 제115호  
최종개정 : 平成 16(2004)년 6월 2일 법률 제76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률은 노동자의 노령, 장해 또는 사망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행하여 노동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후생연금기금이 그 가입자에 대하여 행하는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한다.

제 2 조 (관장) 후생연금보험은 정부가 관장한다.

제 2 조의 2 (연금액개정) 이 법률에 의한 연금인 보험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경우, 변동 후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개정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제 3 조 (정의) ①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납부기간”이라 함은 국민연금법(昭和 34(1959)년 법률 제 141호)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납부기간을 말한다.
2. “보험료면제기간”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면제기간을 말한다.

## 〈부 록2〉

3. “보수임금”이라 함은 급료, 봉급, 수당, 상여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노동자가 노동의 대상으로서 받는 모든 것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받는 것 및 3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여임금”이라 함은 급료, 봉급, 수당, 상여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노동자가 노동의 대상으로서 받는 모든 것 중 3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받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률에서 “배우자”, “夫” 및 “妻”는 혼인의 신고를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 4 조 (권한위임) ①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회보험청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사회보험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사회보험사무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험사무소장에 위임할 수 있다.

## 제 5 조 삭제

### 제 2 장 피보험자

#### 제 1 절 자격

제 6 조 (적용사업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 또는 선박을 적용사업소라 한다.

1. 다음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로 평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
  - 가. 물건제조, 가공, 선별, 포장, 수리 또는 해체사업
  - 나. 토목, 건축 기타 공작물의 건설, 개조, 보존, 수리, 변경, 파괴, 해체 또는 그 준비사업

- 다. 광물채굴 또는 채취사업
  - 라. 전기 또는 동력 발생, 전도 또는 공급사업
  - 마. 화물 또는 여객의 운송사업
  - 바. 화물적재 및 하자사업
  - 사. 소각, 청소 또는 도살사업
  - 아. 물건판매 또는 배급사업
  - 자. 금융 또는 보험사업
  - 차. 물건보관 또는 임대사업
  - 카. 매개주선의 사업
  - 타. 수금, 안내 또는 광고사업
  - 파. 교육, 연구 또는 조사사업
  - 하. 질병치료, 조산 기타 의료사업
  - 거. 통신 또는 보도사업
  - 너. 사회복지법(昭和 26(1951)년 법률 제45호)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및 생생보호사업법(平成 7(1995)년 법률 제86호)에서 정하는 생생보호사업
2. 전호에 규정하는 이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로서 상시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
3. 선원법(昭和 22(1947)년 법률 제10호) 제1조에 규정하는 선원(이하 “선원”이라 한다.)으로서 선박소유자(선원보험법(昭和 14(1939)년 법률 제73호) 제10조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로 되는 자, 이하 “선박소유자”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가 승선하는 선박(제59조의 2를 제외하고, 이하 “선박”이라 한다.)
- ②전항 제3호에 규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적용사업소의 사업주로 본다.
- ③제1항의 사업소 이외 사업소의 사업주는 사회보험청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소를 적용사업소로 할 수 있다.
- ④전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소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소에 사용되는 자(제12조에 규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회보험청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 록2〉

제 7 조 전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적용사업소가 각각 당해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업소에 관하여 동조 제3항의 인가가 있던 것으로 본다.

제 8 조 ①제6조 제3항의 적용사업소의 사업주는 사회보험청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소를 적용사업소가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소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소에 사용되는 자(제12조에 규정한 자를 제외한다.)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회보험청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8 조의 2 ①2 이상의 적용사업소(선박을 제외한다.)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 당해 사업주는 사회보험청장관의 인정을 받아 당해 2 이상의 사업소를 1의 적용사업소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2 이상의 적용사업소는 제6조의 적용사업소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 8 조의 3 2 이상의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당해 2 이상의 선박은 1의 적용사업소로 한다. 이 경우 당해 2 이상의 선박은 제6조의 적용사업소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 9 조 (피보험자)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70세 미만의 자는 후생연금 보험의 피보험자로 한다.

제10조 ①적용사업 이외의 사업소에 사용되는 70세 미만의 자는 사회보험청장관의 인가를 받아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②전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려면 그 사업소의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는 사회보험청장관의 인가를 받아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12조 (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사용되는 자로 다음에 규정하는 자
  - 가. 은급법(大正 12(1923)년 법률 제48호)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및 동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보는 자
  - 나. 법률에 의하여 조직되는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 다. 사립학교교직원공제법(昭和 28(1953)년 법률 제245호)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공제제도의 가입자(이하 “사학교직원공제제도가입자”라 한다.)
2. 임시로 사용되는 자(선박소유자에 사용되는 선원을 제외한다.)로서 다음에서 규정하는 자. 다만 가목에서 규정하는 자는 1월을 초과하고,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는 소정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매일 고용되는 자
  - 나.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하는 사업소에 사용되는 자
4. 계절적 업무에 사용되는 자(선박소유자에 사용되는 선원을 제외한다.). 다만 계속하여 4월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임시적 사업의 사업소에 사용되는 자. 다만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자격취득의 시기)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는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날, 또는 그 사용되는 사업소가 적용사업소가 되는 날, 또는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는 동조 동항의 인가가 있는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14조 (자격상실의 시기) 제9조 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그 사실이 있던 날에 다시 전조에 해당하는 때, 또는 공제조합조합원 또는 사학교직원

## 〈부 록2〉

공제제도의 가입자가 되는 때,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그 사업소 또는 선박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
3. 제8조 제1항 또는 제11조의 인가가 있는 때.
4.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5. 70세에 달한 때.

## 제15조 내지 제17조 삭제

제18조 (자격취득, 상실의 확인) ①피보험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사회보험청장관의 확인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자격의 취득 및 제14조 제3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자격 상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확인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며, 또는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의 확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行政手續法 平成 5(1993)년 법률 제88호) 제3장(제12조 및 제14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2 절 피보험자기간

제19조 ①피보험자기간의 계산은 달에 의하며,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이에 산입한다.

②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달에 그 자격을 상실하는 때에는 그 달을 1개월로서 피보험자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그 달에 다시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하는 자에 관하여는 전후의 피보험자기간을 합산한다.

제19조의 2 피보험자가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자(이하 본조에서 “가입자”이라 한다.)가 되는 달은 가입자이었던 달과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자가 아닌 달은 가입자가 아니었던 달로 본다. 같은 달에 2회 이상에 걸쳐 가입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달은 마지막으로 가입자이었던 때에는 가입자이었던 달로,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아닌 때에는 가입자가 아니었던 달로 본다.

### 제 3 절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상여액

제20조 (표준보수월액) 표준보수월액은 피보험자의 보수월액에 의거하여 다음 표에 의하여 정한다.

| 표준보수월액등급 | 표준보수월액   | 보 수 월 액                |
|----------|----------|------------------------|
| 제1급      | 98,000엔  | 101,000엔 미만            |
| 제2급      | 104,000엔 | 101,000엔 이상 107,000 미만 |
| 제3급      | 110,000엔 | 107,000엔 이상 114,000 미만 |
| 제4급      | 118,000엔 | 114,000엔 이상 122,000 미만 |
| 제5급      | 126,000엔 | 122,000엔 이상 130,000 미만 |
| 제6급      | 134,000엔 | 130,000엔 이상 138,000 미만 |
| 제7급      | 143,000엔 | 138,000엔 이상 146,000 미만 |
| 제8급      | 150,000엔 | 146,000엔 이상 155,000 미만 |
| 제9급      | 160,000엔 | 155,000엔 이상 165,000 미만 |
| 제10급     | 170,000엔 | 165,000엔 이상 175,000 미만 |
| 제11급     | 180,000엔 | 175,000엔 이상 185,000 미만 |
| 제12급     | 190,000엔 | 185,000엔 이상 195,000 미만 |

〈부 록2〉

| 표준보수월액등급 | 표준보수월액   | 보 수 월 액                |
|----------|----------|------------------------|
| 제13급     | 200,000엔 | 195,000엔 이상 210,000 미만 |
| 제14급     | 220,000엔 | 210,000엔 이상 230,000 미만 |
| 제15급     | 240,000엔 | 230,000엔 이상 250,000 미만 |
| 제16급     | 260,000엔 | 250,000엔 이상 270,000 미만 |
| 제17급     | 280,000엔 | 270,000엔 이상 290,000 미만 |
| 제18급     | 300,000엔 | 290,000엔 이상 310,000 미만 |
| 제19급     | 320,000엔 | 310,000엔 이상 330,000 미만 |
| 제20급     | 340,000엔 | 330,000엔 이상 350,000 미만 |
| 제21급     | 360,000엔 | 350,000엔 이상 370,000 미만 |
| 제22급     | 380,000엔 | 370,000엔 이상 395,000 미만 |
| 제23급     | 410,000엔 | 395,000엔 이상 425,000 미만 |
| 제24급     | 440,000엔 | 425,000엔 이상 455,000 미만 |
| 제25급     | 470,000엔 | 455,000엔 이상 485,000 미만 |
| 제26급     | 500,000엔 | 485,000엔 이상 515,000 미만 |
| 제27급     | 530,000엔 | 515,000엔 이상 545,000 미만 |
| 제28급     | 560,000엔 | 545,000엔 이상 575,000 미만 |
| 제29급     | 590,000엔 | 575,000엔 이상 605,000 미만 |
| 제30급     | 620,000엔 | 605,000엔 이상            |

제21조 (정시결정) ①사회보험청장관은 피보험자가 매년 7월 1일 실제로 사용되는 사업소에 있어 같은 날 전3월간(그 사업소에서 계속하여 사용된 기간에 한하며, 또한 보수지불의 기초가 된 일수가 20일 미만인 달이 있는 때에는 그 달을 제외한다.)에 받았던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얻은 액을 보수월액으로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표준보수월액은 그 해의 9월부터 다음 해의 8월까지 각월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6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자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부터 9월까지의 달부터 표준보수월액이 개정되고, 또는 개정되어야하는 피보험자에 관하여는 그 해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때의 결정) ① 사회보험청장관은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액을 보수월액으로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1.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날의 현재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얻은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2. 일, 시간, 성과 또는 도급에 의하여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달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소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동일한 보수를 받는 자가 받았던 보수액을 평균한 액
3. 전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달 전 1월간에 그 지방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동일한 보수를 받는 자가 받았던 보수액
4. 전3호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관하여 전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액의 합산액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표준보수월액은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는 달부터 그 해 8월(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는 자에 관하여는 다음 해 8월)까지 각월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제23조 (개정) ① 사회보험청장관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사용되는 사업소에서 계속하여 3월간(각월 모두 보수지불의 기초가 되는 일수가 20일 이상이어야 한다.)에 받았던 보수총액을 3으로 나누어 얻은 액이 그 자의 표준보수월액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생기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액을 보수월액으로 그 현저하게 차이가 생기는 달의 다음 달부터 표준보수월액으로 개정할 수 있다.

## 〈부 록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표준보수월액은 그 해 8월(7월부터 12월까지의 달에 개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의 8월)까지 각월의 표준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24조 (보수월액산정특례) ①피보험자의 보수월액이 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때 또는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보험청장관이 산정하는 액을 당해 피보험자의 보수월액한다.

②동시에 2 이상의 사업소에서 보수를 받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소에 대하여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또는 전조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액의 합산액을 그 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24조의 2 (선원인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 선원인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의 결정 및 개정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원보험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4조의 2의 규정의 예에 의한다.

제24조의 3 (표준상여액의 결정) ①사회보험청장관은 피보험자가 상여를 받는 달에 있어 그 달에 당해 피보험자가 받는 상여액에서 1,000엔 미만의 단수는 절삭하여 그 달의 표준상여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당해 표준상여액이 150만엔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50만엔으로 한다.  
②제24조의 규정은 표준상여액의 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5조 (현물급여의 가액) 보수 또는 상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그 지방의 시가에 의하여 사회보험청장관이 정한다.

## 제26조 삭제

#### 제 4 절 신고, 기록 등

제27조 (신고) 적용사업소의 사업주 또는 제10조 제2항의 동의를 한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보험자자격의 취득 및 상실, 보수월액 및 상여액에 관한 사항을 사회보험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기록) 사회보험청장관은 피보험자에 관한 원부를 비치하고, 이에 피보험자의 성명, 자격취득 및 상실의 연월일, 표준보수(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상여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 (통지) ①사회보험청장관은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표준보수의 결정 또는 개정을 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전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전항의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주는 사회보험청장관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사회보험청장관은 전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통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사회보험청장관은 사업소가 폐지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항의 통지에 대신하여 그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①사회보험청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신고에 관계되는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그 신고를 한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1조 (확인청구)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회보험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계되는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여야 한다.

### 제 3 장 보험급여

#### 제 1 절 통 칙

제32조 (보험급여의 종류) 이 법률에 의한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다.

1. 노령후생연금
2. 장해후생연금 및 장해수당금
3. 유족후생연금

제33조 (裁定)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거하여 사회보험청장관이 裁定한다.

제34조 (연금액의 자동개정) ①연금인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총무성에서 작성한 연평균의 전국소비자물가지수(이하 “물가지수”라 한다.)가 平成10(1998)년(본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보험급여액의 개정의 조치를 강구하는 때에는 최근 당해 조치가 강구된 해의 전년)의 물가지수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승분 또는 하락분의 비율을 기준으로 그 다음 해의 4월 이후 당해 연금인 보험급여의 액을 개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보험급여액의 개정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35조 (단수처리)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재정하는 경우 또는 보험급여액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제44조 제1항, 제50조의 2 제1항 또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액을 제외한다.) 또는 당해 가산하는 액에 50엔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절삭하고, 50엔 이상 100엔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100엔으로 절상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이외 보험급여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생기는 1엔 미만의 단수처리에 관하여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연금지급기간 및 지급기월) ①연금지급은 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하고, 권리가 소멸하는 달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②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하는 달 사이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연금은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및 12월의 6기에 각각 그 전월분까지를 지급한다. 다만 전지급기월에 지급하여야 하는 연금, 권리가 소멸한 경우 또는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의 연금은 지급기월이 아니더라도 지급한다.

제37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①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급여로 아직 그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그 자의 사망당시 그 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 미지급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사망한 자가 유족후생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인 때에는 그 자의 사망당시 그 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자녀이고, 그 자의 사망으로 유족후생연금의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자녀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사망한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그 보험급여의 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미지급의 보험급여를 받는 자의 순위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⑤ 미지급의 보험급여를 받는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그 1인이 하는 청구는 전원을 위하여 그 전액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고, 그 1인에 대하여 하는 지급은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병급조정) ① 연금인 보험급여(유족후생연금을 제외한다.)는 그 수급권자가 다른 연금인 보험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당해 연금인 보험급여와 동일한 지급사유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피고용자연금 각법(국민연금법 제5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연금급여(당해 연금인 보험급여와 동일한 지급 사유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것(당해 연금인 보험급여가 노령후생연금인 경우에는 퇴직 공제연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사이 그 지급을 정지한다. 유족후생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연금인 보험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노령기초연금 및 부가연금을 제외한다.) 또는 다른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의한 연금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당해 유족후생연금에 대하여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는 연금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자에게 관계되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연금인 보험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또는 다른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의한 연금급여에 관하여 본항의 본문 또는 다음 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서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는 연금인 보험급여에 관하여, 그 지급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월분의 지급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때, 당해 연금인 보험급여에 관계되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신청(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신청을 포함한다.)은 언제든지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제38조의 2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는 노령후생연금(동조 제2항 본문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수급권자(배우자에 대한 유족후생연금 또는 다른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의한 유족공제연금(배우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의 수급권이 있는 것에 한한다.)는 당해 노령후생연금에 관계되는 동조 제2항의 신청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액(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액의 일부가 지급이 정지되고 있는 노령후생연금은 그 액에서 당해 지급이 정지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하는 액)의 2분의 1(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액이 가산되는 노령후생연금에서는 그 액에서 동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연금액을 공제한 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연금액을 가산하는 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자에게 관계되는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연금인 보험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또는 다른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의한 연금급여에 관하여 동조 제2항 본문, 동조 제3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서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의 정지가 해제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후생연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서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의한 퇴직공제연금으로서 정령으로 정한 것의 일부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하는 자에 관하여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는 유족후생연금(배우자에 한한다.) 액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전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9조 (연금지급의 조정) ①연금수급권자가 甲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여 乙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고, 또는 동일인에 대하여 乙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甲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乙연금의 수급권이 소멸 또는 乙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이후 분으로 乙연금의 지급이 행하는 때에는, 그 지급되는 乙연금은 甲연금의 내입금으로 본다.

②연금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생겼음에 불구하고, 그 정지하여야 하는 기간 분으로 연금지급이 되는 때에는, 그 지급된 연금은 그 후에 지급하여야 하는 연금의 내입금으로 볼 수 있다. 연금을 감액하고 개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생겼음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이후 분으로 감액하지 아니한 액의 연금이 지급된 경우 당해 연금의 당해 감액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같다.

③동일인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 연금인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연금인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이후 분으로 동법에 의한 연금급여의 지급이 행하는 때에는, 그 지급된 동법에 의한 연금급여는 연금인 보험급여의 내입금으로 볼 수 있다.

제39조의 2 연금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그 수급권이 소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분으로 당해 연금인 보험급여의 과오불이 행하여진 경우, 당해 과오불에 의한 반환금에 관계되는 채권(이하 “반환금채권”이라 한다.)에 관계되는 채무변제를 하여야 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금인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금의 금액을 당해 과오불에 의한 반환금채권의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40조 (손해배상청구권) ①정부는 사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의 가액의 한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경우 수급권자가 당해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정부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의 2 (부정이득의 징수) 위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회보험청장관은 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 (수급권보호 및 공과금지)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있는 양도, 담보 제공 또는 애플리케이션 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 및 노령후생연금을 받을 권리를 국세체납처분(그 예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애플리케이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세 기타 公課는 보험급여로서 지급을 받는 금전을 표준으로 과할 수 없다. 다만 노령후생연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 절 노령후생연금

제42조 (수급권자) 노령후생연금은 피보험자기간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 그 자에게 지급한다.

1. 65세 이상인 자.
2. 보험료납부기간과 보험료면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인 자.

제43조 (연금액) ①노령후생연금의 액은 피보험자이었던 전기간의 평균 표준보수액(피보험자기간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각월의 표준보수월액과 표준상여액의 총액을 당해 피보험자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얻은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5.481에 상당하는 액에 피보험자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②노령후생연금액에 관하여는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달 이후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은 그 계산의 기초로 하지 아니한다.

③피보험자인 수급권자가 그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하여 피보험자로 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월을 경과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한 달 전에 있어서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을 노령후생연금액의 계산의 기초로 하고,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기산하여 1월을 경과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연금액을 개정한다.

제44조 ①노령후생연금(그 연금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자기간의 월수가 240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 당해 노령후생연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자기간의 월수가 240 미만이었을 때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월수가 240 이상이 되는 때. 제3항에서 같다.)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자녀(18세에 도달한 날 이후 최초 3월 31일까지에 있는 자 및 20세 미만으로 제4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장해등급(이하 본조에서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자에 한한다.)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서 정하는 액에 가산연금액을 가산하는 액으로 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연금액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에 관하여는 231,400으로 하며, 동항에서 규정하는 자녀에 관하여는 1인에 대하여 77,1007엔(그 중 2인에 대하여는 각각 231,400엔)으로 한다.

③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자녀는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 그 자에 의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보고, 그 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액을 개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액이 가산된 노령후생연금에 관하여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에게 관계되는 동항의 가산연금액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액을 개정한다.

1. 사망한 때.
2.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상태가 종료한 때.

3. 배우자가 이혼한 때.
4. 배우자가 65세에 도달한 때.
5. 자녀가 양자입양으로 수급권자의 배우자 이외 자의 양자가 된 때.
6. 양자입양자가 파양한 때.
7. 자녀가 혼인한 때.
8. 자녀(장해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자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8세에 도달한 날 이후 최초 3월 31일이 만료한 때.
9. 장해등급의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자녀(18세에 도달한 날 이후 최초 3월 31일까지에 있는 자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사정이 종료한 때.
10. 자녀가 20세에 도달한 때.

⑤제1항 또는 전항 제2호의 규정의 적용에서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 또는 그 자에 의한 생계유지 상태가 종료한 것에 대한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 2 (후생연금기금에 관계하는 특례) ①피보험자이었던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인 자에게 지급하는 노령후생연금에 관하여는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은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액에 관하여는 그 계산의 기초로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그 자가 당해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후생연금기금이 확정급부기업연금법(平成 13(2001)년 법률 제50호)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의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동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당해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그 지급에 관하여 의무를 승계하고 있는 연금급여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이었던 기간을 제외한다.)

2. 그 자가 당해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해산하는 경우, 당해 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그 지급에 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연금급여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

③전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경우 당해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그 지급에 관하여 의무를 승계하고 있는 연금급여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이었던 기간을 제외한다.)을 그 액의 계산의 기초로 하며, 당해 후생연금기금이 해산 또는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노령후생연금의 액을 개정한다.

④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해산한 경우 당해 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연금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의무에 관계되는 연금급여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을 그 액의 계산의 기초로 하고, 당해 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해산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노령후생연금의 액을 개정한다.

제45조 (실권)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소멸한다.

제46조 (지급정지) ①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가 피보험자(전월 이전의 달에 속한 날부터 계속하여 당해 피보험자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로 있는 날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한 날이 속한 달에 그자의 표준보수월액과 그 달 이전의 1년간의 표준상여액의 총액을 12로 나누어 얻은 액을 합산하여 얻은 액(이하 “총보수 월액상당액”이라고 한다.) 및 노령후생연금의 액(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연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본항에서 같다.)을 12로 나누어 얻은 액(이하 본항에서 “기본월액”이라 한다.)과의 합계액이 48만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월분의 당해 노령후생연금에 관하여 총보수월액상당액과 기본월액과의 합계액에서 48만엔을 공제하고 얻은 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에 12를 곱하여 얻은 액(이하 본항에서 “지급정지기준액”이라 한다.)에 상당

하는 부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지급정지기준액이 노령후생연금액 이상인 때에는 노령후생연금 전부를 지급정지하는 것으로 한다.

②피보험자이었던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인 자에게 지급하는 노령후생연금에 관하여는 전항 중 “및 노령 후생연금의 액”은 “및 제44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는 노령후생연금의 액”으로, “가산연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본항에서 같다”는 “가산연금액(이하 본항에서 “가산연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이하 본항에서 “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령후생연금의 액”을 말한다”로, “노령후생연금의 액 이상”은 “노령후생연금의 액 (가산연금액을 제외한다.)이상”으로, “전부”는 “전부(지급정지기준액이 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의 노령후생연금의 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연금액을 제외한다.)”로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후생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액이 가산된 노령후생연금에 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에 관하여 가산이 행하여지는 배우자가 노령후생연금(그 연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자기간의 월수가 240 이상인 것에 한한다.), 장해후생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기초연금, 공제조합이 지급하는 연금급여, 사립학교교직원공제법에 의한 연금급여 기타 연금급여 중 노령, 퇴직,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급여이고,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사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에 관하여 가산하는 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 제 3 절 장해후생연금 및 장해수당

제47조 (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자) ①장해후생연금은 질병, 부상 또는 그 질병, 부상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이하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

여 처음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았던 날(이하 “초진일”이라 한다.)에 있어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당해 초진일부터 기산하여 1년 6월을 경과하는 날(그 기간 내에 그 상병이 치료된 날(그 증상이 고정되고 치료의 효과가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된 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때에는 그 날로 하며, 이하 “장해인정일”이라 한다.)에 있어 상병에 의하여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그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해 상병에 관계되는 초진일 그 전날에 당해 초진일이 속한 달의 이전 월까지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기간이 있고, 또한 당해 피보험자기간에 관계되는 보험료납부기간과 보험료면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당해 피보험자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해등급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중증부터 1급, 2급 및 3급으로 하며, 각급의 장해상태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 2 ①질병 또는 부상, 그 상병에 관계되는 초진일에 피보험자 이었던 자로서 장해인정일에 전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자가, 동일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사이에서 그 상병에 의하여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는 그 기간 내에 동조 제1항의 장해후생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조 제1항 단서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청구를 한 자에게 동항의 장해후생연금을 지급한다.

제47조의 3 ①질병 또는 부상, 그 상병(이하 본조에서 “기준상병”이라 한다.)에 관계되는 초진일에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기준상병 이외의 상병에 의하여 장해상태에 있는 자가, 기준상병에 관계되는 장해인정일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사이에서 처음으로 기준상병에 의한 장해(이하 본조에서 “기준장해”라 한다.)와 다른 장해를 병합하여 장해등급의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때에는(기준상병의 초진일이 기준상병 이외의 상병(기준상병 이외의

상병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기준상병 이외의 모든 상병에 관계되는 초진일 이후에 한한다.) 그 자에게 기준장해와 다른 장해를 병합한 장해정도에 의한 장해후생연금을 지급한다.

②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중 “당해상병”은 “기준상병”으로 한다.

③제1항의 장해후생연금의 지급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장해후생연금의 청구가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제48조 (장해후생연금의 병급조정) ①장해후생연금(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부터 계속하여 장해등급의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는 수급권자에게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본조, 다음 조, 제52조 제4항, 제52조의 2, 제54조 제2항 단서 및 제544조의 2 제1항에서 같다.)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다시 장해후생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후의 장해를 병합하여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후생연금을 지급한다.

②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후의 장해를 병합하는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종전의 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은 소멸한다.

제49조 ①기간을 정하여 지급이 정지되고 있는 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다시 장해후생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전후의 장해를 병합하여 장해정도에 따른 장해후생연금은, 종전의 장해후생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기간은 그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이 그 자에게 종전의 장해를 병합하지 아니하는 장해정도에 따른 장해후생연금을 지급한다.

②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시 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장해후생연금이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때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지하여야 하는 기간은 그 자에 대하여 종전의 장해후생연금을 지급한다.

제50조 (장해후생연금의 액) ①장해후생연금의 액은 제43조 제1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계산하는 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장해후생연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자기간의 월수가 300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300으로 한다.

②장해정도가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해후생연금의 액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서 정하는 액에 100분의 125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③장해정도가 장해등급의 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해후생연금의 액이 603,200엔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액을 603,200엔으로 한다.

④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후생연금의 액은 그 액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하는 장해후생연금의 액보다 저액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장해후생연금의 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50조의 2 ①장해정도가 장해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해후생연금의 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서 정하는 액에 가산연금액을 가산하는 액으로 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연금액은 231,400으로 한다.

③제44조 제4항(제5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액이 가산되는 장해후생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1조 제5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장해후생연금의 액에 관하여는 당해 장해후생연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장해에 관계되는 장해인정일(제4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후생연금에 관하여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상병에 관계되는 장해인정일로 하며,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후생연금에 관하여는 병합되는 각각의 장해에 관계되는 장해

인정일(제47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해에 관하여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장해에 관계되는 장해인정일)중 늦은 날로 한다.)이 속한 달 이후에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은 그 계산의 기초로 하지 아니한다.

**제52조** ①사회보험청장관은 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하여 그 장해정도를 조사하여 그 정도가 종전의 장해등급 이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장해후생연금의 액을 개정할 수 있다.

②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자는 사회보험청장관에 대하여 장해정도가 증대하는 것에 따라 장해후생연금의 액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는 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날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청장관의 조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하여야 행할 수 있다.

④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자로서 질병, 부상 또는 그 상병(당해 장해후생연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장해에 관계되는 상병의 초진일 이후에 초진일이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본항 및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같다.)에 관계되는 당해 초진일에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당해 상병에 의하여 장해(장해등급의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에 한한다. 이하 본항 및 동조 제2항 단서에서 “기타장해”라고 한다.)의 상태에 있고, 또한 당해 상병에 관계되는 장해인정일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날의 그 전날까지의 사이에서 당해 장해후생연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장해와 기타장해(기타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기타장해를 병합하는 장해)를 병합하는 장해정도가 당해 장해후생연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장해정도 보다 중대하는 때에는 그 자는 사회보험청장관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장해후생연금의 액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후생연금의 액이 개정하는 때에는 개정 후 액에 의한 장해후생연금의 지급은 개정이 행하여지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 및 전항의 규정은 65세 이상의 자, 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자(당해 장해후생연금과 동일한 지급사유에 의거하는 국민연

금법에 의한 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이 없는 자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의 2 ①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자가 장해기초연금(당해 장해후생연금과 동일한 지급사유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수급권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장해후생연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장해와 당해 장해기초연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장해를 병합하여 장해정도에 따라 당해 장해후생연금의 액을 개정한다.

②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자가 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이 있는 경우, 단서규정에 의하여 병합되는 장해정도가 당해 장해기초연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장해정도가 보다 중대하는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병합되는 장해정도에 따라 당해 장해후생연금의 액을 개정한다.

제53조 (실권) 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은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하는 이외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소멸한다.

1. 사망한 때.

2.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자가 65세에 도달한 때. 다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것 없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한다.

3.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것 없이 3년을 경과하는 때. 다만 3년을 경과하는 날에 당해 수급권자가 65세 미만인 때를 제외한다.

제54조 (지급정지) ①장해후생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당해 상병에 관하여 노동기준법(昭和 22(1947)년 법률 제4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받는 권리를 취득하는 때에는 6년간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장해후생연금은 수급권자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장해상태에 당해하지 아니하는 사이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지급이 정지되는 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자가 질병, 부상 또는 그 상병에 관계되는 초진일에 피보험자이었던 경우, 당해 상병에 의하여 기타장해의 상태에 있고, 또한 당해 상병에 관계되는 장해인정일 이후 65세에 도달한 날의 그 전날까지의 사이에 당해 장해후생연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장해와 기타장해(기타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기타장해를 병합하는 장해)와 병합하는 장해의 정도가 장해등급의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46조 제4항의 규정은 장해후생연금에 관하여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전항 단서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4조의 2 ①장해후생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당해 장해후생연금과 동일한 지급사유에 의거하여 다른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의한 장해공제연금의 수급권이 있는 때에는 그 사이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제3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 중 “다른 연금인 보험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또는 다른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의한 연금급여”는 “다른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의한 장해공제연금”으로 한다.

제55조 (장해수당금의 수급권자) ①장해수당금은 질병, 부상 또는 그 상병에 관계되는 초진일에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당해 초진일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사이에 그 상병이 치료한 날에 있어 그 상병에 의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6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의 정도를 정하는 날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해수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연금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최후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이하 본조에서 “장해상태”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것이 없이 3년을 경과한 장해

후생연금의 수급권자(실제로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2.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공제조합이 지급하는 연금급여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제법에 의한 연금급여의 수급권자(최후로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것 없이 3년을 경과한 장해기초연금의 수급권자(실제로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당해 상병에 관하여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昭和 26(1951)년 법률 제191호,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昭和 42(1967)년 법률 제121호) 또는 동법에 근거하는 조례, 공립학교學校醫·학교치과의 및 학교약제사의 공무재해보상에 관한 법률(昭和 32(1957)년 법률 제143호) 또는 노동기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昭和 22(1947)년 법률 제50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급여, 장해급여 또는 선원보험법에 의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제57조 (장해수당금의 액) 장해수당금의 액은 제50조 제1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계산하는 액의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다만 그 액이 1,206,400엔에 미달하는 때에는 1,206,400엔으로 한다.

#### 제 4 절 유족후생연금

제58조 (수급권자) ①유족후생연금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의 유족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한 자에 관하여 사망일의 그 전날에 사망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까지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기간이 있고, 또한 당해 피보험자기간에 관계되는 보험료납부기간과 보험료면제기간을 합산하는 기간이 당해 피보험자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보험자(실종선고를 받았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 행방불명이 된 당시 피보험자이었던 것을 포함한다.)가 사망한 때.
2.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한 후에 피보험자이었던 사이에 초진일이 있는 상병에 의하여 당해 초진일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하기 전에 사망한 때.
3. 장해등급의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4.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제4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

②전항의 경우 사망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중 1에 해당하고, 또한 동항 제4호에도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이 유족후생연금을 청구하는 때에 별도의 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중 1에 해당하고 동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59조 (유족) ①유족후생연금을 받는 유족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또는 조부모(이하 단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라 한다.)로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실종선고를 받았던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행방불명이 된 당시, 이하 본조에서 같다.)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한다. 다만 처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夫, 부모 또는 조부모에 관하여는 55세 이상일 것.
2. 자녀 또는 손자녀에 관하여는 18세에 도달한 날 이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에 있는 자, 또는 20세 미만으로 장해등급의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고, 또한 실제로 혼인하고 있지 아니 할 것.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모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손자녀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조부모는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손자녀가 유족후생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각각 유족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장래에 향하여 그 자녀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상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 2 (사망추정)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이 된 때, 실제로 그 선박에 타고 있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또는 선박에 타고 있고 그 선박의 항해 중에 행방불명이 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생사가 3월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자의 사망이 3월 이내에 분명하여지고, 또한 그 사망의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후생연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이 된 날 또는 그 자가 행방불명이 된 날에 그 자는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이 된 때, 실제로 그 항공기에 타고 있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고 그 항공기의 항해 중에 행방불명이 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생사가 3월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자의 사망이 3월 이내에 분명하여지고, 또한 그 사망의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60조 (연금액) ①유족후생연금의 액은 제43조 제1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계산하는 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후생연금에 관하여는 그 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자기간의 월수가 300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것을 300으로 한다.

②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유족후생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유족후생연금의 액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액을 수급권자의 수로 나누어 얻은 액으로 한다.

제61조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유족후생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수에 증감이 생기는 때에는 증감이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액을 개정한다.

제62조 ①유족후생연금(제5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그 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자기간의 월수가 240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의 수급권자인 처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는 당시 35세 이상 65세 미만이었던 자 또는 35세에 도달한 당시 당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자녀로 국민연금법 제3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당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사망 후 동법 제39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8호 중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제외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가 40 이상 65세 미만인 때에는 제60조의 유족후생연금의 액에 603,200엔을 가산한다.  
②전항의 가산을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또는 동항의 가산을 폐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 연금액의 개정은 각각 당해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행한다.

제63조 (실권) ①유족후생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소멸한다.

1. 사망한 때.
  2.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때.
  3. 직계혈족 및 직계인척 이외의 자의 양자가 된 때(신고를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양자입양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파양에 의하여 사망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와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 ②자녀 또는 손자녀가 가지는 유족후생연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소멸한다.

〈부 록2〉

1. 자녀 또는 손자녀에 관하여는 18세에 도달한 날 이후 최초 3월 31일이 만료하는 때. 다만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장해등급의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장해등급의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에 관하여는 그 사정이 종료한 때. 다만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도달한 날 이후 최초 3월 31일까지에 있는 때를 제외한다.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20세에 도달한 때.

③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가 가지는 유족후생연금의 수급권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사망의 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때 소멸한다.

제64조 (지급정지) 유족후생연금은 당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사망에 관하여 노동기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의 지급이 행하여지는 때에는 사망일부터 6년간 그 지급을 정지한다.

제64조의 2 ①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의 1에 해당하여 지급되는 유족후생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당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사망에 관하여 다른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의한 유족공제연금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받는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제3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 중 “다른 연금인 보험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또는 다른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의한 연금급여”는 “다른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의한 유족공제연금이고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65조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액이 가산되는 유족후생연금은 그 수급권자인 처가 당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사망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기초연금의 지급을 받는 때에는 그 사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65조의 2 夫,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한 유족후생연금은 수급권자가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제66조 ①자녀에 대한 유족후생연금은 처가 유족후생연금의 수급권이 있는 기간,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처에 대한 유족후생연금이 다음 항 본문 또는 다음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정지되고 있는 사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처에 대한 유족후생연금은 당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사망에 관하여 처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로 자녀가 당해 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이 있는 때에는 그 사이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자녀에 대한 유족후생연금이 다음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정지되고 있는 사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夫에 대한 유족후생연금은 자녀가 유족후생연금의 수급권이 있는 기간, 그 지급을 정지한다. 전항 단서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67조 ①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유족후생연금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의 소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족후생연금의 수급권이 있는 자 또는 배우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소급하여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배우자 또는 자녀는 언제든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68조 ①배우자 이외의 자에 대한 유족후생연금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있어 수급권자 중 1인 이상의 자의 소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한 유족후생연금은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소급하여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후생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후생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고,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중 “증감이 생긴 달”은 “지급이 정지되고, 또는 그 정지가 해제되는 달”로 한다.

제69조 (지급조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지급되는 유족후생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당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사망에 관하여 다른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의한 유족공제연금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받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0조 내지 제72조 삭제

#### 제 5 절 보험급여의 제한

제73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장해 또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때에는 당해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해후생연금 또는 장해수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3조의 2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자기의 고의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해 또는 사망 또는 이러한 원인이 되는 사고를 생기게 하고, 또는 그 장해의 정도를 증대시키고, 또는 그 회복을 방해하는 때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 장해후생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 장해의 정도를 증대시키고, 또는 그 회복을 방해하는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는 그자의 장해의 정도가 실제로 해당하는 장해등급 이하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을 할 수가 있다.

제75조 보험료를 징수하는 권리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당해 보험료에 관계되는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에 의거한 보험급여는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에 관계되는 피보험자자격의

취득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청구가 있는 후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 제76조 ①유족후생연금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시킨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사망 전에 그자의 사망에 의하여 유족후생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는 자를 고의로 사망시킨 자에 대하여도 같다.  
②유족후생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시킨 때에는 소멸한다.

제77조 연금인 보험급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원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의하여 연금인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있고, 또는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자에 관하여 가산이 행하여지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을 거부한 때.
3. 전호에서 규정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 장해의 회복을 방해한 때.

제78조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제 4 장 복지시설

제79조 정부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

### 제 4 장의 2 적립금의 운용

제79조의 2 (운용목적) 후생보험특별회계의 연금계산에 관계되는 적립금(이하 본장에서 “적립금”이라 한다.)의 운용은 적립금이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로부터 징수되는 보험료의 일부이고, 또한 장래 보험급여가 귀중한 재원이 되는 것에 특히 유의하여 오로지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행하여 장래에 걸쳐 후생연금보험사업의 운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79조의 3 (적립금운용) ①적립금운용은 후생노동장관이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금자금운용기금에 대하여 다음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운용에 의거하는 납부금의 납부를 목적으로서 적립금을 기탁하는 것에 의하여 행한다.

②후생노동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탁하기까지 재정용자자금에 적립금을 예탁할 수 있다.

제79조의 4 (기본방침) ①후생노동장관은 적립금운용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본조에서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기본방침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1. 적립금운용의 기본방향
2. 적립금운용에 관계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연금자금운용기금에서 연금자금(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탁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4. 연금자금운용기금에 있어서 연금자금의 관리 및 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적립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후생노동장관은 기본방침을 정함에 있어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전문적인 의견 및内外의 경제동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적립금운용이 시장 기타 민간활동에 주는 영향에 유의하면서 안전과 확실을 기본으로 하여 적립금운용이 특정한 방법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또한 적립금운용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이를 정한다.

④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8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급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예상액 및 예정운용수입의 액을 감안하며, 또한 적립금운용수입의 변동의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후생노동장관은 기본방침을 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미리 사회보장심의회에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⑥후생노동장관은 기본방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후생노동장관은 적립금운용의 상황 및 그 연금재정에 주는 영향, 연금자금운용기금에서 연금자금의 관리 및 운용의 상황,内外의 경제동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매년 1회 기본방침에 검토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⑧후생노동장관은 전항의 검토를 행하는 때에는 사회보장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9조의 5 (보고서제출 및 공표) ①후생노동장관은 매년도 적립금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당해 연도에 있어서 연금자금운용 기금의 결산 후 지체없이 사회보장심의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에는 당해 연도의 적립금운용의 상황 및 그 연금재정에 주는 영향 및 연금자금운용 기금에서 연금자금의 관리 및 운용의 평가를 기재함과 동시에 당해 연도에 있어서 연금자금운용기금의 업무개요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9조의 6 (운용직원의 책무) 적립금운용에 관계되는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후생노동성의 직원(정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운용직원”이라 한다.)은 적립금운용의 목적에 따라 신중하면서 세심한 주위를 기울이고 전력을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9조의 7 (비밀유지의무) 운용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9조의 8 (징계처분) 운용직원이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은 그 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昭和 22(1947)년 법률 제120호)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다.

## 제 5 장 비용부담

제80조 (국고부담) ①국고는 매년도 후생연금보험의 관장자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기초연금양출금(이하 “기초연금양출금”이라 한다.)의 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부담한다.

②국고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비용 이외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후생연금보험이 사업의 사무(기초연금양출금의 부담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81조 (보험료) ①정부는 후생연금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기초연금양출금을 포함한다.)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보험료는 피보험자기간계산의 기초가 되는 각월에 대하여 징수한다.

③보험료액은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상여액에 각각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④보험료율은 보험급여에 필요한 비용(기초연금과 출금을 포함한다.)의 예상액 및 예정운용수입 및 국고부담의 액을 고려하여 장래에 걸쳐 재정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적어도 5년마다 이 기준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한다.

⑤보험료율은 당분간 1000분의 135.8(후생연금기금의 가입자인 피보험자는 1000분의 135.8에서 제81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제보험료율을 공제하고 얻은 율)로 한다.

⑥전항의 보험료율은 그 율이 제4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제81조의 2 (육아휴직기간 중의 보험료징수의 특례)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平成 3(1991)년 법률 제76호)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사용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험청장관에게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피보험자에게 관계되는 보험료로서 그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그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관계되는 것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 3 (면제보험료율의 결정 등) ① 후생노동장관은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대행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생연금 기금마다 면제보험료율을 결정한다.

② 대행보험료율은 당해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총액 및 표준상여액의 총액에 각각 당해 대행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액(제139조 제6항 또는 제7항에서 규정하는 신청에 관계되는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상여액으로 동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규정하는 기간에 관계하는 각각 당해 대행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의 수입을 대행급여비(당해 후생연금기금 가입자의 전부가 가입자가 아닌 것으로 보험급여의 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증가

하는 것으로 되는 보험급여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말한다.)로 충당하는 경우, 당해 대행급여비의 예상액 및 예정운용수입의 액을 고려하여 장래에 걸쳐 재정균형을 유지하고,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후생연금기금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후생연금기금에 관계되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대행보험료율(다음 항에서 “대행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당해 대행보험료율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후생노동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후생연금기금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행하는 적용사업소의 사업주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설립되는 후생연금기금에 관계되는 대행보험료율을 산정하며, 당해 대행보험료율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후생노동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후생노동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후생연금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후생연금기금은 전항의 통지를 받는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당해 후생연금기금에 관계되는 적용사업소의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전항의 적용사업소의 사업주(당해 후생연금기금이 설립되는 적용사업소의 사업주에 한한다.)는 동항의 통지를 받는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당해 통지에 관계되는 가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 (보험료부담 및 납부의무) ①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각각 보험료의 반액을 부담한다.

②사업주는 그 사용하는 피보험자 및 자기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피보험자가 동시에 2 이상의 사업소 또는 선박에 사용되는 경우, 각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액 및 보험료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3조 (보험료납부) ① 매월 보험료는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험청장관은 납입고지를 한 보험료액이 당해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액을 초과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또는 납부한 보험료액이 당해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액을 초과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초과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납입고지 또는 납부를 그 납입고지 또는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관하여 선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의 납부고지 또는 납부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사회보험청장관은 그 취지를 당해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의 2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사회보험청장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예금 또는 저금의 지급과 그 인출하는 금전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를 그 예금계좌 또는 저금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행하는 것을 희망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가 확실하게 인정되고, 또한 그 신청을 인정하는 것이 보험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신청을 인정할 수 있다.

제84조 (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사업주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통화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부담하여야 하는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에 관계되는 보험료(피보험자가 그 사업소 또는 선박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월 및 그 달의 표준보수월액에 관계되는 보험료)를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통화로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표준상여액에 관계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액을 당해 상여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공제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공제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공제액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 (보험료의 선납징수) 보험료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납기 전이라도 전부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의 체납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 나. 강제집행을 받은 때.
  - 다. 과산선고를 받은 때.
  - 라. 기업담보권의 실행절차가 개시된 때.
  - 마. 경매의 개시가 있는 때.
2. 법인인 납부의무자가 해산한 경우
3. 피보험자가 사용된 사업소가 폐지된 경우
4. 피보험자가 사용된 선박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선박이 멸실, 침몰, 또는 완전히 운항할 수 없는 때에 도  
달한 경우

제85조의 2 (후생연금기금연합회의 해산에 따른 책임준비금 상당액의 징수) 정부는 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해산하는 때에는 그 해산하는 날에 당해 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연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에게 관계되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하는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액을 당해 해산하는 후생연금기금연합회로부터 징수한다.

제86조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보험료 기타 이 법률(제9장)을 제외한다. 이하 본장, 다음 장 및 제7장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체납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보험청장관은 기한을 지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사회보험청장관은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의무자가 건강보험법(大正 11(1922)년 법률 제70호)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는 자인 때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 병기하여 발부할 수 있다.

④제2항의 독촉장에 의하여 지정하는 기한은 독촉장을 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상을 경과하는 날이어야 한다. 다만 제8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회보험청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며, 납부의무자의 거주지 또는 그 자의 재산소재지의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법(昭和 22(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도시에 있어서는 区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그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8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선납하도록 보험료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⑥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시정촌세의 예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생노동장관은 징수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액을 당해 시정촌에 교부하여야 하다.

제87조 (연체금) ①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사회보험청장관은 보험료액에 대하여 연 14.6 퍼센트의 비율로 납기한 다음 날부터 보험료 완납 또는 재산압류의 날의 그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체납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료액이 1,000엔 미만인 때.
2. 선납을 정수하는 때.
3. 납부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없거나 또는 그 주소 및 거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독촉하는 때.

②전항의 경우 보험료액의 일부에 대하여 납부가 있는 때에는 그 납부일 이후 기간에 관계되는 연체금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는 그 납부한 보험료액을 공제하는 금액에 의한다.

③연체금을 계산함에 있어 보험료액에 1,000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절삭한다.

④독촉장으로 지정하는 기한까지 보험료를 완납한 때 또는 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금액이 100엔 미만인 때에는 연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연체금의 금액에 100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절삭 한다.

⑥제40조의 2 및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은 전각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보험료로 본다.

제88조 (우선변제의 순위) 보험료 기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우선변제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에 다음으로 한다.

제89조 (징수에 관한 통칙) 보험료 기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은 이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 6 장 이의신청

제90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①피보험자자격, 표준보수 또는 보험급여에 관하여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회보험심사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회보험심사회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심사청구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인은 사회보험심사관이 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고, 사회보험심사회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심사청구 및 전2항의 재심사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④피보험자자격 또는 표준보수에 관한 처분이 확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이의를 당해 처분에 의거하는 보험급여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서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

제91조 보험료 기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 처분 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회보험심사회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의 2 (行政不服審査法의 적용관계) 전2조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행정불복심사법(昭和 37(1967)년 법률 제160호) 제2절(제18조 및 제19조를 제외한다.) 및 제5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 3 (이의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제90조 제1항 또는 제91조에서 규정하는 처분취소의 소는 당해 처분에 관한 재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사회보험심사회의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 제 7 장 잡 칙

제92조 (시효) ①보험료 기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환부를 받는 권리가 2년을 경과하는 때, 보험급여를 받는 권리가 5년을 경과하는 때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연금인 보험급여를 받는 권리의 시효는 당해 연금인 보험급여가 그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고 있는 사이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보험료 기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고지 또는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민법(明治 29(1896)년 법률 제89호)1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93조 (기간계산)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거하는 명령에서 규정하는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4조 삭제

제95조 (호적사항의 무료증명) 시정촌의 장은 사회보험청장관, 지방사회보험사무국장, 사회보험사무소장 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당해 시정촌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보험자, 피보험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호적에 관하여 무료로 증명할 수 있다.

제96조 (수급권자에 관한 조사) ①사회보험청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금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그자의 신분관계, 장해상태 그 밖의 수급권의 소멸, 연금액의 개정 또는 지급정지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또는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수급권자에게 질문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행하는 당해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7조 (진단) ①사회보험청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의하여 연금인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있고, 또는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자에 관하여 가산이 행하여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명하거나 또는 당해 직원에게 이러한 자의 장해상태를 진단시키는 것을 할 수 있다.

②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원의 진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8조 (신고) ①사업주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회보험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피보험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회보험청장관에게 신고, 또는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급권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험청장관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고, 또한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昭和 22(1947)년 법률 제224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의무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사회보협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9조 (사업주의 사무) 후생연금보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무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사업주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 (출입검사 등) ① 사회보협청장관은 피보험자자격, 표준보수, 보험료 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② 제96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및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0조의 2 (자료제공) ① 사회보협청장관은 피보험자자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공서에 대하여 법인의 사업소명칭, 소재지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회보협청장관은 연금인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권자에 대한 다른 피고용자연금 각법에 의한 연금급여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제4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급여의 지급상황에 관하여 국민연금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 등 또는 제4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급여에 관계되는 제도의 관장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0조의 3 (경과조치) 이 법률에 의거하여 정령을 제정하고,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른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과조치를 정할 수 있다.

제101조 (실시규정)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절차 그 밖의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 제 8 장 별 칙

제102조 ①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2. 제29조 제2항(제3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81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독촉장으로 지정하는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또는 기피하는 때.  
②해산하는 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징수금을 독촉장으로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제102조의 2 ①제81조의 3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81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과 같다.

제103조 사업주 이외의 자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주는 이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제105조 다음 각호에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주가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한 때.
2.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피보험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통지를 한 때.
3. 제9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적법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제 9 장 후생연금기금 및 후생연금기금연합회

### 제 1 절 후생연금기금

#### 제 1 관 통 칙

제106조 (기금의 목적) 후생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가입자의 노령에 관하여 급여를 행하여, 이로써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7조 (조직) 기금은 적용사업소의 사업주 및 그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피보험자로써 조직한다.

제108조 (법인격) ①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기금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109조 (명칭) ①기금은 그 명칭 중에 후생연금기금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이 아닌 자는 후생연금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 2 관 설 립

제110조 (설립) ①1 또는 2 이상의 적용사업소에 관하여 상시 정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1 또는 2 이상의 적용사업소에 관하여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적용사업소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수는 합산하여 상시 전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11조 ①적용사업소의 사업주는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피보험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여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피보험자의 3분의 1이상으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동항의 동의 이외 당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2 이상의 적용사업소에 관하여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2항의 동의는 각 적용사업소에 관하여 얻어야 한다.

제112조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과 동시에 기금설립의 인가신청을 행하는 경우에는 전2조 중 “적용사업소”는 “적용사업소가 되는 당연 사업소”로,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되는 당연 자”로 한다.

제113조 (성립시기) 기금은 설립인가를 받는 때 성립한다.

제114조 기금이 성립한 때에는 이사장이 선임되기까지 기금설립의 인가신청을 한 적용사업소의 사업주가 이사장의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당해 적용사업소의 사업주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사장으로 본다.

### 제 3 관 관 리

제115조 (규약) ①기금은 규약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기금설립에 관계되는 적용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명칭 및 소재지)
4. 대의원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가입자에 관한 사항
7. 표준급여에 관한 사항
8.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관한 사항
9.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로 충당하는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계약에 관한 사항
10. 부금 및 그 부담구분에 관한 사항
11. 사업연도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2.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3.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기타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②전항의 규약의 변경(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은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기금은 전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계되는 규약의 변경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후생노동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6조 (공고) 기금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7조 (대의원 회) ①기금에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대의원의 정수는 짹수로 하여 그 반수는 설립사업소(기금이 설립되는 적용사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주가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설립사업소에 사용되는 자 중에서 선정하고, 다른 반수는 가입자에서 호선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결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대의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대의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의 자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및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대의원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대의원회에 의장을 둔다.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⑦전각항에서 정하는 이외 대의원회의 소집, 의사의 절차 기타 대의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18조 ①다음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매사업연도의 예산
3. 매사업연도의 사업보고 및 결산
4. 기타 규약으로 정한 사항

②이사장은 대의원회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또는 이사장으로서 대의원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항으로 임시 긴급을 요하는 것을 처분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음 대의원회에서 이를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대의원회는 감사에 대하여 기금업무에 관한 감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9조 (임원) ①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이사의 정수는 짹수로 하여 그 반수는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선정하는 대의원으로, 다른 반수는 가입자에서 호선하는 대의원으로, 각각 호선한다.

③이사 중 1인을 이사장으로 하며,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선정하는 대의원인 이사 중에서 이사가 선거한다.

④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선정한 대의원 및 가입자에서 호선한 대의원 중에서 각각 1인을 선거한다.

⑤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결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하더라도 후임 임원이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⑦감사는 이사 또는 기금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20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 또는 이사장이 퀼석인 때에는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선정한 대의원인 이사 중에서 미리 이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고 그 직무를 행한다.

②기금의 업무는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③이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보좌하고,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로 충당하는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금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④감사는 기금의 업무를 감사한다.

⑤감사는 감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장 또는 대의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 록2〉

제120조의 2 (이사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①이사는 전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 법령에 의거한 후생노동장관의 처분, 규약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기금을 위하여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가 전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그 임무를 태만히 하는 때에는 그 이사는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20조의 3 (이사의 금지행위 등) ①이사는 자기 또는 당해 기금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로 충당하는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의 적정을 해하는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금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이사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체시킬 수 있다.

제120조의 4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기금과 이사장(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과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은 대표권이 있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사가 기금을 대표한다.

제121조 (기금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성) 기금의 임원 및 기금에 사용되어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明治 40(1907)년 법률 제45호) 기타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본다.

#### 제 4 관 가입자

제122조 (가입자) 기금설립사업소에 사용되는 피보험자는 당해 기금의 가입자로 한다.

제123조 (자격취득의 시기) 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가입자자격을 취득한다.

1. 설립사업소에 사용되는 때.
2. 그 사용되는 사업소 또는 선박이 설립사업소가 되는 때.
3. 설립사업소에 사용된 자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제124조 (자격상실의 시기) 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그 사실이 있던 날에 다시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또는 공제조합의 조합원 또는 사학교직원공제제도의 가입자가 되는 때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에 가입자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그 설립 사업소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
3. 그 사용된 사업소 또는 선박이 설립사업소가 아닌 때.
4.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5. 70세에 달한 때.

제125조 (가입자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특례) 가입자자격을 취득한 달에 그 자격을 상실하는 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소급하여 가입자가 아니었던 자로 본다.

제126조 (동시에 2 이상의 기금설립사업소에 사용된 자 등의 취급) ① 동시에 2 이상의 기금설립사업소에 사용된 피보험자는 제1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가 선택하는 1의 기금 이외의 기금가입자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선택은 그 자가 2 이상의 기금설립사업소에 사용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자는 동항의 선택을 하는 때에는 그 자가 2 이상의 기금설립사업소에 사용된 날로 소급하여 그 선택한 1의 기금 이외의 기금가입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한다.

〈부 록2〉

④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동항의 선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2 이상의 기금 중 그 1의 기금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⑤甲기금가입자가 동시에 乙기금설립사업소에 사용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乙기금을 선택하는 때에는 그 자는 乙기금의 가입자가 된 날에 甲기금의 가입자자격을 상실한다.

⑥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한 기금가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자는 그 날 당해 기금 이외의 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127조 ①동시에 설립사업소와 설립사업소 이외의 사업소 또는 선박에 사용된 피보험자는 제1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금가입자로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그 자가 동시에 설립사업소와 설립사업소 이외의 사업소 또는 선박에 사용된 것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당해 설립사업소에 관계되는 기금에서 하여야 한다.

③설립사업소 이외의 사업소 또는 선박에 사용된 피보험자가 동시에 설립사업소에 사용된 경우,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동시에 설립사업소와 설립사업소 이외의 사업소 또는 선박에 사용된 것이 된 날로 소급하여 당해 설립사업소에 관계되는 기금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한다.

④기금가입자가 동시에 설립사업소 이외의 사업소 또는 선박에 사용된 경우,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동시에 당해 기금설립사업소와 설립사업소 이외의 사업소 또는 선박에 사용된 날에 당해 기금가입자자격을 상실한다.

제128조 (설립사업소의 사업주의 신고) 설립사업소의 사업주는 가입자에 관한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표준보수의 결정 또는 개정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신속하게 그 통지가 있는 사항을 기금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9조 (표준 급여) ①기금은 가입자의 급여액에 의거하여 표준급여를 정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가입자가 당해 기금설립사업소 이외의 적용사업소(제10조 제2항의 동의를 한 사업주의 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동시에 사용된 자는 그 자가 당해 기금설립사업소 이외의 적용사업소로 받는 급여액을 전항에서 규정하는 표준급여의 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서 규정하는 급여의 범위 및 액의 산정방법, 표준급여의 기준 및 표준급여의 결정 및 개정의 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④설립사업소의 사업주는 가입자의 급여액에 관한 사항을 기금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기금은 표준급여의 결정 또는 개정을 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설립사업소의 사업주는 전항의 통지를 받는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당해 통지에 관계되는 가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당해 기금설립사업소 이외의 적용사업소의 사업주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급여액에 관한 사항을 동항의 기금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 5 관 기금의 업무

제130조 (기금의 업무) ①기금은 제10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노령에 관하여 연금급여(이하 "노령연금급여"라 한다.)의 지급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기금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의 탈퇴에 관하여 일시금급여의 지급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기금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또는 장해에 관하여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의 지급을 할 수 있다.

④기금은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

〈부 록2〉

⑤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탁회사(신탁업무를 운영하는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명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국을 지구로 하며 농업협동조합법(昭和 22(1947)년 법률 제132호) 제10조 제1항 제10호의 사업 중 생명공제사업을 행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후생연금기금연합회 기타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리에 관한 업무는 후생연금기금연합회에 위탁할 수 없다.

제130조의 2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계약) ① 기금은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와 신탁,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또는 투자고문업자(유가증권에 관한 투자고문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昭和 61(1986)년 법률 제74호)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투자일임계약(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일임계약에 관계되는 연금급여 등 적립금(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로 충당하는 적립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탁회사와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투자고문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2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제130조의 3 (연금수리) 기금은 적정한 연금 수리에 근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1조 (노령연금급여의 기준) ①기금이 지급하는 노령연금급여는 적어도 당해 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때.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취득한 달에 당해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때를 제외한다.
2.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로 당해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달 이후의 월에 가입자자격을 취득하고, 그 연금액이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때. 다만 가입자자격을 취득한 월 또는 그 다음 달부터 개정하는 때를 제외한다.

②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게 기금이 지급하는 노령연금급여는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의 소멸이유 이외의 이유로 그 수급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제132조 ①기금이 지급하는 노령연금급여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표준급여 및 가입자이었던 기간에 의거하여 그 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②기금이 지급하는 노령연금급여로서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액은 당해 노령후생연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자이었던 기간 중 동시에 당해 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이하 본항에서 “가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이라 한다.)의 평균표준보수액의 1000분의 5.481에 상당하는 액에 가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에 관계되는 피보험자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얻은 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그 지급하는 노령연금급여의 수준이 전항에서 규정하는 액에 2.82를 곱하고 얻은 액에 상당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3조 ①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게 기금이 지급하는 노령연금급여는 당해 노령후생연금이 그 전액에 대해 지급을 정지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노령연금급여액 중 전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거하여 그 일부의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게 기금이 지급하는 노령연금

급여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중 “규정하는 액”은 “규정하는 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133조의 2 ①노령후생연금(제4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에 한 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의 수급권자에게 기금이 지급하는 노령연금 급여에 관하여는 전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게 기금이 지급하는 노령연금급여는 당해 노령후생연금이 그 전액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되고 있는 경우(당해 노령후생연금(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연금액(이하 본조에서 “가산연금액”이라 한다.)이 가산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이 제4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액에 대하여 지급정지되어 있는 경우로 지급정지 기준액(동조 제2항에서 바꾸어 보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기준액을 말한다. 다음 항 및 제163조의 3 제1항에서 같다.)이 제44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 노령후생연금액(다음 항에서 “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노령후생연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하고, 그 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노령연금급여액 중 제1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게 기금이 지급하는 노령연금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액 중 당해 수급권자의 당해 노령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에 관계되는 제1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액(이하 본항에서 “당해 기금의 대행부분의 액”이라 한다.)에서, 지급정지 기준액에서 당해 노령후생연금액(가산연금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얻은 액에 당해 기금의 대행부분의 액을 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노령후생연금액에서 노령후생연금액을 공제하고 얻은 액(제163조의 3 제1항에서 “대행부분의 총액”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다음 항에서 “지급정지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얻은 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당해 노령후생연금(가산연금액이 가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이 제4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액에 대하여 지급정지되고 있는 경우로 지급정지 기준액이 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노령후생연금의 액에 미달하는 때.

2. 당해 노령후생연금(가산연금액이 가산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이 제4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노령후생연금액에서 가산연금액을 공제하고 얻은 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전액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하고 있는 때.

④지급정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서 생기는 1엔 미만의 단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정령으로 정한다.

⑤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거하여 그 일부의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있는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게 기금이 지급하는 노령연금급여에 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2항 중 “규정하는 액”은 “규정하는 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으로, 제3항 중 “액(다음 항)”은 “액(이하 본항에서 “재직 지급정지액”이라 한다.)에 당해 기금의 대행부분의 액에서 재직지급정지액을 공제하고 얻은 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다음 항)”으로 한다.

제134조 (재정)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를 받는 권리 는 그 권리가 있는 자의 청구에 의거하여 기금이 재정한다.

제135조 (노령연금급여의 지급기월)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게 기금이 지급하는 노령연금급여의 지급기월에 관하여는 당해 노령후생연금의 지급기월의 예에 의한다. 다만 노령연금급여액이 정령으로 정하는 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지급기월에 관하여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6조 (준용규정) 제37조, 제40조, 제40조의 2 및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관하여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39조 제2항 전단의 규정은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급여에 관하여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사망 또는 장해를 지급이유로 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1

항 내지 제3항 및 제40조 중 “수급권자”는 “수급권이 있는 자”로, 동조 중 “정부” 및 제40조의 2 중 “사회보험청장관”은 “기금”으로, 제41조 제1항 중 “노령후생연금”은 “기금이 지급하는 노령연금급여 또는 탈퇴를 지급이유로 하는 일시금급여”로 한다.

제136조의 2 (연금급여 등 적립) 기금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급여 등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36조의 3 (연금급여 등 적립금의 운용) ①연금급여 등 적립금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신탁회사에의 신탁(운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생명보험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의 보험료 또는 공제부금의 납입
3. 투자고문업자와의 투자일임계약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체결
4. 다음의 방법으로 금융기관, 증권회사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을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는 것
  - 가. 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률(昭和 26년 법률 제198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증권(증권투자신탁 또는 이에 유사한 외국투자신탁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 또는 투자증권, 투자 법인체권 또는 외국투자증권(자산을 주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로서 운용하는 것(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유가증권 옵션거래, 외국시장증권 선물거래, 유가증권시장지수 등 선도거래, 유가증권시장 옵션거래 또는 유가증권시장 지수 등 교환거래를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법인 또는 외국투자법인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발행하는 것에 한한다.)의 매매
  - 나. 대부신탁의 수익증권의 매매
  - 다. 예금 또는 저금
  - 라.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신탁으로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방법 또는 콜자금의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에 의하여 운용하는 것
5. 다음의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는 것

- 가. 유가증권(증권거래법(昭和 23(1948)년 법률 제25호) 제10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증권 또는 외국국채증권으로 보는 표준물(다목에서 “표준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전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주식을 제외한다.)의 매매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중 정령으로 정하는 은행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대부
- 다. 채권옵션(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있어 채권(표준물을 포함한다.)의 매매계약을 성립 또는 해제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취득 또는 부여
- 라. 선물외환(외국통화로서 표시되는 지급수단으로 그 매매계약에 의거하는 채권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계되는 거래를 당해 매매계약일 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외환시세에 의하여 실행하는 거래(금융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 있어 행하여지는 거래 또는 이에 유사한 거래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의 매매
- 마. 통화옵션(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있어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지급수단의 매도거래(라목의 정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의 취득 또는 부여
- 바.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신탁으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는 것
- (1) 가목 내지 마목에서 언급한 방법
  - (2) 주식의 매매로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2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지수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것(주식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의 변동과 일치하도록 운용하는 것
  - (3) 증권거래법 제2조 제2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및 동조 제22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옵션거래((2)의 유가증권지수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 (4) 콜자금의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

②제130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전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투자일임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기금은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또는 동항 제5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과 당해 운용에 관계되는 연금급여 등 적립금의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급여 등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의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운용은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36조의 4 (연금급여 등 적립금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등) ①기금은 연금급여 등 적립금의 운용에 관하여 운용목적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본방침을 작성하고 당해 기본방침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은 이 법률(이에 의거하는 명령을 포함한다.) 기타 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기금은 전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정령으로 정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부금의 납입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용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협의에 의거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의 취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는 것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④기금업무상 여유금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목적 및 자금의 성질에 따라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⑤기금은 사업연도 기타 그 재무에 관하여는 전2조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136조의 5 (행위준칙) 기금이 체결하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상대방은 법령 및 당해 계약을 준수하고 기금을 위하여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1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 보험, 공제계약 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투자일임계약
2. 제130조의 2 제2항(제136조의 3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
3. 제136조의 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운용방법에 관계되는 계약
4. 제136조의 3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금급여 등 적립금의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

## 제 6 관 비용의 부담

### 제137조 삭제

제138조 (부금) ①기금은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부금을 징수한다. 다만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부금(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금을 제외한다. 다음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은 노령연금급여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각월에 관하여 징수한다.

③부금의 액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의 표준급여액을 표준으로 산정한다.

④제1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입자에 관계되는 부금의 액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액에 표준급여액의 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대한 당해 기금설립사업소에서 받는 급여액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⑤기금설립사업소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소에 수반하여 다른 설립사업소에 관계되는 부금이 증가하는 때에는 당해 기금은 당해 증가하는 액에 상당하는 액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 중 규약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정하는 액을 당해 감소에 관계되는 설립사업소의 사업주로부터 부금으로서 일괄하여 징수한다.

⑥기금이 해산한 경우 당해 해산일에 있어서 연금급여 등 적립금의 액이 정령으로 정한 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기금은 당해 미달액을 설립사업소의 사업주로부터 부금으로서 일괄하여 징수한다.

제139조 (부금부담 및 납부의무) ①가입자 및 가입자를 사용하는 설립사업소의 사업주는 각각 부금(전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금을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반액을 부담한다.

②기금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금액의 부담비율을 증가할 수 있다.

③전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금에 관하여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다만 가입자는 정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부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설립사업소의 사업주는 그 사용하는 가입자 및 자기가 부담하는 부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⑤설립사업소의 사업주는 기금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금을 금전에 갈음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가입자가 동일한 기금설립사업소의 2 이상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각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금액 및 부금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제1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입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에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그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기간에 관계되는 부금 중 면제보험료액(당해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상여액에 각각 제81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제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면제한다.

⑧육아휴직 중인 가입자로 제1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입자인 자를 사용하는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에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그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관계되는 부금 중 면제보험료액에 전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을 면제한다.

제140조 (징수금) ①기금은 제1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입자에 관계되는 노령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제1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액에서 당해 가입자에 관계되는 부금액을 공제하는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138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해 가입자 및 제1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기금설립사업소 이외의 적용사업소의 사업주(제10조 제2항의 동의를 한 사업주를 포함한다.)는 각각 전항의 징수금을 부담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징수금의 액은 사업주가 당해 기금설립사업소의 사업주인 경우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금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다만 그 액이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각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업주가 설립사업소의 사업주인 경우, 당해 가입자가 그 사업주의 사업소 또는 선박에 설립되는 기금의 가입자인 경우에 있어 그 자에 대하여 부금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액

2. 당해 사업주가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아닌 경우 당해 가입자가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그 자에 대하여 보험료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액에서 그 자에 대하여 보험료로서 부담하는 액을 공제하는 액에 상당하는 액

④당해 가입자는 제1항의 징수금의 액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액을 공제하는 액을 부담한다.

⑤제1항의 징수금은 당해 가입자에 관계되는 노령연금급여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이었던 기간의 각월에 관하여 징수한다.

⑥당해 가입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가입자 및 자기가 부담하는 징수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⑦당해 가입자가 당해 기금설립사업소 이외의 사업소 또는 선박의 2 이상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각 사업주의 징수금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당해 가입자에 관계되는 전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한 달부터 그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관계되는 제1항의 징수금 중 면제보험료액에서 전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액을 공제하는 액을 면제한다.

⑨육아휴직 중인 당해 가입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가입자를 사용하는 당해 기금설립사업소의 사업주를 대신하여 전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1조 (준용규정) ①제83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은 부금 및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하여 제86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부금 기타 본절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83조 제2항 및 제3항, 제86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87조 제1항 중 “사회보험청장관” 및 제86조 제6항 중 “후생노동장관”은 “기금”으로, 제8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중 “보험료액”은 “부금 또는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금액”으로, 제87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 중 “보험료”는 “부금 또는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으로 하고, 부금에 관하여는 제83조 제2항 중 “납부한 보험료액”은 “납부한 부금(증권거래법(昭和 23(1948)년 법률 제25호) 제2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 납부하는 부금을 제외한다.)의 액”으로, 제84조 중 “피보험자”는 “가입자”로, 제85조 제3호 중 “피보험자가 사용되는 사업소”는 “설립사업소”로, 동조 제4호 중 “선박”이라고 있는 것은 “설립사업소인 선박”으로,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사업주”는 “당해 기금설립사

업소 이외의 적용사업소의 사업주(제10조 제2항의 동의를 한 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피보험자”는 “당해 기금설립사업소 이외의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가입자인 피보험자”로, 제85조 제3호 중 “피보험자가 사용되는 사업소”는 “설립사업소 이외의 사업소”로, 동조 제4호 중 “선박”은 “설립사업소 이외의 선박”으로 한다.

②기금이 전항에 있어 준용하는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경우에 관계되는 부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39조 제5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기금은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 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 7 관 병합 및 분할

제142조 (병합) ①기금은 병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회에 있어 대의원 정수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의결하고, 후생노동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병합에 의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때에는 각 기금이 각각 대의원회에 있어 임원 또는 대의원 중에서 선임하는 설립위원회가 공동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다.

③병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병합 후 존속하는 기금은 병합에 의하여 소멸하는 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기금이 병합하는 때에는 병합에 의하여 소멸하는 기금의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 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은 병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병합 후 존속하는 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으로 본다. 다만 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그 지급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고 있는 노령연금 급여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 (분할) ①기금은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회에 있어 대의원 정수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의결하고, 후생노동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금의 분할은 설립사업소의 일부에 관하여 행할 수 없다.

③분할을 행하는 경우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금의 가입자로 되는 피보험자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기금의 가입자인 피보험자의 수는 제10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어야 한다.

④분할에 의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때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금의 설립사업소로 되는 적용사업소의 사업주는 규약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다.

⑤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금은 분할에 의하여 소멸하는 기금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기금의 권리의무의 일부를 승계한다.

⑥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권리의무의 한도는 분할의결과 동시에 의결하고,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기금이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금에 노령연금 급여지급에 관한 의무가 승계되는 자의 분할에 의하여 소멸한 기금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은 당해 의무를 승계하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으로 본다. 다만 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그 지급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고 있는 노령연금급여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4조 (설립사업소의 증감) ①기금이 그 설립사업소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에 관계되는 적용사업소의 사업주의 전부 및 그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피보험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기금이 그 설립사업소를 증가시키는 경우 그 증가에 관계되는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피보험자의 3분의 1이상으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전항의 동의 이외 당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경우 그 증가 또는 감소에 관계되는 적용사업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제1항의 피보험자의 동의 또는 전항의 동의는 각 적용사업소에 관하여 얻어야 한다.

④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이 있는 사업소에 관계되는 설립사업소의 증가에 관한 규약변경의 인가신청을 행하는 경우에는 전3항 중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로 되는 자”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업소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기금가입자는 설립사업소를 감소시킨 후에도 제10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4조의 2 (기금간의 권리의무 이전) ① 甲기금은 乙기금에게 신청하여, 甲기금의 설립사업소(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립사업소의 일부. 이하 본조에서 “탈퇴사업소”라 한다.)에 사용되는 甲기금의 가입자에 관계되는 甲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그 지급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고 있는 노령연금급여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甲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을 제외한다.)에 관계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을 행하는 경우에는 甲기금은 乙기금에 대한 신청과 탈퇴사업소에 사용되는 甲기금의 가입자이었던 자로 당해 가입자자격을 상실하는 자(동항에서 규정하는 탈퇴사업소에 사용되는 甲기금의 가입자를 제외한다.) 또는 그 사망을 지급이유로 하는 甲기금의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있는 자(다음 항에서 “유족”이라 한다.) 중 다음 항의 동의를 하는 甲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그 지급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고 있는 노령연금급여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甲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을 제외한다.)에 관계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할 수 있다.

③ 甲기금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甲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상하는 자 또는 그 유족에 관계되는 권리의무의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가입자자격을 상실하는 자 또는 그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甲기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탈퇴사업소의 사업주의 전부 및 당해 탈퇴사업소에 사용되는 甲기금의 가입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고, 甲기금의 대의원회에 있어 대의원 정수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 및 甲기금의 탈퇴사업소 이외의 설립사업소에 관계되는 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전항의 경우 탈퇴사업소가 2 이상인 때에는 甲기금의 가입자의 동의는 각 탈퇴사업소에 관하여 얻어야 한다.

⑥ 乙기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⑦ 乙기금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의원회에 있어 대의원 정수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의결하고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乙기금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때에는 乙기금에게 노령연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가 승계되는 자의 甲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은 乙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으로 본다.

⑨ 乙기금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의하여 甲기금의 설립사업소가 감소하는 때에는 당해 탈퇴사업소에 관하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 8 관 확정각출연금에의 이행

제144조의 3 (확정각출연금을 실시하는 경우의 절차) ① 기금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연금급여등 적립금의 일부를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실시하는 기업형연금(확정각출연금법(平成 13(2001)년 법률 제88호)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업형연금을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있어 당해 설립사업소에 사용되는 가입자의 개인별 관리자산(동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개인별 관리자산을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금급여 등 적립금의 일부를 당해 기업형연금의 자산관리기관(동조 제7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산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전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형연금을 실시하는 설립사업소의 사업주의 전부 및 가입자 중 당해 연금급여 등 적립금의 전환에 관계되는 가입자(이하 본조에서 “전환가입자”라 한다.)로 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및 가입자 중 전환가입자로 되는 자 이외의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 당해 기업형연금이 실시되는 설립사업소가 2 이상인 때에는 동항의 전환가입자로 되는 자의 동의는 각 설립 사업소에 관하여 얻어야 한다.

④해산하는 기금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해산하는 기금에 관계되는 적용사업소의 사업주가 실시하는 기업형연금에 있어 당해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피보험자의 개인별 관리자산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기업형연금의 자산관리기관에게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 제4항 중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제144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⑤전각항에서 정하는 이외 기금에 관계되는 적용사업소의 사업주가 기업형연금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기금에 관한 이 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 제 9 관 해산 및 청산

제145조 (해산) ①기금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이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대의원 정수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결
2. 기금사업의 계속불능
3. 제1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

②기금은 전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유에 의하여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6조 (기금해산에 의한 연금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의무소멸) 기금은 해산을 한 때에는 당해 기금의 가입자이었던 자에게 관계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면한다. 다만 해산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로 미지급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7조 (청산) ①기금이 제14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이사가 그 청산인이 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타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후생노동장관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1.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되는 자가 없는 때.
2. 기금이 제14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
3. 청산인의 결여로 손해가 생기는 우려가 있는 때.

③전항의 경우 청산인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이 부담한다.

④해산한 기금의 잔여재산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산한 날에 있어 당해 기금이 연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당해 잔여재산을 사업주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21조의 규정은 기금의 청산인에 관하여 민법 제74조 내지 제78조, 비송사건절차법(明治 31(1898)년 법률 제14호) 제138조의 규정은 기금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8조 제3호 중 “재판소”는 “후생노동장관”으로 한다.

⑦전각항에서 정하는 이외 해산하는 기금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48조 ①후생노동장관은 해산하는 기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청산사무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또는 당해 직원

으로 하여금 당해 기금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실제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②제1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96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및 검사에 관하여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  
한 권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후생노동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또는 질문,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청산사무가 법령, 규약 또는 후생노동장관의 처  
분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 그 청산사무가 현저하게 적정을 결  
여한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청산인이 그 청산사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산한 기금 또는 그 청산인에 대  
하여 그 청산사무에 관하여 위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해산한 기금 또는 그 청산인이 전항의 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후생  
노동장관은 당해 기금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위반에 관계되는  
청산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을 명하고, 또는 당해 위반에 관계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 제 2 절 후생연금기금연합회

### 제 1 관 통 칙

제149조 (연합회) ①기금은 제1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도탈퇴자  
및 해산한 기금이 노령연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자(이하 “해산기금가입자”라 한다.)에 관계된 노령연금급여의 지급을 공  
동으로 행하기 위하여 후생연금기금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  
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전국을 통하여 1개로 한다.

제150조 (법인격) ①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연합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151조 (명칭) ①연합회는 그 명칭 중 후생연금기금연합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연합회가 아닌 자는 후생연금기금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 2 관 설립 및 관리

제152조 (설립인가 등) ①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인가신청은 5 이상의 기금이 공동으로 규약을 작성하고, 기금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연합회는 설립의 인가를 받는 때에 성립한다.

④후생노동장관은 기금이 행하는 사업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연합회에 가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114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중 “기금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하는 적용사업소의 사업주”는 “연합회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하는 기금의 이사장”으로, “당해 적용사업소의 사업주”는 “당해 기금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153조 (규약) ①연합회는 규약으로 다음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6.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관한 사항
7.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8. 연금급여 등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계약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사업연도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2.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기타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규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4조 (준용규정) 제116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5조 (평의원회) ① 연합회에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의원은 회원인 기금의 이사장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평의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평의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의 자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및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  
하고 평의원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그 청구가 있는 날  
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평의원회에 의장을 둔다.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⑦ 전각항에 정하는 이외 평의원회의 소집, 의사절차 기타 평의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56조 ① 다음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매사업 연도의 예산

3. 매사업 연도의 사업보고 및 결산

4. 기타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평의원회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또는 이사장으로서 평의원  
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임시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것을 차분할 수 있다.

〈부 록2〉

③이사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음 평의원회에서 이를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평의원회는 감사에 대하여 연합회업무에 관한 감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7조 (임원) ①연합회에는 임원으로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이사 및 감사는 평의원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평의원 이외의 자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이사 중 1인을 이사장으로 하며, 이사가 호선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하여도 후임 임원이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⑥감사는 이사 또는 연합회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58조 (임원직무 등) ①이사장은 연합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 또는 이사장이 결석인 때에는 이사장의 미리 지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고, 또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②연합회의 업무는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을 보좌하고 연금급여 등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연합회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④감사는 연합회업무를 감사한다.

⑤감사는 감사결과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장 또는 평의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제121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임원 및 연합회에 사용되어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8조의 2 (이사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①이사는 전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합회업무에 관하여 법령, 법령에 의거하는 후생노동장관의

처분, 규약 및 평의원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가 전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합회의 업무에 관하여 그 임무를 태만히 하는 때에는 그 이사는 연합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8조의 3 (이사의 금지행위 등) ①이사는 자기 또는 연합회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연금급여 등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의 적정을 해하는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이사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체시킬 수 있다.

제158조의 4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연합회와 이사장(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그 직무를 행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과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은 대표권이 있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

### 제 3 관 연합회가 행하는 업무

제159조 (연합회의 업무) ①연합회는 제1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고 있는 중도탈퇴자 및 해산기금가입자에 대하여 노령연금급여의 지급을 행하는 이외 제160조의 2 제3항 및 제162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금급여의 지급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연합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이외 제14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의 교부를 받고 동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관하여 사망 또는 장해를 지급이유로 하는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를 할 수 있다.

③연합회는 다음의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 록2〉

1. 해산기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급여에 대하여 일정액이 확보되도록 기금의 약출금 등을 원자(原資)로서 노령연금급여액을 부가하는 사업
  2. 기금이 행하는 사업이 견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
- ④연합회는 기금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
- ⑤연합회는 제1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기금업무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
- ⑥연합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연합회 기타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9조의 2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계약) ① 연합회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와 신탁, 보험 또는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고문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야 하다.

②연합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일임계약에 관계되는 연금급여 등 적립금에 관하여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탁회사와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30조의 2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9조의 3 (연금수리) 연합회는 적정한 연금수리에 의거하여 그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160조 (중도탈퇴자에게 관계되는 조치) ①기금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에게 신청하여 중도탈퇴자(당해 기금의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자(당해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에 있어 당해 기금이 지급하는 노령연금급여의 수급권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는 그 자의 당해 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해 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에 관계되는 노령연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이전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이전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이전을 행하는 경우에는 기금은 연합회에 대하여 당해 중도탈퇴자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에 관계되는 노령연금급여의 현재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현재가격상당액”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현재가격상당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정령으로 정한다.

⑤연합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가격상당액의 교부를 받는 때에는 당해 노령연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⑥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탈퇴자에게 관계되는 노령연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중도탈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연합회는 중도탈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전항의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동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그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0조의 2 ①기금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계되는 중도탈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탈퇴를 지급이유로 하는 제130조 제2항의 일시금급여(이하 “탈퇴일시금”이라 한다.)의 액에 상당하는 액(이하 “탈퇴일시금상당액”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합회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기금은 당해 중도탈퇴자에게 관계되는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격상당액의 교부를 하는 때에는 당해 신청에 관계되는 탈퇴일시금상당액을 연합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일시금상당액의 교부를 받는 때에는 당해 교부금을 원자(原資)로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중도탈퇴자에게 관계되는 노령연금급여의 액을 가산하고, 또는 사망을 지급이유로 하는 일시금(이하 “사망일시금”이라 한다.) 기타 일시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④기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일시금상당액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중도탈퇴자에게 관계되는 탈퇴일시금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면한다.

⑤연합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탈퇴자에게 관계되는 노령연금급여액을 가산하고, 또는 일시금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전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함께 그 취지를 당해 중도탈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동조 제7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1조 ①연합회가 제1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고 있는 중도탈퇴자가 다시 원래 기금의가입자가 되는 때에는, 당해 기금은 당해 중도탈퇴자에게 관계되는 당해 노령연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가 당해 노령연금급여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산되는 액의 노령연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로 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가 일시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일시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은 연합회에 대하여 당해 중도탈퇴자에게 관계되는 노령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의 현재가격상당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현재가격상당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162조 ①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탈퇴자에게 관계되는 노령연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연합회에 이전하는 기금에 대하여 병합, 분할 또는 제14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이 있는 경우, 당해 중도탈퇴자가 당해 병합 또는 분할이 있는 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기금 또는 당해 권리의무의 이전이 있는 기금의 당

해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기금의 가입자가 되는 때에는 전조 제1항 중 “다시 원래의 기금”은 “병합 또는 분할이 있는 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기금 또는 제14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기금의 당해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기금”으로 하고,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42조 제4항 단서 및 제143조 제7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2조의 2 제1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되는 액의 노령연금 급여 및 일시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는 기금의 당해 의무 승계에 관계되는 가입자에 관하여 제160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60조 제1항 및 제3항 중 “에 관계되는 노령연금급여”는 “에 관계되는 다음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액이 가산되는 노령연금급여 및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급여”로, 동조 제5항 및 제6항 중 “노령연금급여”는 “노령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로, 제160조의 2 제3항 중 “일시금급여를 지급한다”는 “일시금급여액을 가산한다”로, 동조 제5항 중 “의 액을 가산하고, 또는 일시금급여를 지급한다”는 “또는 일시금급여의 액을 가산한다”로, 제161조 제1항 및 전조 제1항 중 “노령연금급여”는 “노령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로 한다.

제162조의 3 (해산기금가입자에 관계되는 조치) ①연합회는 기금이 해산하는 때에는 해산기금가입자에 관계되는 제8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액을 당해 해산하는 기금으로부터 징수한다.

②해산기금가입자가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때 또는 기금이 해산하는 날에 있어 당해 기금에 관계되는 해산기금가입자가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이 있는 때에는 연합회는 당해 해산기금가입자에게 노령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전항의 노령연금급여의 액은 당해 노령후생연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자이었던 기간 중 동시에 당해 해산하는 기금의 가입자이었던 기간에 관계되는 제1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액으로 한다.

④해산하는 기금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기금가입자에게 분배하여야 하는 잔여재산의 교부를 연합회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해산기금가입자에 분배하여 하는 잔여재산의 교부를 받는 때에는 당해 교부금을 원자(原資)로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해산기금가입자에 관계되는 노령연금급여의 액을 가산하거나 또는 사망일시금 기타 일시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⑥연합회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의 교부를 받는 때에는 제147조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당해 잔여재산은 당해 해산기금가입자에 분배되는 것으로 본다.

⑦연합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기금가입자에 관계되는 노령연금급여의 액을 가산하거나 또는 일시금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해산기금가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60조 제2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동조 제7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2조의 4 (장해급여 등에 관계되는 잔여재산의 교부) ①연합회가 제15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산하는 기금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분배하여야 하는 잔여재산(전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신청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교부를 연합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의 교부를 받는 때에는 당해 교부금을 원자(原資)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14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사망 또는 장해를 지급이유로 하는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전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6항 중 “전항”은 “제162조의 4 제2항”으로, “해산기금가입자”는 “제14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로, 동조 제7항 중 “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해산기금가입자에게 관계되는 노령연금급여의 액을 가산하고”는 “제162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급여”로, “당해 해산기금가입자”는 “당해 제14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로 한다.

④제160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동조 제7항의 규정은 전항에서 바꾸어 보고 준용하는 전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3조 (재정) 연합회가 지급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를 받는 권리  
는 그 권리가 있는 자의 청구에 의거하여 연합회가 재정한다.

제163조의 2 (노령연금급여의 지급정지) ①연합회가 제162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노령연금급여(이하 “해산기금에 관계되는 노령연금급여”라 한다.)는 당해 해산기금가입자가 수급권이 있는 노령후생연금에 대하여 제38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이 정지되고 있는 때에는 그 사이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당해 노령연금급여 중 제162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되는 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거하여 그 일부의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있는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중 “그 지급정지”는 “그 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정지”로 한다.

제163조의 3 ①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가 해산기금에 관계되는 노령연금급여의 수급권이 있는 자인 경우로 제4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노령후생연금이 그 전액 또는 당해 노령후생연금(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연금액(이하 본항에서 “가산연금액”이라 한다.)이 가산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의 액에서 가산연금액을 공제하여 얻은 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전액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하고 있는 때에는 해산기금에 관계되는 노령연금급여(제162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되는 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본항에서 “해산기금에 관계되는 대행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급정

지기준액에서 당해 노령후생연금의 액(가산연금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얻은 액에 해산기금에 관계되는 대행부분의 액을 대행부분의 총액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다음 항에서 “지급정지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분(그 액이 해산기금에 관계되는 대행부분의 액 이상인 때에는 해산기금에 관계되는 대행부분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지급정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생기는 1엔 미만의 단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정령으로 정한다.

③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거하여 그 일부의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있는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중 “액(다음 항)”은 “액(이하 본항에서 “제직지급정지액”이라 한다.)에 해산기금에 관계되는 대행부분의 액에서 제직지급정지액을 공제하여 얻은 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가한 액(다음 항”으로 한다.

제164조 (준용규정) ①제37조, 제40조, 제40조의 2 및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연합회가 지급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관하여,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39조 제2항 전단의 규정은 연합회가 지급하는 연금급여에 관하여, 제135조의 규정은 연합회가 지급하는 노령연금급여에 관하여, 제35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해산기금에 관계되는 노령연금급여에 관하여,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연합회가 지급하는 사망 또는 장해를 지급이유로 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 중 “(제44조 제1조, 제50조의 2 제1항 또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액을 제외한다.) 또는 당해 가산하는 액”은 “(제162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액을 제외한다.)”로, 제3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0조 및 제45조 중 “수급권자”는 “수급권이 있는 자”로, 제40조 중 “정부”, 제40조 및 제40조의 2 중 “사회보험청장관”은 “연합회”로, 제41조 제1항 및 제45조 중 “노령후생연금”은 “연합회가 지급하는 노령연금급여”로 한다.

②제86조에서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의 2의 규정 및 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87조 제1항 중 “사회보험청장관” 및 제86조 제6항 중 “후생노동장관”은 “연합회”로 한다.

③제136조의 2 내지 제136조의 5의 규정은 연합회의 연금급여 등 적립금의 적립 및 그 운용, 업무상 여유금의 운용 및 사업연도 기타 그 재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165조 삭제

##### 제 4 관 해산 및 청산

제166조 (해산) ①연합회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평의원 정수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평의원회 의결
2. 제1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

②연합회는 전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유에 의하여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67조 (연합회해산에 의한 연금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의무소멸) 연합회는 해산한 때에는 종도탈퇴자 및 제14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관계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면한다. 다만 해산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로서 미지급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8조 (청산) ①연합회가 제1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이사가 그 청산인이 된다. 다만 평의원회에서 타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연합회가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③제147조 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 제3항, 제6항, 제7항 및 제148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 3 절 잡 칙

제169조 (이의제기) 표준급여 또는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에 관한 처분 또는 부금 기타 본장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처분 또는 제141조 제1항 및 제16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에 관하여는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조의 “제90조 제1항 또는 제91조”는 “제169조에서 준용하는 제90조 제1항 또는 제91조”로 한다.

제170조 (시효) ①부금 기타 본장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또는 그 환부를 받는 권리는 2년을 경과하는 때,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를 받는 권리는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연금급여를 받는 권리의 시효는 당해 연금이 그 전액에 대하여 지급 정지되어 있는 때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부금 기타 본장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고지 또는 제141조 제1항 및 제16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민법 제1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171조 (기간계산) 본장 또는 본장의 규정에 의거하는 명령에서 규정하는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본장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2조 (호적사항의 무료증명) 시정촌의 장은 기금, 연합회 또는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의 수급권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당해 시정촌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의 수급권이 있는 자의 호적에 관하여 무료로 증명할 수가 있다.

제173조 (서류 등의 제출) 기금 또는 연합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의 수급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장해상태에 관한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4조 (준용규정) 제98조 제1항의 규정은 설립사업소의 사업주에 관하여, 동조 제2항의 규정은 가입자에 관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의 수급권이 있는 자에 관하여, 동조 제4항의 규정은 이러한 급여의 수급권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제27조”는 “제128조”로, 제98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회보험청장관”은 “기금”으로, 동항 중 “사업주”는 “설립사업소의 사업주”로, 동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사회보험청장관”은 “기금 또는 연합회”로 한다.

#### 제175조 삭제

제176조 (신고) ①기금 및 연합회는 제130조 제5항 또는 제1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를 후생노동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에 관계되는 계약조항에 변경이 생기는 때에도 같다.

②기금 및 연합회는 연금급여 등 적립금에 관하여 제136조의 3 제1항 제5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각각 시작하여 운용을 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제4항(제164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연금급여 등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체제에 관하여 후생노동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체제에 변경이 생긴 때에도 같다.

제176조의 2 (연금수리 관계서류의 연금수리인에 의한 확인 등) 이 법률에 의거하여 기금(제111조 제1항 또는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병합에 의하여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연합회가 후생노동장관에게 제출하는 연금수리에 관한 업무

에 관계되는 서류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가 적정한 연금수리에 의거하여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연금수리인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연금수리인은 전항에 규정하는 확인을 정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경험이 있고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77조 (보고서제출) 기금 및 연합회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후생노동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7조의 2 (업무상황의 주지) ①기금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금업무의 상황에 관하여 가입자에 주지시켜야 한다.

②기금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상황에 관하여 가입자 이외의 자로서 기금이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에게도 가능한 한 동일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178조 (보고요구 등) ①후생노동장관은 기금 또는 연합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또는 당해직원으로 하여금 기금 또는 연합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실제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②제1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96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및 검사에 관하여,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9조 (기금 등에 대한 감독) ①후생노동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요구 또는 질문, 검사하는 경우에는 기금 또는 연합회의 사업관리 또는 집행이 법령, 규약 또는 후생노동장관의 처분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금 또는 연합회의 사업관리 또는 집행이 현저하게 적정을 결여한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기금 또는 연합회의 임원이 그 사업관리 또는 집행을 태만히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금 또는 연합회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그 사업관리 또는 집행

에 관하여 위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후생노동장관은 기금 또는 연합회의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기금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기금 또는 연합회 또는 그 임원이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기금 또는 연합회가 전항의 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은 당해 기금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위반에 관계되는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④기금 또는 연합회가 전항의 명령에 위반을 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은 동항의 명령에 관계되는 임원을 개임할 수 있다.

⑤기금 또는 연합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그 사업상황에 의하여 그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장관은 당해 기금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 (권한위임) ①본장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장관의 권한 중 기금에 관계되는 것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후생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후생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후생지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1조 (실시규정) 본장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장의 실시를 위한 절차 기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 제 4 절 벌 칙

제182조 ①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록2〉

1. 제12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때.

2. 제129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3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독촉장으로 지정하는 기한까지 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제1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설립사업소 이외의 적용사업소의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9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때.

2. 제140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독촉장으로 지정하는 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해산하는 기금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징수금을 독촉장으로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83조 ①제178조 또는 제148조 제1항(제16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 또는 이러한 규정에 의한 당해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이러한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29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과 같다.

제184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위자를 벌주는 이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제18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기금 또는 연합회의 임원, 대리인 또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청산인은 2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5조 제3항(제15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때.
2. 제148조 제3항(제16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17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제1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연합회가 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한 때.

제186조 기금 또는 연합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2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6조(제1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허위의 공고를 한 때.
2. 제160조 제6항, 제160조의 2 제5항 또는 제162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60조 제7항(제160조의 2 제6항 및 제162조의 3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허위의 공고를 한 때.
4. 제17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때.

제187조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제1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때.

〈부 록2〉

2.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제174조에서 준용하는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때.
3. 가입자가 제174조에서 준용하는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청을 한 때.
4. 호적법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의무자가 제174조에서 준용하는 제9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188조 제109조 제2항 또는 제15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생연금기금이라는 명칭 또는 후생연금기금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생략)

## 참고문헌

### 한국문헌

#### 단행본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제5판), 법문사, 2002.  
방하남·문형표·신기철·원종욱, 『기업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Ⅱ)』, 노동  
연구원, 200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제4판), 법문사, 2002.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개정증보판), 나남출판사, 2002.

#### 논 문

- 김봉익, “고령화사회 이렇게 대비한다”, 『나라경제』 제13권 9호, 2002.  
김수봉, “점진적 퇴직을 위한 4층 소득보장제도의 구축”, 『사회법연구』(한  
국사회법학회), 2004.  
노상현, “고령사회의 노동시장변화와 사회보장법제의 과제”, 『(고령법제  
지원 워크샵)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시장변화와 법적 과제』, 한국  
법제연구원, 2004.  
윤석명,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사회법적 대응 - 국미연금을 중심으로”,  
『사회법연구』(한국사회법학회), 2004.  
이원덕·장지연,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3,  
74면.  
최병호,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조정 방안”, 『사회법연구』(한국사회법학회),  
2004.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등에서 발표한 자료.

### 일본문헌(50音順)

#### 단행본

- 荒木誠之, 『社會保障法讀本(改訂2版)』, 有斐閣, 1994.  
岩村正彦, 『社會保障法 I』, 弘文堂, 20001.  
岩村正彦・菊地馨實, 『社會保障法教材』, 有斐閣, 2000.  
小西國友, 『社會保障法』, 有斐閣, 2001.  
坂本重雄, 『社會保障改革』, 勁草書房, 1997.  
佐藤 進, 『労動法と社會保障法』, 信山社, 2001.  
日本社會保障法學會, 『21世紀の社會保障法』(講座 社會保障法 第1卷~第6卷),  
法律文化社, 2001.  
久塚順一・古橋エツ子・本澤巳代子, 『社會保障法』, 日本評論社, 2003.

#### 논문

- 荒木誠之, “公的年金の性格と機能”, 『ジュリスト』1063號, 有斐閣, 1995.  
牛丸聰, “年金財政と國庫負担”, 『ジュリスト』1063號, 有斐閣, 1995.  
庄司博一, “高年齢者の雇用と年金改革”, 『賃金と社會保障』1134號, 1994.  
中村秀一, “九四年年金改正法の概要”, 『ジュリスト』1063號, 有斐閣, 1995.  
西村淳, “年金改革關連法”, 『ジュリスト』1185號, 有斐閣, 2000.  
良永彌太郎, “年金保險料負擔のあり方”, 『ジュリスト』1063號, 有斐閣, 1995.

## 자료

日本 厚生労動省, 『平成14(2002)年度版 厚生労動白書』, 2002.

日本 厚生労動省 홈페이지(<http://www.mhlw.go.jp>)등에서 공개한 자료.

日本 内閣府, 『平成14(2002)年度版 高齢社会白書』, 2002.